

공사관계자  
안전업무  
가이드북

## 발간사

건설현장의 안전은 도시의 품격을 결정짓는 척도입니다. 하지만 강화된 법 제도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현장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과 안전 불감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분부는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제로(Zero)'를 목표로, 발주자부터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발간하는 『공사관계자 안전업무 가이드북』은 우리 분부가 지향하는 '자율적 안전 관리 체계'의 핵심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번 가이드북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사 등 각 주체별 업무 흐름과 체크리스트를 치밀하게 구성하여 현장 적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실무자들은 이 책자에 담긴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단 한 건의 사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준엄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서울의 안전지수를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쌓아갑니다. 본 책자가 현장에 깊이 뿌리내려 '안전한 도시 서울'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한 견고한 방패가 되기를 확신합니다. 모든 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헌신을 당부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 춘 근 **임춘근**

공사관리관  
안전업무  
가이드

<b>1. 업무 흐름도</b>	
1.1 업무 흐름도	12
1.2 본부 건설공사장 추진단계별 안전관리 체계	15
1.3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안전관리	16
<b>2. 공사 단계별 안전업무</b>	
<b>2.1 계획단계</b>	
2.1.1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요청 및 결과통보	18
2.1.2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20
2.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24
2.1.4 안전관리 부실업체 입찰참가 제한	24
2.1.5 체크리스트	25
<b>2.2 설계단계</b>	
2.2.1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심사 · 승인	26
2.2.2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확인	29
2.2.3 체크리스트	29
<b>2.3 착공단계</b>	
2.3.1 공사안전보건대장의 확인 및 승인	30
2.3.2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 및 승인	30
2.3.3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 및 승인	35
2.3.4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38
2.3.5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모집공고 및 지정	38
2.3.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 확인	38
2.3.7 안전관리비의 계상	40
2.3.8 공사손해보험 가입방식 개선	41
2.3.9 설계 설명회 (Kick-off Meeting) 의무화 (안전감찰)	42
2.3.10 공사 특성에 적합한 감리원 적정배치 (안전감찰)	43
2.3.11 직접시공 의무비율 및 대상공사 상향	43
2.3.12 저가 하도급 심사대상 확대	44
2.3.13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 확인	45
2.3.14 신규현장 안전기술지도 시행	46
2.3.15 체크리스트	48
<b>2.4 시공단계</b>	
2.4.1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확인 및 승인	50
2.4.2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확인 및 변경 승인	51
2.4.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확인	51
2.4.4 안전관리비의 집행 확인	52

2.4.5 안전점검 이행 확인	52
2.4.6 안전교육 이행 확인	59
2.4.7 정기적인 회의 개최	61
2.4.8 안전사고 조사 및 조치결과 확인	64
2.4.9 안전문서 관리(설계도서 등 검토 업무)	68
2.4.10 안전관리 수준 평가	68
2.4.11 일요일 건설공사 금지 및 주말 · 휴일작업계획서 확인, 승인	69
2.4.12 상시 안전점검 체계 유지	70
2.4.13 대형 붕괴 재해 대비 지도 점검 시행	75
2.4.14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	78
2.4.15 “근로자 안전 10계명” 일상화 추진	80
2.4.16 부실 건설업체 상시 모니터링 강화(안전감찰)	81
2.4.17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강화(안전감찰)	81
2.4.18 불법 하도급과 품폐기 근절(안전감찰)	82
2.4.19 안전조회(Tool Box Meeting)시 5RP 제도 시행(안전감찰)	82
2.4.20 무자격기술자 퇴출 등 엄중조치(안전감찰)	83
2.4.21 신속하고 다양한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개선(안전감찰)	83
2.4.22 감리단 시공오차 검측결과 적정성 수시 확인(안전감찰)	84
2.4.23 기술지원 감리원 운영 개선(안전감찰)	84
2.4.24 책임감리원 공사중지권 시행 보장	85
2.4.25 외국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보급(안전감찰)	85
2.4.26 주기적 안전교육 및 맞춤형 매뉴얼 작성 보급	86
2.4.27 공사장 휴게실 설치 의무화 및 환경정돈(안전감찰)	86
2.4.28 근로자 음주 · 흡연 관리방안 추진	87
2.4.29 건설관계자 이력제 및 평가 시스템 DB구축	87
2.4.30 기술자문단 상시 운영	88
2.4.31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강화 및 하도급 계약 지원센터 개원	88
2.4.32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89
2.4.33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확인 및 승인(요청)	89
2.4.34 설계변경의 검토 확인 및 승인	90
2.4.35 체크리스트	91
<b>2.5 준공단계</b>	
2.5.1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확인 및 결과 통보	95
2.5.2 안전관리문서의 취합 및 보관	95
2.5.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서 확인	96
2.5.4 안전관리비의 정산서 확인	98
2.5.5 체크리스트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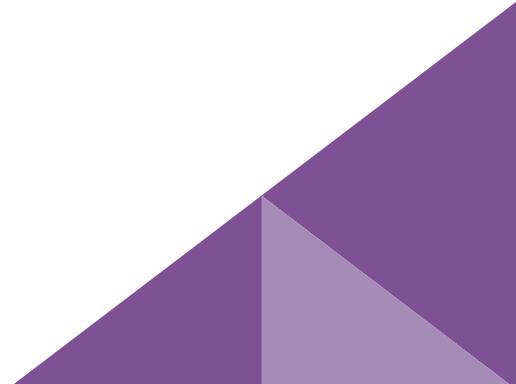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안전업무  
가이드

<b>1. 업무 흐름도</b>	100
<b>2. 공사 단계별 안전업무</b>	
<b>2.1 착공단계</b>	
2.1.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확인	101
2.1.2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확인	103
2.1.3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확인	107
2.1.4 최초 위험성평가의 검토	109
2.1.5 안전·보건관리체제 (조직 구성) 구축 지도	112
2.1.6 안전문서 관리 (설계도서 등 검토 업무)	114
2.1.7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114
2.1.8 안전점검 수행기관 계약 확인	115
2.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계획 확인	116
2.1.10 안전관리비의 집행계획 확인	118
2.1.11 공사손해보험 가입방식 개선	119
2.1.12 설계설명회 (Kick-off Meeting) 의무화 (안전감찰)	119
2.1.13 공사 특성에 적합한 감리원 적정배치 (안전감찰)	120
2.1.14 직접시공 의무비율 및 대상공사 상향	120
2.1.15 저가 하도급 심사대상 확대	121
2.1.16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 확인	122
2.1.17 신규현장 안전기술지도 참석	124
2.1.18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수행	125
2.1.19 체크리스트	126
<b>2.2 시공단계</b>	
2.2.1 안전관리 추진실적 및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검토	128
2.2.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 확인	128
2.2.3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검토 및 보고	129
2.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확인 및 실적보고	130
2.2.5 안전관리비의 집행 확인 및 실적보고	130
2.2.6 안전점검의 이행 확인	131
2.2.7 안전교육의 이행 확인	137
2.2.8 정기적인 회의 참여	139
2.2.9 안전사고 조사 및 조치결과 검토 및 보고	142
2.2.10 수시(상시)·정기(상시 위험성 평가시 정기 위험성평가 갈음) 위험성평가 실시 확인	143
2.2.11 안전·보건관리체제 (조직 구성) 운영 확인	144
2.2.12 안전문서 관리 (설계도서 등 검토 업무)	147
2.2.13 안전관리 수준 평가	147
2.2.14 일요일 건설공사 금지 및 주말·휴일작업계획서 검토	148

2.2.15 상시 안전점검 체계 유지	149
2.2.16 대형 붕괴 재해 대비 지도 점검 시행	154
2.2.17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	157
2.2.18 “근로자 안전 10계명” 일상화 추진	159
2.2.19 위험시기 및 재난대비 특별 안전점검 시행	160
2.2.20 현장 소통 및 최신자료 공유	161
2.2.21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강화(안전감찰)	162
2.2.22 불법 하도급과 품삯기 근절(안전감찰)	163
2.2.23 안전조회(Tool Box Meeting)시 5RP 제도 시행(안전감찰)	163
2.2.24 무자격기술자 퇴출 등 엄중조치(안전감찰)	164
2.2.25 신속하고 다양한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개선(안전감찰)	164
2.2.26 감리단 시공오차 검측결과 적정성 수시 확인(안전감찰)	165
2.2.27 기술지원감리원 운영 개선(안전감찰)	165
2.2.28 책임감리원 공사중지권 시행 보장	166
2.2.29 외국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작성 보급(안전감찰)	166
2.2.30 주기적 안전교육 및 맞춤형 매뉴얼 작성 보급	167
2.2.31 공사장 휴게실 설치 의무화 및 환경정돈(안전감찰)	167
2.2.32 근로자 음주·흡연 관리방안 추진	168
2.2.33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강화 및 하도급 계약 지원센터 개원	168
2.2.34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169
2.2.35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검토 및 제출	169
2.2.36 설계변경의 검토 및 실적 보고	170
2.2.37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확인	170
2.2.38 유해·위험 방지 조치 이행 확인	173
2.2.39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이행 확인	175
2.2.40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확인	178
2.2.41 작업환경측정 실시 확인	179
2.2.4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확인	179
2.2.43 근로시간 금지 또는 제한조치 확인	181
2.2.44 체크리스트	183

<b>2.3 준공단계</b>	
2.3.1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검토 및 보고	189
2.3.2 안전관리문서의 취합 및 보관	189
2.3.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서 검토	190
2.3.4 안전관리비의 정산서 검토	192
2.3.5 체크리스트	192

1. 업무 흐름도	194		
2. 공사 단계별 안전업무			
2.1 착공단계			
2.1.1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제출	195		
2.1.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제출	198		
2.1.3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변경 및 제출	200		
2.1.4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04		
2.1.5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	206		
2.1.6 안전·보건관리체제(조직 구성) 구축	209		
2.1.7 안전문서 관리(설계도서 등 검토 업무)	211		
2.1.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요청 및 계약 체결, 통보	211		
2.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 작성	212		
2.1.10 안전관리비의 집행계획 확인	214		
2.1.11 공사손해보험 가입방식 개선	215		
2.1.12 설계설명회(Kick-off Meeting)의무화(안전감찰)	215		
2.1.13 직접시공 의무비율 및 대상공사 상향	216		
2.1.14 저가 하도급 심사대상 확대	217		
2.1.15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 체결	217		
2.1.16 신규현장 안전기술지도 참석	219		
2.1.17 체크리스트	221		
2.2 시공단계			
2.2.1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223		
2.2.2 안전관리 추진실적 및 안전관리 결과 보고	223		
2.2.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	224		
2.2.4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225		
2.2.5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225		
2.2.6 안전관리비의 집행	226		
2.2.7 안전점검의 실시	226		
2.2.8 안전교육의 실시	233		
2.2.9 정기적인 회의 이행 및 참여	236		
2.2.10 안전사고 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	239		
2.2.11 수시(상시)·정기(상시 위험성 평가시 정기 위험성평가 같은) 위험성평가 실시 확인	240		
2.2.12 안전·보건관리체제(조직 구성) 운영	241		
2.2.13 안전관리담당자 업무의 협조	244		
2.2.14 안전문서 관리(설계도서 등 검토 업무)	244		
2.2.15 안전관리 수준 평가	245		
2.2.16 일요일 건설공사 금지 및 주말·휴일작업계획서 제출	245		
2.2.17 상시 안전점검 체계 유지	246		
2.2.18 대형 붕괴 재해 대비 지도 점검 시행	251		
2.2.19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	254		
2.2.20 “근로자 안전 10계명” 일상화 추진	256		
2.2.21 위험시기 및 재난대비 특별 안전점검 시행	257		
2.2.22 현장 소통 및 최신자료 공유	258		
2.2.22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강화(안전감찰)	259		
2.2.24 불법 하도급과 품폐기 근절(안전감찰)	260		
2.2.25 안전조회(Tool Box Meeting)시 5RP 제도 시행(안전감찰)	260		
2.2.26 무자격기술자 퇴출 등 엄중조치(안전감찰)	261		
2.2.27 신속하고 다양한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개선(안전감찰)	261		
2.2.28 외국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작성 보급(안전감찰)	262		
2.2.29 주기적 안전교육 및 맞춤형 매뉴얼 작성 보급	262		
2.2.30 공사장 휴게실 설치 의무화 및 환경정돈(안전감찰)	263		
2.2.31 근로자 음주·흡연 관리방안 추진	263		
2.2.32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강화 및 하도급 계약 지원센터 개원	264		
2.2.33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264		
2.2.34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265		
2.2.35 설계변경의 요청	265		
2.2.36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266		
2.2.37 유해·위험 방지 조치	268		
2.2.38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271		
2.2.39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274		
2.2.40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제출	275		
2.2.4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276		
2.2.42 근로시간 금지 또는 제한조치	277		
2.2.43 체크리스트	279		
2.5 준공단계			
2.3.1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287		
2.3.2 안전관리문서의 취합 및 보관	287		
2.3.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서 작성	288		
2.3.4 안전관리비의 정산서 작성	290		
2.5.5 체크리스트	290		



Chapter

# 01

## 공사관리관 안전업무 가이드

1. 업무 흐름도
2. 공사 단계별 안전업무

## 1.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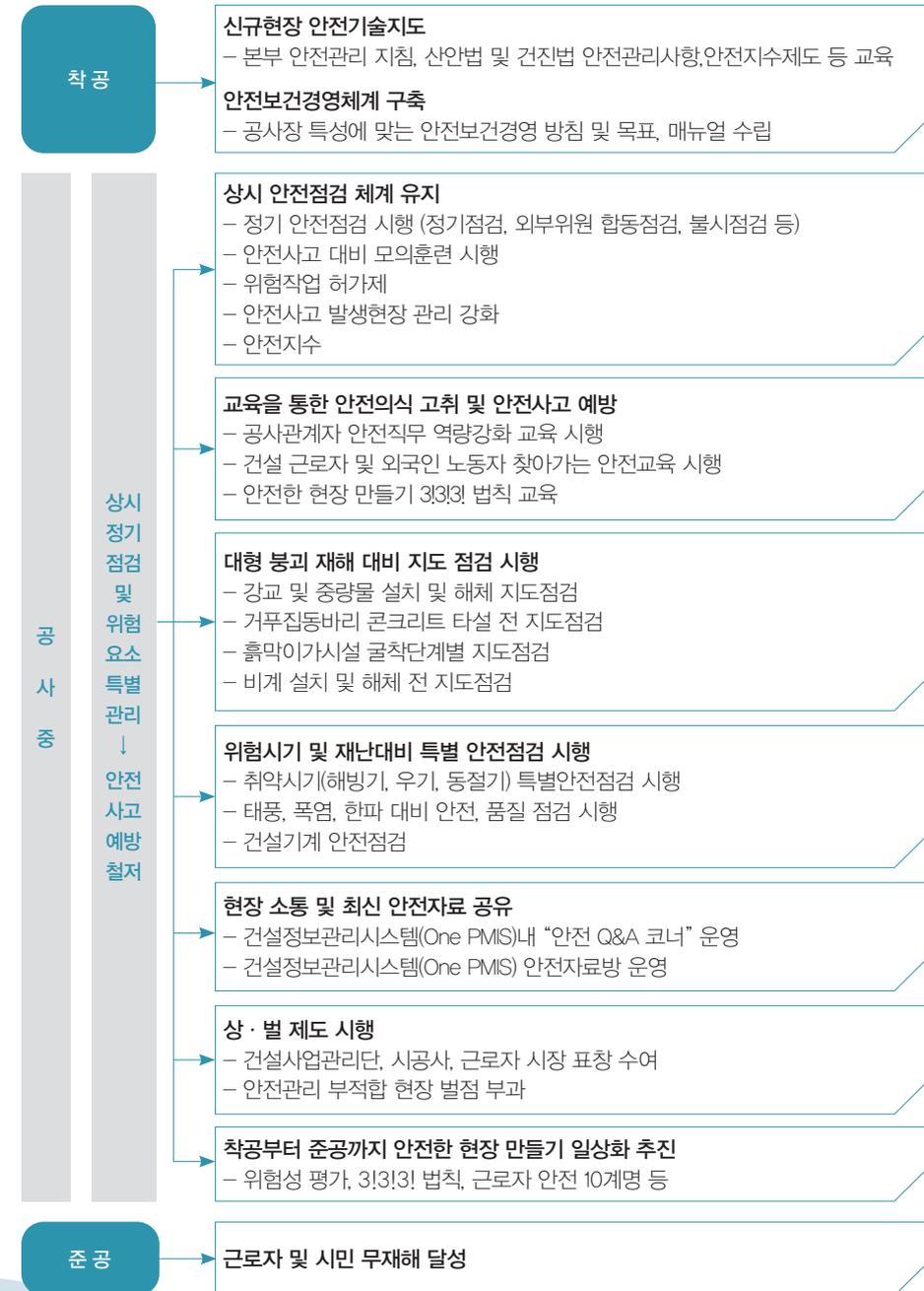
### 1.1 업무 흐름도

구분	발주자(공사관리관)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계획단계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협의요청 및 결과통보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지하안전점검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설계단계	설계안전성검토의뢰 기본안전보건대장 자료 제공 설계안전보건대장 승인 설계안전보건대장 자료 제공 안전관리비의 계상	설계안전성검토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도기본 5기대 대책 도기본 안전관리방침	
착공단계	공사안전보건대장 승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최초위험성평가 확인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및 지정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및 지정 통보 안전관리계획서 기초자료 제공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등)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공사안전보건대장 검토 건설현장 관계자의 업무분담 적정성 검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확인 최초위험성평가 검토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설계안전성검토 반영)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최초위험성평가 실시 안전관리계획서 기초자료의 반영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설계안전성검토 반영)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작성	
시공단계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안전관리비 집행 확인 위험성평가 확인 정기적인 회의 확인 안전교육 결과의 확인 안전점검 결과의 확인 안전사고 조사 결과의 확인 제재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및 검토 (발주청) 보고 안전관리비 집행여부 확인 및 검토 (발주청) 보고 위험성평가 검토 확인 협의체 회의 확인 안전교육의 실시여부 검토 안전사고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안전관리비 집행 위험성평가 실시 협의체 회의 실시 안전교육의 실시 안전점검의 실시 안전사고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준공단계	안전점검결과보고서 보관 설계도서 보관 및 활용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검토 안전관리문서의 검토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안전관리문서의 제출	

구분	계획단계	설계단계	착공단계	시공단계	준공단계
산업안전 보건법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확인, 승인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확인, 승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건설공사의 산업 재해 예방지도 계약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확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집행 확인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 변경 금지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검토 확인 및 승인 설계변경의 검토 확인 및 승인 주말·휴일 작업계획서 확인 승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정산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구축 현장 안전방침 및 목표 수립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이행 확인 현장 안전방침 및 목표 이행 확인	
건설 기술진흥법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및 결과통보	설계안전성검토 의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 심사·승인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모집공고 및 지정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이행, 확인 현장 안전방침 및 목표 이행 확인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확인 안전관리비 집행 확인	안전관리비 정산
			안전관리비 계상		
				안전점검 이행 확인 안전교육 이행 확인 정기적인 회의 개최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확인 안전관리문서의 취합 및 보관
				안전사고 조사 및 조치결과 확인 안전관리 수준평가 일요일 건설공사 금지 확인	

구분	계획단계	설계단계	착공단계	시공단계			
도기본 51개 대책	안전관리 부실업체 입찰참가 제한		공사손해보험 가입방식 개선	부실 건설업체 상시 모니터링 강화			
			설계 설명회 의무화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강화			
			공사 특성에 적합한 감리원 적정배치	불법 하도급과 폼페이 근절			
			직접시공 의무비율 및 대상공사 상향	안전조회시 5RP 제도 시행			
			저가 하도급 심사대상 확대	무자격기술자 퇴출 등 엄중조치			
				신속하고 다양한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개선			
				감리단 시공오차 검증결과 적정성 수시 확인			
				기술지원감리원 운영 개선			
				책임감리원 공사 중지권 시행 보장			
				외국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작성 보급			
				주기적 안전교육 및 맞춤형 매뉴얼 작성 보급			
				공사장 휴게실 설치 의무화 및 환경정돈			
				근로자 음주·흡연 관리방안 추진			
				건설관계자 이력제 및 평가시스템 DB구축			
				기술자문단 상시 운영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강화 및 하도급 계약 지원센터 개원			
			도기본 안전관리 방침			신규현장 안전기술지도 시행	ONE-DAY 안전점검 체계 유지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가사설, 강교거치 지도점검
	공사관계자 안전교육(상·하반기)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찾아가는 근로자 안전교육						
	공사장 안전지수평가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공사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경영 방침 및 목표, 매뉴얼 수립						

## 1.2 본부 건설 공사장 추진단계별 안전관리 체계



### 1.3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안전관리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주관부서 (산하기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주요목적	근로자의 안전, 보건 재해예방	구조물의 안전 재해예방
범위	작업자 (근로자) 가설시설물 (안전시설물, 시공기준)	제3자, 본구조물 가설구조물 (구조, 품질분야)
사전안전성 검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설계단계 안전	안전보건대장(기본, 설계, 공사)	설계안전성검토 (DFS)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 계획, 설계, 시공단계별 작성	건진법 시행령 제75조의2 시공단계 반드시 고려할 위험요소
안전소요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정요율 적용)	안전관리비 (내역에 반영, 실비정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li> <li>안전시설비</li> <li>개인 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li> <li>사업장 안전보건 진단비</li> <li>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li> <li>근로자의 건강관리비</li> <li>재해예방 기술지도비</li> <li>본사 안전전담조직 사용</li> <li>위험성평가 · 협의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li> <li>영 제100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 점검 비용</li> <li>발파 ·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li> <li>공사장 주변 통행 안전관리대책 비용</li> <li>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 운용 비용</li> <li>법 제62조 제7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 확인에 필요한 비용</li> </ul>
안전보건 관리 체제 (안전관리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보건총괄책임자</li> <li>안전보건관리책임자</li> <li>관리감독자</li> <li>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li> <li>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li> <li>안전보건 협의체</li> <li>안전보건조정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총괄책임자</li> <li>안전관리책임자</li> <li>안전관리담당자</li> <li>협의체 (수급인+하수급인, 매월 1회)</li> </ul>
안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기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관리감독자)</li> <li>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li> <li>특별안전보건교육</li> <li>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li> <li>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li> <li>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li> <li>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상교육 :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일작업의 공병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와 시공기술상 주의사항 포함</li> </ul> </li> <li>- 안전교육내용을 기록 관리</li> <li>- 공사준공 후 발주청에 제출</li> </ul>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안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업장 순회점검</li> <li>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li> <li>작업시작 전 점검</li> <li>안전보건진단</li> <li>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체안전점검 : 매일</li> <li>정기안전점검 : 계획에서 정한 시기</li> <li>정밀안전점검 : 물리적 기능적 결함</li> <li>초기점검 : 공사 준공 전에 실시</li> <li>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1년 이상 방치</li> </ul>
산업재해와 건설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 안전관리담당자</li> <li>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li> </ul>
중대재해와 중대한 건설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li> <li>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li> <li>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li> <li>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li> <li>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顛倒)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li> </ul>

# 공사관리관 안전업무 가이드

## 2. 공사 단계별 안전업무

### 2.1 계획단계

#### 2.1.1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요청 및 결과통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 도입배경 : 2014년 석촌동 지하차도 지반침하 사고 등 지반침하 사고가 거듭 발생하여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어 이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일자 : 2018년 1월 1일

#### ■ 이행 및 확인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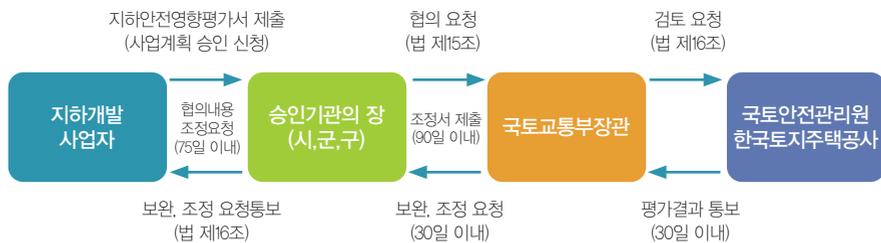
-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요청
- 협의한 평가결과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통보
- 평가결과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 관련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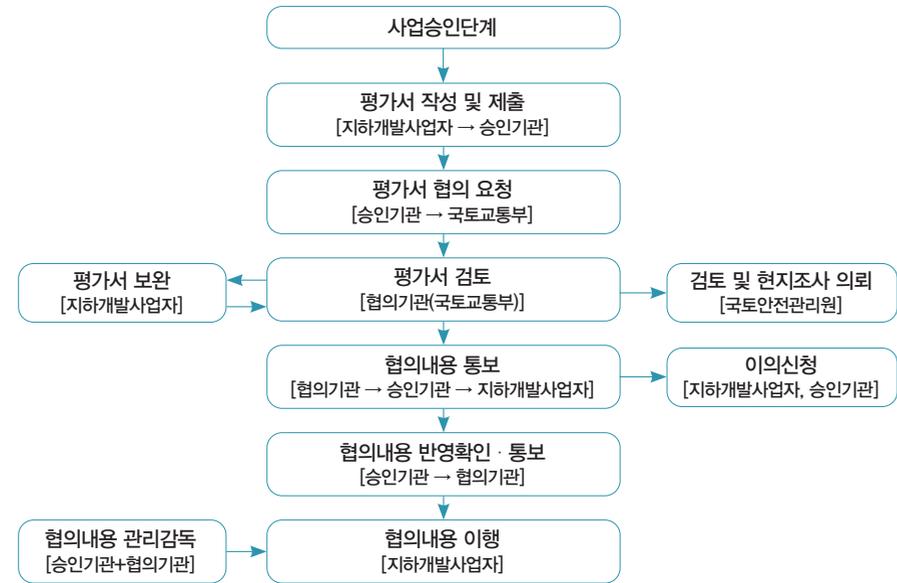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참고 사항

- 지하안전영향평가 흐름도(소요시간 등)



#### •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절차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평가제도

구분	지하 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 안전점검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대상	지하 20m 이상 터파기 터널공사	지하 10m 이상 20m 미만 터파기 터널공사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시기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굴착공사 완료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자	지하개발사업자	지하개발사업자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시설물관리자	지하시설물관리자
평가자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지하시설물관리자	전문기관
평가항목	지형 및 지질, 지하수 변화 등	지형 및 지질, 지하수 변화 등	굴착공사의 적정성, 지반안전성 등	시설물 및 주요 부재의 상태	공동 유무, 지하수 흐름
제출방법	전자적 제출				
협의 또는 제출기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평가결과 활용	사업계획의 보정	사업계획의 보정	지하안전확인 및 재평가	지반침하위험성 점검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해제

※ 건축허가 전 완료에서 착공신고 전 완료로 변경됨(시행일 2022년 1월 28일)

- 지하안전영향평가 예외조건(시행령 별표1)
  - 1)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기밀보호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2)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해 기밀보호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3) 산지관리법상에 따른 산지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의 바다 및 바닷가
  - 4)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 1) 굴착깊이 3m 이상 증가하는 경우
  - 2) 사업면적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재협의 요청
-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자의 자격 및 전문기관
  - 1) 책임기술자의 자격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에 관한 교육(기본 및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책임기술자는 시행규칙 제5조의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따라 70시간 이상의 신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2)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2.1.2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작성해야 하며, 설계자에게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시공자에게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함

- 적용대상(2020. 1. 16. 이후 설계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시행)
  - 1)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
  - 2) 하나의 건설공사를 2개 이상으로 분리 발주시에도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됨

- 이행 및 확인 사항
  - 발주자(공사관리관)는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소속 임직원의 지정을 통해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수행
  - 직접 수행이 어려운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 수행
  - 안전보건분야의 전문가에게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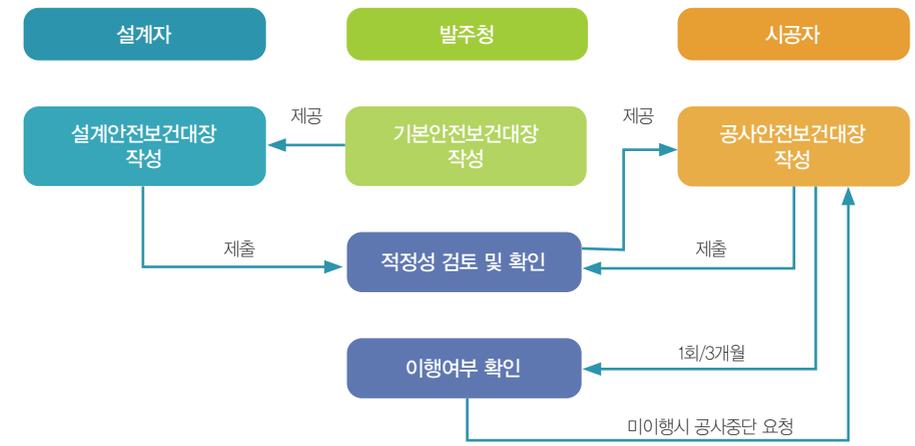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

■ 참고 사항

종 류	작성주체	작성시기	비 고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계획단계	건설안전전문가 업무수행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	설계단계	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포함
공사안전보건대장	시공자	시공단계	발주자는 3개월마다 이행 여부 확인

※ 발주자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천만원 부과

• 진행 절차





### 2.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사업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입찰공고문 표기)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 2.1.4 안전관리 부실업체 입찰참가 제한

-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에 대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대책
- ✓ 안전보건조치 소홀에 따른 제재 강화를 위해 입찰공고문에 안전관리 부실업체 입찰참가 제한 내용을 명시하여, 부실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지속적 이행관리 필요함.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입찰공고문에 안전관리 부실업체 입찰참가제한 내용 명시
- 안전관리 부실업체 입찰참가여부 확인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지방계약법령 등 개정 건의 (재무과-45761)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제1항 제4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3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제2항, [별표3의2]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

### 2.1.5 체크리스트

순서	항 목	이행 및 확인 사항	확인 결과
2.1.1	지하안전영향 평가협의 요청 및 결과통보	•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 요청을 하였는가?	
		• 협의한 평가결과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하였는가?	
		• 평가결과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는 확인하였는가?	
2.1.2	기본안전보건 대장의 작성	• 발주자(공사관리관)는 계획단계에서 기본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였는가?	
		• 소속 임직원의 지정을 통해 안전보건 대장의 작성 및 확인을 수행하였는가?	
		• 직접 수행이 어려운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가?	
		• 안전보건분야의 전문가에게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는가?	
2.1.3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계상	• 사업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였는가?	
2.1.4	안전관리 부실업체 입찰 참가 제한	• 입찰공고문에 안전관리 부실업체 입찰 참가제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는가?	
		• 안전관리 부실업체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2.2 설계단계

### 2.2.1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심사·승인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성 저감대책을 설계에 반영한 보고서

- 2016. 5. 19. 이후 입찰 공고하는 실시설계부터 적용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종합정보망(CS)을 통해 설계안전성검토의 검토 확인 및 결과 제출
- 공사관리관은 설계자가 설계안전성검토 시 잔존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 대책 반영여부 검토, 확인
- 공사관리관은 설계발주 단계에서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제출 여부 확인
- 공사관리관은 설계시행 단계에서 설계안전성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 및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공사관리관은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입찰 후 시공사에게 제공

#### ■ 관련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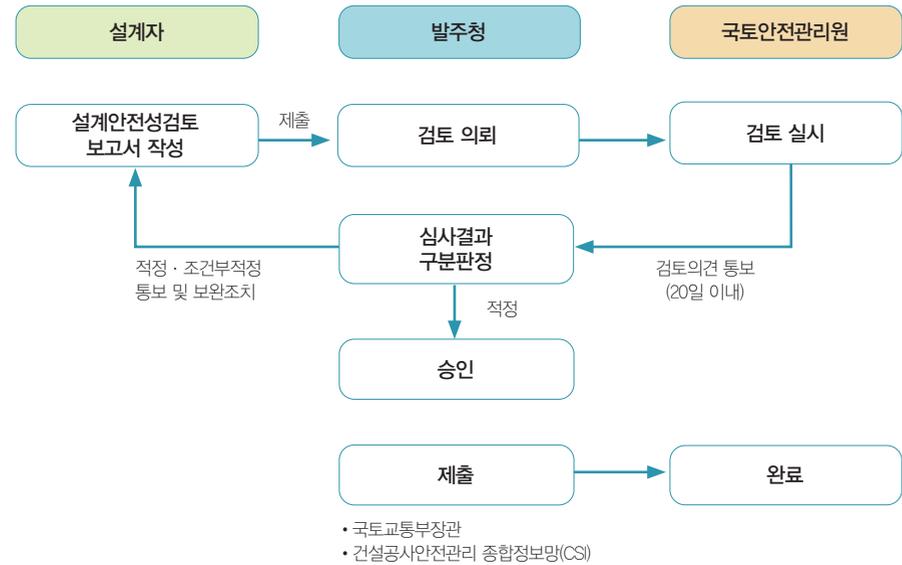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발주자의 안전관리 업무)

#### ■ 참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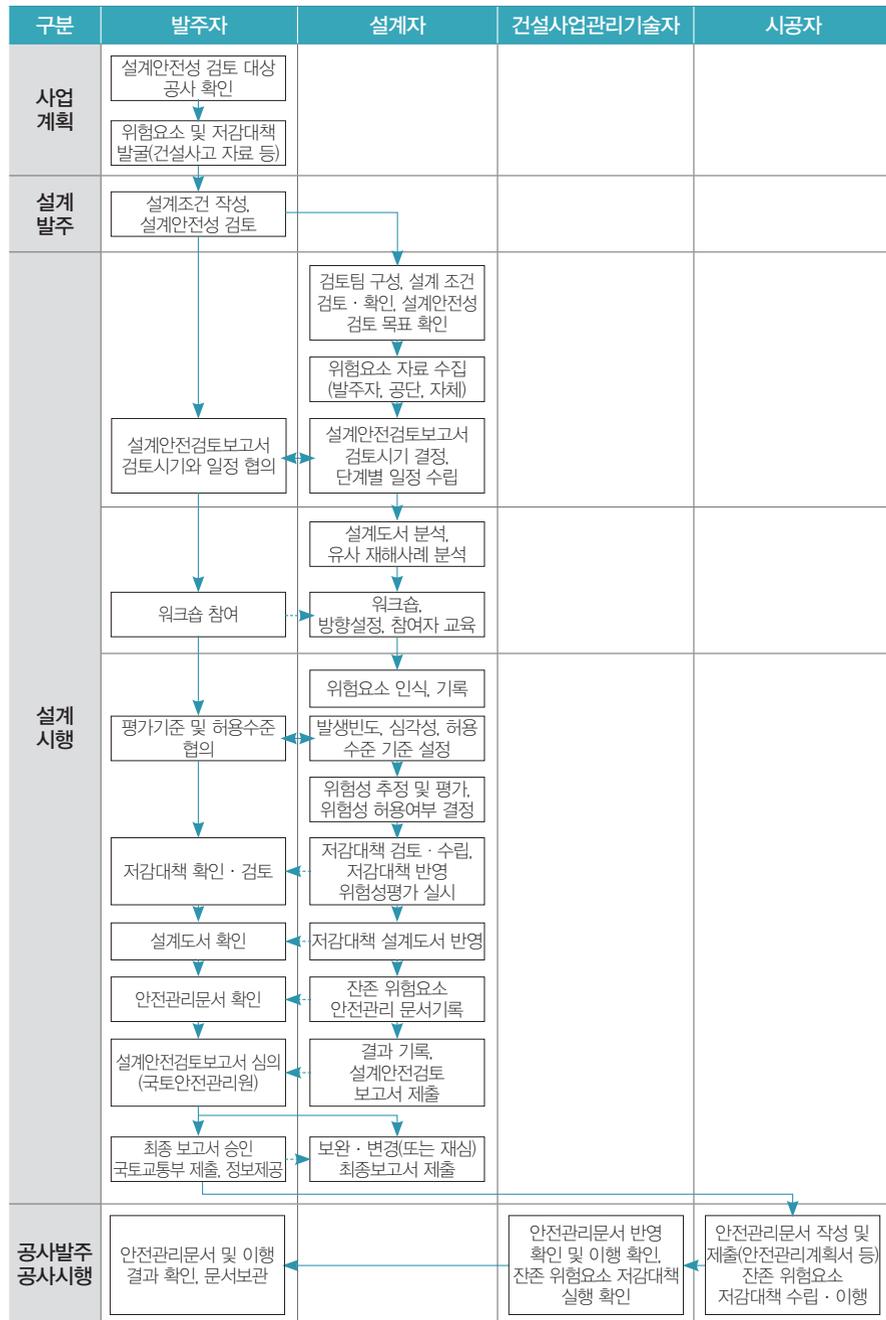
- 검토 대상
  - 1)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와 다음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5) 다음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가 3미터 이상인 비계
    - 브라켓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 검토 절차



• 세부 검토 절차



2.2.2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확인

건설공사의 설계 단계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는 보고서

- 발주자가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 · 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승인
- 2.1.2 기본안전보건대장 참조

■ 이행 및 확인 사항

- 공사관리관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 계약 시 설계자에게 제공
- 공사관리관은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안전보건대장에 대한 승인
- 안전보건분야의 전문가에서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확인
- 공사관리관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공사계약 입찰 된 시공사에게 제공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

## 2.2.3 체크리스트

순서	항 목	이행 및 확인 사항	확인 결과
2.2.1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심사·승인	• 종합정보망(CS)을 통해 설계안전성검토의 검토 확인 및 결과를 제출하였는가?	
		• 공사관리관은 설계자가 설계안전성검토 시 잔존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반영여부를 검토, 확인 하였는가?	
		• 공사관리관은 설계발주 단계에서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공사관리관은 설계시행 단계에서 설계 안전성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 및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는가?	
2.2.2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확인	• 공사관리관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 계약 시 설계자에게 제공하였는가?	
		• 공사관리관은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안전보건대장에 대해 확인하였는가?	
		• 안전보건분야의 전문가에게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는가?	

## 2.3 착공단계

## 2.3.1 공사안전보건대장의 확인

건설공사에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각각 계획, 설계, 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고서

-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

(2.1.2 기본안전보건대장 참조)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공사관리관은 도급계약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시공자에게 제공
- 공사관리관은 시공자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여부 확인
- 안전보건분야의 전문가에게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확인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

## 2.3.2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 및 승인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

- 안전한 시공과 공사목적물의 안전, 공사장 주변의 안전을 위해 착공 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 승인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종합정보망(CS)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서의 등록·검토 확인 및 결과 제출
- 공사관리관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 제공 (설계안전검토 보고서 및 설계에 가정보인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공사관리관은 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변경 시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 및 검토결과를 통해 심사, 승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후 서면보고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 시공자에게 시정, 보완 요구
-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확인(보완포함) 및 승인 통보 (시공자에게 20일 이내 결과 통보)



•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비교

구분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근 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9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목적	건설공사 시공안전 및 주변안전 확보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작성대상	1) 시특법 1, 2종 시설물(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상하수도, 옹벽·절토사면) 2) 지하 10M 이상 굴착작업 3) 폭발물 사용공사로서 20M이내 시설물, 100M이내 사유가축 영향 예상되는 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공사 또는 10층 이상 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수직중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향타기 항발기, 천공기(H=10m이상), T/C 사용공사 6) 건전법 시행령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 ① 높이 3m이상 비계, 브라켓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③ 터널지보공, 2m이상 흠막이 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⑤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ACS, RCS 등) ⑥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함벽지지대, 가설벤트, 터널작업대차, 터널 라이닝폼 등) 7)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 인정하는 건설공사	1) 지상높이가 3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②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③ 종교시설 ④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⑥ 지하도상가 ⑦ 냉동·냉장 창고시설 4)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5)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6) 터널건설 등의 공사 7)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8)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작성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업자	사업주(시공자)
제출서류	1) 총괄안전관리 계획 2)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시기	공사의 착공 전까지	공사의 착공 전일까지
제출처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	고용노동부장관
주요확인	공사목적물 안전 / 가설공법 안전성 / 주변 안전대책	근로자보호구 / 작업공중, 재료 안전성 / 작업조건방법 / 가설공사안전 /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사용계획
심사기관	국토안전관리원	안전보건공단
결과통보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을 신청자에게 통보 부적정시 계획서 보완, 제출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을 사업자에게 통보 부적정시 공사착공중지 및 계획변경 명령

2.3.3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 및 승인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5,000㎡ 이상 창고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착공 전 반드시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청에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보고서

• 2020.12.10. 부터 적용

■ 이행 및 확인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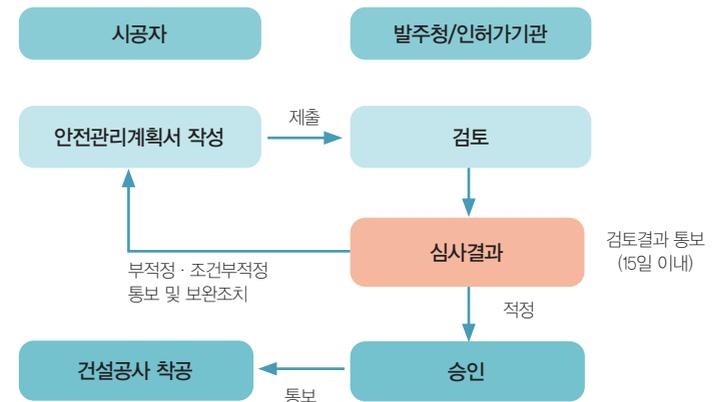
- 공사관리관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및 검토결과 적정할 경우에 승인 통보 (시공자에게 15일 이내 결과 통보)
-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이 아닌 경우, 시공자에게 안전 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요구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참고 사항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절차



※안전관리계획서 변경시 동일 절차로 진행

• 안전관리계획서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의 비교

구분	안전관리계획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
대상	1) 시트법 1, 2중 시설물(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상하수도, 옹벽·절토사면) 2) 지하 10M 이상 굴착작업 3) 폭발물 사용공사로서 20M이내 시설물, 100M 이내 사육가축 영향 예상되는 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공사 또는 10층 이상 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향타기 항발기, 천공기(H=10m이상), T/C 사용공사 6) 건진법 시행령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 ① 높이 3m이상 비계, 브라켓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③ 터널지보공, 2m이상 흙막이 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⑤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 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SWC, ACS, RCS 등) ⑥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지지대, 가설벤트, 터널작업대차, 터널 라이닝폼 등) 7)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 인정 하는 건설공사	☑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①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② 연면적 1000㎡ 이상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③ 연면적 1000㎡ 이상인 공장(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연면적 2000㎡ 이상) ④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
내용	1) 총괄 안전관리계획 - 건설공사 개요 - 현장 특성 분석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등 - 현장 운영계획 :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 점검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 계획 등 -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2)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 가설, 굴착 및 발파, 콘크리트, 강구조물, 성토 및 절토, 해체, 설비공사, 타워크레인 공사 등	1) 건설공사 개요 : 위치도, 대상현장, 전체 공정표, 설계도서(도면) 2) 비계 설치계획 : 외부 설치 비계의 설치계획, 시공상세도, 시공절차, 주의사항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추락방지망, 낙하물 방지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계단난간 등의 설치 계획과 사진, 그림 등의 예시 자료
절차	1) 시공자 계획 수립 2)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 3) 발주청, 인·허가기관에 제출 4)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 검토 5)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승인 6) 착공	1) 시공자 계획 수립 2) 발주청, 인·허가기관에 제출 3)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승인 4) 착공

2.3.4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함.

• 적용대상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 이행 및 확인 사항

- 안전보건조정자 지정 대상여부 확인
- 공사관리관은 안전보건조정자의 지정 및 선임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안전보건조정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7조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 참고 사항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자격
  - 1) 공사감독자
  - 2) 책임감리자
  - 3) 건설안전기술사
  - 4) 산업안전지도사
  - 5)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6) 건설안전기사로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자
  - 7) 건설안전산업기사로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력자
- 안전보건조정자 역할
  - 1)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 2)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 3)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조치 등의 조정
  -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 2.3.5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모집공고 및 지정

안전점검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청(또는 인·허가기관)에 등록된 기관 중 1개 기관을 선정하여 안전점검을 수행토록 하고 있음.(법령 개정 2020.1.7.)

#### ■ 이행 및 확인 사항

- 발주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의 모집공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모집) 및 등록 명부 작성,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정 공고
-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실시
- 공사관리관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및 시공자에게 통보
- 공사관리관은 시공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계약 확인

####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 (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 2.3.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확인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비용

#### ■ 이행 및 확인 사항

- 발주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 ■ 참고 사항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공사종류	구분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
		적용 비율 (%)	기초액		
건축공사	3.11%	2.28%	4,325,000원	2.37%	2.64%
토목공사	3.15%	2.53%	3,300,000원	2.60%	2.73%
중건설공사	3.64%	3.05%	2,975,000원	3.11%	3.39%
특수건설공사	2.07%	1.59%	2,450,000원	1.64%	1.78%

#### ■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 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 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 가격 작성 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이상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비교

구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주관부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li> <li>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제7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안전관리비)</li> <li>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①항</li> </ul>
목적	근로자의 안전·보건	시설물의 안전
수행형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구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사용항목	1) 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 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 안전보건 진단비 등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안전전담조직 사용비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영 제100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 통행 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영 비용 6) 법 제62조 제7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 확인에 필요한 비용 7)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 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운영 비용

### 2.3.7 안전관리비의 계상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정기 안전점검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을 말함.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
-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
-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안전관리비는 계상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 안전관리비는 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 ■ 참고 사항

-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를 작성
  - 1)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작성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기술자인건비(고급기술자 작업일수)
    - 직접경비(일비, 위험수당, 기계기구 손료, 보고서등 인쇄비, 소모품비, 기타)
    -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 2) 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판단하여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3)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 4)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에 관하여는 토목, 건축 등 관련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2.3.8 공사손해보험 가입방식 개선

- ✓ 공사손해보험을 각 공사장별로 분산 가입함에 따라,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예산 미확보 등에 대한 계약변경을 하지 않거나, 누락하거나, 미승계하여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보험을 발주기관이 도급비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공구별로 통합가입함으로써 보험사간의 경쟁을 통해서 보험료를 절감하고,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보험 가입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임.
- ✓ 계약담당자에 의한 공사보험 가입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점검 이행

-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중 다음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해야 함.

-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공사

① 교량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 공항 ③ 댐 축조  
 ④ 에너지저장시설 ⑤ 간척공사 ⑥ 준설 ⑦ 항만 ⑧ 철도 ⑨ 지하철 ⑩ 터널공사 ⑪ 발전소  
 ⑫ 쓰레기소각로 ⑬ 폐수처리장 ⑭ 하수종말처리장 ⑮ 관람집회시설 (바닥면적 1000㎡이상)  
 ⑯ 전시시설 ⑰ 송전공사 ⑱ 변전공사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공사손해보험 관리책임자 지정
- 공사관리관은 현장별 공사손해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여 미가입 현장 (개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공사손해보험 관리책임자에게 취합, 보고
- 공사손해보험 관리책임자는 개설 현장, 미 가입 현장에 대해 통합 가입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공사손해보험 가입 방식 개선 방안(재무과-50910)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5조(손해보험가입)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5절

## 2.3.9 설계 설명회(Kick-off Meeting) 의무화(안전감찰)

- ✓ 시공자, 감리자의 설계도서 이해 부족과 설계자의 현장 상황, 시공여건에 대한 경험 부족에 따라, 위험이 높은 설계 도서를 제공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할 때에 예상되는 리스크(Risk)와 해결방안, 주요구조물의 시공절차, 기술·산업 안전관리 방안 등 주요 공정에 대한 설계 설명회(K.O.M)를 의무화한 대책
- ✓ 감찰 결과, 설계 설명회 의무화 대책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어, 현장과 시공여건을 반영한 안전한 시공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해, 설계 설명회 의무화 대책 이행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설계 설명회 의무화 이행 협조문 발송 (각 부서 등)
- 공사착수 전, 주요공정 시공계획 수립 시 공사착수회의 (K.O.M) 실시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공사착수회의(Kick-Off Meeting) 의무화 대책 알림(토목부-20456)

## 2.3.10 공사 특성에 적합한 감리원 적정배치(안전감찰)

- ✓ 강교 등 공사 특수성에 적합한 감리원 배치 미흡 및 감리업무 과다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공사장 중심으로 안전, 구조(교량), 토질(터널, 가시설 등) 전담 감리원을 추가 배치하여, 고품격 시설물 시공과 감리원 입회·확인 없이는 어떠한 공사도 진행불가 및 즉각적 문제 발견·해결을 통한 안전사고 미연 방지를 위한 대책임.
- ✓ 감찰 일부 공사관계자 등이 해당 개선대책을 알지 못해 전담 감리원 미 배치 등의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공사 특성에 적합한 감리원 배치 대책 이행 필요.
- ✓ 기술지원 감리원 운영 개선 및 무자격기술자 퇴출 등 엄중조치 방안과 연계하여 현장 점검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임.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공사 특성에 맞는 전담 감리원 배치여부 확인
- 건설사업관리단의 인력 배치 계획(기술지원 감리원 운영 대책) 사전 확인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터널, 강교 등 공사특성에 적합한 전담 감리원 증원 배치계획 (토목부-19588)

## 2.3.11 직접시공 의무비율 및 대상공사 상향

- ✓ 낙찰업체가 직접시공을 하지 않고, 공사의 대부분을 저가로 하도급하고 있어, 정상보다 부족한 인원 및 장비 등으로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위험성 증대로, 건설공사 직접시공 비율 및 대상공사 상향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한 대책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도금액 기준 50억에서 70억으로, 대상공사 확대와 직접시공 비율 10%는 도금액 기준이 30억~50억에서 30억~70억으로 의무비율이 조정되었으며, 낙찰업체에 대한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 여부 확인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도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다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함.

- ① 도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50%
- ② 도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30%
- ③ 도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20%
- ④ 도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 10%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공사관리관은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직접시공의무 준수여부 확인
- 직접시공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2.3.12 저가 하도급 심사대상 확대

- ✓ 원도급자의 낙찰률이 중·소규모 공사일수록 높으나, 심사대상 하도급 비율은 발주자 예정가격의 60%로 일률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법령 개정 건의 한 대책
- ✓ 저가 하도급 기준금액을 상향(도급액 대비 : 82% 미만, 예정가격 대비 64% 미만)하고, 하도급계약 심사대상 발주자 예정가격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반영된 사항으로 저가 하도급 방지를 위해, 본 대책의 지속적인 이행 필요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이행 및 확인 사항

-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
- 발주자는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 (30일 이내)
-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
-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 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건설산업기본법 제3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2.3.13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 확인

건설공사현장의 안전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 토목, 건축공사로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 총 공사금액 : 서면 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공사금액
- 건설공사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공공공사 등)를 착공하려는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022.8.18.부터 시행)

■ 이행 및 확인 사항

-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계약 확인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 참고 사항

- 기술지도 대상금액 및 점검횟수

구분	건축공사	토목공사	점검횟수
대상금액	1억 ~ 50억 미만 건축법 제11조 대상	1억 ~ 50억 미만 (1개월 이상 공사)	15일 마다 1회 (2회/월)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지도사(건설) 8회에 1회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50억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 150억원 미만) 전담 또는 겸직선임 가능

※ 안전관리자 겸직 선임시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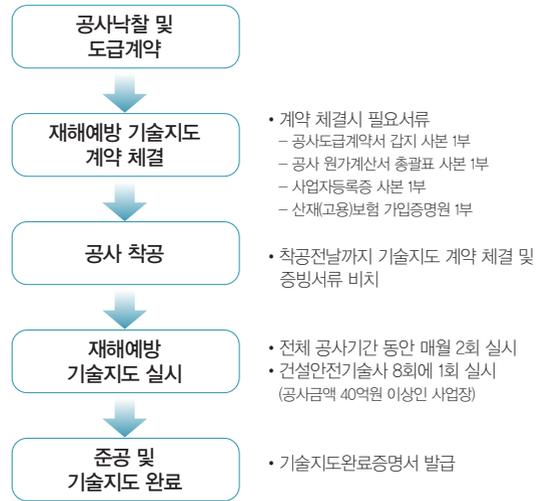
• 기술지도 대상 제외 사업장

-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보고서를 제출)
-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 기술지도 계약 체결시기 및 방법

- 1) 공사착공 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 체결
- 2) 기술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 주관

• 기술지도 진행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항 목	구 분	주요 내용	시행일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개정	• 발주자가 기술지도 계약 체결	2022.08.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개정	• 기술지도 계약 시 전산시스템(K2B)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 사용 • 소방분야 기술지도 별도 신설 (기존 건설 분야)	2021.11.19.

2.3.14 신규현장 안전기술지도 시행

본격적인 공사 진행 전 선제적인 안전기술지도를 시행하고 착공 초기부터 안전의식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함.

■ 이행 및 확인 사항

- 발주된 현장의 시공사, 감리단의 안전기술지도를 안전관리과에 요청

■ 관련 규정

- 도기본 안전관리 방침

■ 참고 사항

- 안전기술지도 flow



• 교육 내용

안전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안전 관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점검 실시 시기, 안전관리비, 건설공사장 참여자의 안전 관리 수준 평가 등 총 10개 항목</li> </ul> </li> <li>•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건설안전 관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칙 및 과태료 현황,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및 교육내용, 안전회의 규정 등,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자의 법적 직무, 안전점검 및 화재 감시자 배치기준, 개인 보호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등 총 15개 항목</li> </ul> </li> <li>• 안전보건경영체계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찾아가는 안전 교육,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건설공사장 재해 유형별 모의훈련,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안전관리비 현장교육</li> </ul> </li> <li>• 책자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과 발간 책자 5종</li> <li>-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li> </ul> </li> <li>• 관련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안전 10계명, 건설공사장 중점 관리 20대 항목 등 13개 방침</li> </ul> </li> <li>• 안전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장의 모든 실태를 평가 하여 위험공사장을 예측하고 사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li> </ul> </li> </ul>

## 2.3.15 체크리스트

순서	항 목	이행 및 확인 사항	확인 결과
2.3.1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확인	• 공사 발주시 설계안전보건 대장을 시공자에게 제공 하였는가?	
		• 시공자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안전전문가가 적정성을 확인 하였는가?	
2.3.2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 및 승인	• 종합정보망(CS)을 통해 제출하였는가?	
		• 공사관리관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설계 안전성검토) 시공자에게 제공하였는가?	
		• 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변경 시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의뢰 및 검토 결과를 통해 심사, 승인하였는가?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후 서면보고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 시공자에게 시정, 보완을 요구하였는가?	
		•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확인(보완포함) 및 승인을 통보 (시공자에게 20일 이내 결과 통보) 하였는가?	
		•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이 아닌 경우, 시공자 에게 지적 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명령을 하였는가?	
		•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수정 및 보완조치를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제출 (종합정보망 업로드) 하였는가?	
2.3.3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의 확인 및 승인	• 공사관리관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및 검토 결과 통보 (시공자에게 15일 이내 결과 통보) 하였는가?	
		•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이 아닌 경우, 시공자 에게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는가?	
2.3.4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 안전보건조정자 지정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일 경우 선임을 하였는가?	
2.3.5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및 지정	• 발주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의 모집공고 및 등록 명부 작성,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가?	
		•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정 공고하였는가?	
		•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공사관리관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및 시공자에게 통보 하였는가?	

순서	항 목	이행 및 확인 사항	확인 결과
2.3.5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및 지정	• 공사관리관은 시공자와 안전점검 수행 기관의 계약을 확인 하였는가?	
2.3.6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계상 확인	• 원가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였는가?	
2.3.7	안전관리비의 계상	•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였는가?	
		• 안전관리비와 관련한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였는가?	
2.3.8	공사손해보험 가입방식 개선	• 공사손해보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였는가?	
		• 공사관리관은 현장별 공사손해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여 미가입 현장에 대해서는공사손해보험 관리책임자에게 취합, 보고하였는가?	
		• 공사손해보험 관리책임자는 개설 현장, 미가입 현장에 대해 통합하여 가입하는가?	
2.3.9	설계설명회 (Kick-off Meeting) 의무화(안전감찰)	• 설계 설명회 의무화 이행 협조문을 각 부서로 발송하였는가?	
		• 공사 착수 전, 주요공정 시공계획 수립 시 공사착수회의 (K.O.M)를 실시하는가?	
2.3.10	공사 특성에 적합한 감리원 적정 배치 (안전감찰)	• 공사 특성에 맞는 전담 감리원 배치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건설사업관리단의 인력 배치 계획을 사전에 확인하였는가?	
2.3.11	직접시공 의무비용 및 대상공사 상향	• 공사관리관은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직접시공 의무 준수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직접시공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였는가?	
2.3.12	저가 하도급 심사대상 확대	•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는가?	
		• 발주자는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30일 이내) 하였는가?	
		•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 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 하였는가?	
		•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였는가?	

순서	항 목	이행 및 확인 사항	확인 결과
2.3.13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 확인	•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 하였는가?	
2.3.14	신규현장 안전기술 지도시행	• 발주된 현장의 시공사, 감리단의 안전기술지도를 안전관리과에 요청하였는가?	

## 2.4 시공단계

### 2.4.1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확인 및 승인

건설공사에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각각 계획, 설계, 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고서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공사관리관 또는 지정한 건설안전 전문가는 3개월 마다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 확인
  - ①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 ②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 ④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계획 변경 확인 및 승인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

### 2.4.2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확인 및 변경 승인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

- 안전한 시공과 공사목적물의 안전, 공사장 주변의 안전을 위해 착공 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시공자의 이행여부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이행여부 확인 후 보고 포함)
- 안전관리계획서 변경사항에 대한 심사 후 승인 통보
- 시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함께하는 정기회의 개최 (안전관리계획 이행, 안전관리비 집행실태 확인, 공종별 위험요소와 저감대책 발굴, 보완 등)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 지도, 감독 성실 이행여부 확인

####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9조 (공사시행 단계)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51조 (안전관리)

### 2.4.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확인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 ■ 이행 및 확인 사항

- 목적 외 사용확인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3호)

#### 2.4.4 안전관리비의 집행 확인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정기 안전점검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을 말함.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 활동실적(안전관리비 실적 등) 보고에 대한 확인

#####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안전관리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 2.4.5 안전점검 이행 확인

공사 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말함.

-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안전점검의 종류 :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점검의 종류 : 작업장의 순회점검,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 작업 전 안전점검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공사관리관은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확인 (국토교통부+종합정보망)
-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대해 시공자에게 수정이나 보완 요청
- 중대한 결함에 대한 조치 이행(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응급조치,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실시 등)

#####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 (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별표7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지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70호)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0조 (안전점검의 계획수립)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 (정기안전점검의 실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1조 (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 ■ 참고 사항

-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

건설공사 종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교량	가시설 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전)	하부공사 시공 시	상부공사 시공 시	-	-	
터널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 시	터널굴착 중기 단계 시공 시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 공사 중간단계 시공 시	-	-	
댐	콘크리트댐	유수전환시설 공사 시공 시	굴착 및 기초 공사 시공 시	댐 축조공사 시공 시 (하상기초 완료 후)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 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 시
	필댐	유수전환시설 공사 시공 시	굴착 및 기초 공사 시공 시	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 시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 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 시
하천	수문	가시설 공사 완료시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공 전)	되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 시	-	-	-
	제방	하천바닥 파기, 누수방지, 연약 지반 보강, 기초처리공사 완료시	본체 및 비탈면 흙쌓기 공사 시공 시	-	-	-
하구둑	배수갑문 공사 중	제체 공사 중	-	-	-	

건설공사 종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상하수도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 펌프장 하수처리장	가시설 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 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 시	구조체 공사 말기단계 시공 시	-	-
	상수도 관로	총 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 시	총 공정의 말기단 계 시공 시	-	-	-
	계류시설	기초공사 및 사석공사 시공 시	제작 및 거치 공사, 향타 공사 시공 시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공 시	속채움 및 뒷채움 공사, 매립공사 시공 시	-
항만	외곽시설 (갑문, 방파제 호안)	가시설 공사 및 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 시	제작 및 거치 공사 시공 시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공 시	속채움 및 뒷채움 공사 시공 시	-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 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 시	구조체 공사 말기단계 시공 시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 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 시	총 공정의 말기단 계 시공 시	-	-	-
	지하차도, 지하상가, 복개구조물	토공사 시공 시	총 공정의 중기단 계 시공 시	총 공정의 말기단 계 시공 시	-	-

건설공사 종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도로·철도·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옹벽	가시설 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콘크리트 타설 전)	구조체공사 시공 시	-	-	-
	절토 사면	발파 및 굴착 시공 시	비탈면 보호공 시공 시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 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콘크리트 타설 전)	뒤메우기 완료 후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 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 시	총 공정의 말기단계 시공 시	-	-	-

건설공사 종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건설 기계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 시	천공 작업 말기단계 시	-	-	-
	향타 및 항발기	향타·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향타·항발 작업 시	향타·항발 작업 말기단계 시	-	-	-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설치작업 시	타워크레인 인상 시 마다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시	-	-
가설 구조물 (시행령 제101 조의 2)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비계 최초 설치 완료 시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	-	-
	작업발판일체형 거푸집	최초 설치 완료 시	설치 말기단계 시	-	-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등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	-
	터널 지보공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 시	지보공 설치 말기 단계 시	-	-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 시	-	-	-
	브라켓 비계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브라켓 비계 설치 시	-	-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 시	-	-	-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 (10m이상)	최초 설치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 시	-	-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 시	-	-	-

※ 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점검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점검 목적	공사 중에 설비의 근원적 안전 확보를 위해 근로자의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안전조치를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	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공사목적물의 결함성을 발견하는 수단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li> <li>•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li> <li>•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li> </ul>
안전점검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장 순회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일 1회 이상</li> <li>- 안전보건총괄책임자</li> </ul> </li> <li>•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개월에 1회 이상</li> <li>-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의 근로자 각 1명</li> </ul> </li> <li>• 작업 전 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업무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li> </ul> </li> <li>• 안전·보건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중대재해 발생사업장</li> <li>②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li> <li>③ 추락, 폭발,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안전점검(일일, 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공중별 육안점검으로 실시</li> </ul> </li> <li>• 정기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를 기준 으로 실시</li> </ul> </li> <li>• 정밀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li> </ul> </li> <li>• 초기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 (시특법 1종, 2종 시설물)</li> </ul> </li> <li>•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li> </ul> </li> </ul>

•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관련, 별표3)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li> <li>나. 드레인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li> <li>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li> <li>라. 언로드밸브(unloading valve)의 기능</li> <li>마. 윤활유의 상태</li> <li>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li> <li>사.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li> </ul>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li> <li>나.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li> <li>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li> </ul>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li> <li>나.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li> <li>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li> </ul>
리프트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li> <li>나.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li> </ul>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방호장치·브레이크의 기능</li> <li>나. 와이어로프·슬링와이어(sling wire) 등의 상태</li> </ul>
양중기의 와이어로프·달기체인·섬유로프·섬유벨트 또는 훅·샤클·링 등의 철구 (이하 "와이어 로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고리 걸이작업을 할 때	와이어로프 등의 이상 유무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li> <li>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li> <li>다. 바퀴의 이상 유무</li> <li>라.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li> </ul>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li> <li>나.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li> <li>다.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li> <li>라.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li> <li>마.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훅·균열·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li> </ul>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용접·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여부</li> <li>나.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여부</li> <li>다.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여부</li> <li>라.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조치 여부</li> <li>마.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li> </ul>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li> <li>나.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li> <li>다. 카바이드·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li> <li>라. 그밖에 하역운반기계 등의 적절한 사용방법</li> </ul>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훅이 붙어 있는 슬링·와이어슬링 등이 매달린 상태</li> <li>나. 슬링·와이어슬링 등의 상태(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 수시로 점검)</li> </ul>

· 안전점검의 종류(건설기술진흥법)

구분	주요 내용	
자체안전점검	실시자	협업체, 시공자
	시기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공종별 실시
	내용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해 시행 - 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포함하여 위험도 관리, 협업체 회의, 일상안전교육과 연계성을 확보, 유지하면서 점검 실시 - 양식은 시공새(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작성, 활용
정기안전점검	실시자	발주자가 지정한 건설안전 점검기관
	시기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
	내용	•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품질 및 시공 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
정밀안전점검	실시자	발주자가 지정한 건설안전 점검기관
	시기	정기안전점검결과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내용	• 물리적, 기능적 결함 현황 및 원인 분석, 구조안전 여부 • 보수, 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대책
초기안전점검	실시자	발주자가 지정한 건설안전 점검기관
	시기	준공직전
	내용	시특법에 규정한 1종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 현장으로 정기 안전 점검 수준이상 점검
공사재개점검	실시자	발주자 판단
	시기	공사재개 전
	내용	시특법에 규정한 1종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로서 1년 이상 방치한 현장으로 자체점검 또는 정기점검 수준 이상

2.4.6 안전교육 이행 확인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공법의 이해, 세부 시공순서 및 안전시공 절차 이해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이행 및 확인 사항

- 안전교육 실적보고 확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육 실시 및 기록여부 확인
-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성실 이행여부 확인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5조 (안전관리)

■ 참고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교육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법적 근거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65조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시행령 제103조 (안전교육)
안전 교육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관리감독자)</li> <li>•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li> <li>• 특별안전보건교육</li> <li>•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li> <li>•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li> <li>•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li> <li>•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교육 :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 - 당일작업의 공법이해, 시공 상세 도면에 따른 세부시공순서와 시공 기술상 주의사항 포함</li> <li>-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 관리</li> <li>- 공사준공 후 발주청에 제출</li> </ul>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4)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판매업무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 1주일 초과 1개월이하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인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5 제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li> <li>•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li> </ul>
마.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2.4.7 정기적인 회의 개최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함께 공사시행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안전관리비집행실태 등을 확인하고 공중별 위험요소와 그 저감대책을 발굴 및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

• 안전관리담당자와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 실시

■ 이행 및 확인 사항

- 공사관리관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다만, 구체적인 회의 방법 및 시기는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①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 ② 안전관리비 집행실태 확인
  - ③ 공중별 위험요소와 그 저감대책을 발굴 및 보완 여부 확인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9조 (공사시행 단계)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2조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 참고 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법적 근거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9조
회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협의체
주기	3개월 1회	2개월 1회	매월 1회	매월 1회
구성	노사 동수 구성	노사 동수 구성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	도급인과 하수급인
심의·의결 협의 사항	아래표 참조	아래표 참조	아래표 참조	·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안전관리비 집행실태 확인 · 공종별 위험요소와 그 저감 대책을 발굴 및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 확인
비고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의 방법 및 시기는 발주청이 시공자 및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 회의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 협의체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대상	공사금액 120억 이상 (토목 150억 이상)	공사금액 120억 이상 (토목 150억 이상)	도급사업
구성	1) 근로자위원 ① 근로자대표 1인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인 ③ 근로자 대표가 지명한 9인 (②의 위원을 포함 하여 9인) 2) 사용자위원 ① 해당 사업의 대표 ② 안전관리자 ③ 보건관리자 ④ 산업보건(해당 시) ⑤ 해당사업의 대표가 지명한 9인 이내의 사업장 부서의 장	1) 근로자위원 ① 근로자대표 1인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인 ③ 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의 각 근로자 대표 2) 사용자위원 ①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② 안전관리자 1인 ③ 보건관리자 1인 ④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

구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 협의체
주기	· 정기회의 : 3개월 마다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정기회의 : 2개월 마다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매월 1회 이상
심의·의결 사항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 및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비고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협의체 구성 및 운영(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구분	협의체 운영계획	정기적인 회의 병행할 경우
법적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9조 (공사시행 단계)
구성	<input type="checkbox"/> 안전관리담당자 <input type="checkbox"/> 수급인과 하수급	<input type="checkbox"/> 공사관리관 <input type="checkbox"/>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input type="checkbox"/> 안전총괄책임자 <input type="checkbox"/> 안전관리책임자
운영	<input type="checkbox"/>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 회의 결과 기록, 보존	
협의내용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보고 <input type="checkbox"/> 안전관리비 집행실태 보고 <input type="checkbox"/> 공중별 위험요소와 그 저감대책을 발굴하기 위한 위험성평가(회의) 이행 보고

#### 2.4.8 안전사고 조사 및 조치결과 확인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등 조치 결과 등 확인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가 작성한 사고조사 보고서 확인
- 현장 사고조사 실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결과 확인
- 사고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정보망(www.csi.go.kr)의 사고신고시스템 또는 전화·팩스를 활용하여 제출하고 그 결과를 보관·관리
  - ①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현장주소)
  - ② 사고발생 경위
  - ③ 피해사항 (사망자수, 부상자수)
  - ④ 공사명
  - ⑤ 공사현황
  - ⑥ 사고원인 및 사고 발생 후 조치사항
  - ⑦ 향후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대책
  - ⑧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 자체적으로 상세현장조사 또는 정밀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5조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61조 (사고조사 등)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5조 (안전관리)

##### ■ 참고 사항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법적 근거	시행규칙 제3조 (중대재해의 범위) 시행규칙 제67조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시행규칙 제7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시행령 제105조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범위	◎ 중대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건설사고 •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보고	◎ 산업재해 발생보고 • 중대재해 즉시 (지체없이) -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조치 및 전망 -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재해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1개월 이내 • 보고 : 관할지방노동관서	◎ 건설사고 통보 • 발생사실 인지 즉시 -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사고발생 경위 - 조치사항 - 향후 조치계획 • 통보 : 발주처, 인허가기관

■ 참고 사항

• 안전보건관계자의 직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구분	직무내용	구분	직무내용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③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⑤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안전 총괄책임자	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②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 감독 ③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④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⑤ 협의체의 운영 ⑥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⑦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자체안전점검"이라 한다)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⑧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휘·감독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⑨ 그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서의 검토·이행 ②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③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④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⑤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⑥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⑨ 그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 관리책임자	①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서의 검토·이행 ②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③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④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⑤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⑥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구분	직무내용	구분	직무내용
관리 감독자	① 당해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②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 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③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④ 당해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⑤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⑥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⑦ 그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 담당자	①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②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③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 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③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④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⑤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⑥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⑧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⑨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⑩ 그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2.4.9 안전문서 관리(설계도서 등 검토 업무)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공사관리관은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외부로 유출시 승인

### ■ 관련 규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 2.4.10 안전관리 수준 평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평가 기관이 총공사비(전기·소방·통신 공사비는 제외하되,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다만, 「국유재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채납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

- ① 공기가 50%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 ② 영 제4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등록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현장과 본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한한다)
  - ③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현장과 본사
- 공동도급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공동 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 별로 실시
-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에게 요구
  -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여부 확인
- ### ■ 관련 규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4장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 2.4.11 일요일 건설공사 금지 및 주말·휴일작업계획서 확인, 승인

- ✓ 건설현장에서 주말, 휴일작업 시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 및 근로자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중대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건설현장 주말, 휴일작업 안전관리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주말·휴일 작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 ✓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음.

- 적용대상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위험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도기본 발주공사
- 제출처 : 120억 이상 현장(관할 고용노동관서), 50억~120억 미만 현장 (안전보건공단관할 지역본부/지사), 도기본
- 행정조치 : 고위험작업 위주로 작업계획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미제출 현장, 작성 항목 누락 현장, 관리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상주 여부, 단위작업별 안전조치 수준(조치 미흡) 등에 따라 불시 감독 실시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주말, 휴일작업 계획서 제출 확인 및 승인
-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를 시행한 경우 사후 승인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별표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2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 건설현장 주말·휴일작업 안전관리 강화조치 안내 (건설산재예방정책과-459)

### 2.4.12 상시 안전점검 체계 유지

- ✓ 정기 안전점검 시행 (정기점검, 외부위원 합동점검, One Day 점검 등)
- ✓ 안전사고 대비 모의훈련 시행
- ✓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 ✓ 안전사고 발생현장 관리 강화
- ✓ 관리감독 공백시간 관리 (주말 승인 없이 작업하는지 여부 점검)

#### ■ 이행 및 확인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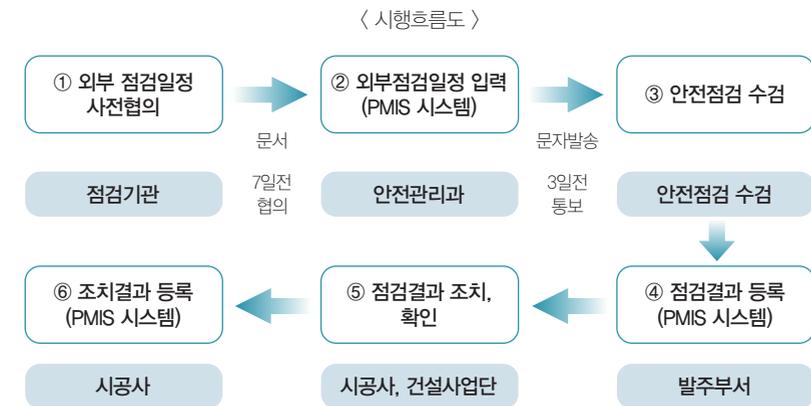
- 공사관리관 월 1회 이상 현장 안전점검 시행 및 시행 결과를 안전관리과에 제출 (One Day 점검)
- 연 2회 이상 모의훈련 추진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여부 확인
- 제출된 위험공종 작업허가서 확인 및 위험 사전작업 허가제 준수여부 확인
- 휴일작업 승인여부 확인 및 감리원 현장 상주여부 점검

#### ■ 관련 규정

- 도기본 안전관리 방침

#### ■ 참고 사항

(1) 정기 안전점검 시행(정기점검, 외부위원 합동점검, 불시점검)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① 분야별 (구조, 토질 및 기초, 품질, 안전분야) 외부 전문위원과 합동으로 월 안전점검 횟수를 한 현장에 1회 이상 실시하여 현장 안전관리 상태 강화
점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검토</li> <li>• 전문분야 위원 (구조, 토질, 안전, 품질분야)들을 적극 활용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설계 상세도, 공법적용현황 등 검토</li> <li>• 기타 안전관련 준수사항 점검</li> </ul>
시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 실시 (구조분야, 토질분야, 안전분야, 품질분야)</li> <li>• 안전관리과 1~2회/월.</li> </ul>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② 건설사업관리단 및 현장 안전관리자 일일점검 체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관리자들에게 안전대책 시행여부를 일일 점검하여 일지에 기록하게 하고 점검을 통해 상시 안전관리 강화</li> <li>• 안전관리과 및 공사담당자 현장 점검 시 감리일지 및 시행 여부 확인</li> </ul>

〈 시행흐름도 〉

```

graph LR
    A[일일작업에 대한  
안전활동 및  
활동내용 일지정리  
건설사업관리단] --> B[현장점검 시  
안전활동 사항 및  
7.4제 현황 확인  
공사관리관  
안전관리과]
    B --> C[현장조치사항  
확인  
공사관리관  
안전관리과]
    C --> D[안전활동 미흡으로  
지적사항 2회 발생 시  
감리교체 등 제재  
공사관리과]
  
```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③ 공사관리관 One-day안전점검	
	• 공사전장 점검 피로도 감소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시 기	매월 1회 이상
점검방법	공사시행부서 자체 점검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 점검 시행 1회 이상
결과보고	시행 결과를 안전관리과에 제출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④ 건설기계 안전점검	
	• 안전관리과에서 건설기계 점검 계획을 총괄 수립하고 시설국 설비부, 도시철도국 설비부에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시행 및 점검결과 통보
대상장비	• 사고빈도가 높고 점검을 통한 예방효과가 큰 건설기계 4종 집중관리 • 건설기계 4종 : 카고크레인, 기중기, 천공기, 항타·항발기
점검내용	• 작업계획서 작성, 해당 면허소지, 정기검사 수검여부 등 서류점검 • 안전장치 불량, 구조부 균열등 건설기계 안전성 점검 • 5년 이상 노후장비 반입 전 안전점검 실시여부 확인 •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가 장착되도록 안내 및 홍보
점검횟수	• 연 2회 실시(상·하반기)
점검반 구성	• 2인1조 운영 : 본부직원 1명, 외부전문가 1명 • 본부직원 : 시설국 설비부, 도시철도국 설비부 • 외부전문가 :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검사원 등

(2) 안전사고 대비 모의 훈련 시행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사고피해 최소화 및 사고대처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공사장의 안전 관리 수준 및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시행시기	• 연 2회(장마철/동절기)
시행내용	• 지정된 모의훈련 유형에 따라 현장상황에 적합하게 훈련일시, 방법, 유관기관 참여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 실시 • 경찰,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교통 통제 및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유관기관(병원, 한전, 상수도, 도시가스 등)은 사전협의를 지양하고 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 체계, 시간 내 도착 및 임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사고대비 훈련 실시 • 컨트롤타워(현장상황실)를 운영하고 보고체계 점검 및 미비사항 체크 하고 상황별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SNS를 활용한 실시간 사고보고 훈련 실시
훈련유형	① 추락·낙하, ② 붕괴(가설구조물, 사면, 막장), ③ 지하매설물 파손 ④ 건설기계, ⑤ 화재폭발, ⑥ 감전 ※ 6개 사고유형 중 공사장별로 공중에 따른 가장 취약한 유형을 선택

(3) 위험작업 허가제 시행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 사고발생 위험성이 큰 공중에 대하여 사전에 현장 해당 공사 관계자들이 사전 예방활동을 수행하여 안전성 증진 및 해당 공사 관계자의 위험 공중에 대한 책임감 고취
	• 위험작업 허가제 승인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b>시공사</b> 위험공중 작업허가서 작성 및 이행         </div> <div style="font-size: 2em; color: #0070c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b>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b> 검토 및 승인         </div> </div>

구분	항 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성평가에서 결정된 최상위 위험 등급 중 1개 작업을 허가 대상을 필수로 지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성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 위험성평가 적용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마다 1개를 지정하여 관리</li> </ul> </li> <li>· 수시 위험성평가 적용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시평가 시기 마다 1개를 지정 하여 관리</li> </ul> </li> </ul> </li> </ul> </li> </ul>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설 구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설베트 설치 및 해체 작업</li> <li>공중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li> <li>터널 수직구 워킹타워 조립 및 해체 작업</li> <li>바브켓을 사용하는 흙막이 가시설 해체 작업</li> <li>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작업 (상승포함)</li> </ul> </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li> <li>항타 및 항발기 조립 및 해체 작업</li> <li>100톤 이상 이동식 크레인 조립 및 해체 작업</li> <li>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한 맨케이지 탑승 작업</li> </ul> </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소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달비계 사용 작업</li> <li>높이 4M 이상 가설방음벽 및 방음판 설치 및 해체 작업</li> </ul> </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기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 (반경 5m 이내 가연성물질 존재하는 장소)</li> <li>※가연성물질 : 단열재, 스티로폼, PVC, 유류, 종이, 합성수지, 목재 등</li> </ul> </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간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 포장 작업</li> </ul> </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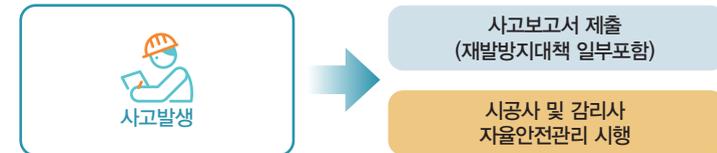
(4) 안전사고 발생현장 관리강화 및 부실현장 제재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사고 발생현장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부실현장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로 안전문화 정착 유도</li> </ul>		
현황 및 문제점	재발방지대책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서에 첨부된 재발 방지대책을 형식적으로 수립하여 보고되고 있음
	이행상태점검	현장에서 수립한 재발방지대책은 시공사와 감리사의 자율안전관리체계로 별도의 확인이나 검토를 거치지 않고 있어 재해와 유사한 위험징후를 무시하고 방치 되는 경우 발생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실 적용성이 높은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도록 시행</li> <li>모든 공사장 사고 발생 후 재발 방지대책 이행상태 특별 점검 수행</li> </ul>	

- 안전관리 부실 현장 “강력한 제재”
  - 중점관리 20대 항목 1회 적발 시 현장 경고, 2회 적발 시 벌점위원회 상정(근로자 안전 10계명 포함)
  -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하여 부실현장 관리
    - ※ 공중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중 안전점검표에 반영(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 안전모, 안전대 착용 등 안전문화(1단계) 정착되어 가고 있어 “추락 및 전도” 사고 예방시설에 대한 집중관리
    - ⇒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과 함께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벌점위원회 상정
    - \* 경고 유효기간 : 안전 경각심 고취를 위해 현장별 최초 경고일로부터 1년간 유효

안전난간 미설치	전도방지시설 미설치
2m이상 추락위험 단부 (작업발판 및 구조물 개구부)	작업중 이동식비계(작업발판 기준 2단이상) 아웃트리거를 사용하는 건설기계

• 당초



• 개선



2.4.13 대형 붕괴 재해 대비 지도 점검 시행

- ✓ 강교 및 중량물 설치 및 해체 지도점검
- ✓ 거푸집동바리 콘크리트 타설 전 지도점검
- ✓ 흙막이가시설 굴착단계별 지도점검
- ✓ 비계 설치·해체 전 지도점검

■ 이행 및 확인 사항

- 공사관리관은 담당 현장의 지도점검 대상 여부 확인 후 지도점검 요청
  - 강교 및 중량물 설치 및 해체작업
  - 거푸집동바리 콘크리트 타설작업
    - ① 타설 높이 : H=4.2m 이상(최대높이) >> 타설량 : 건축 150㎡ 이상/일, 토목 300㎡ 이상/일
    - ② 타설 높이 : H=5m 이상(최대높이) >> 타설량과 무관
  - 흙막이가시설 작업(굴착 전, 굴착 중, 해체 전)
  - 비계 설치 · 해체 전 점검

■ 관련 규정

- 도기본 안전관리 방침

■ 참고 사항

(1) 강교 및 중량물 설치 · 해체 지도점검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 강교 등 중량물 설치 및 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장비 전도재해, 중량물 낙하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작업자 및 시민의 생명을 보호	
점검방법	· 중량물 설치 해체 작업 전 건설현장의 사전지도점검 요청에 따라 사전점검 및 현장점검 시행
주요 점검내용	· 작업계획서 내용 검토 · 장비(크레인) 설치에 따른 제반사항 점검 · 관계 근로자 작업계획 공유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작업 시 중점관리사항 및 안전대책 수립 여부 등
(2)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타설 전 지도점검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 대규모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 동바리를 외부전문가와 같이 점검 및 확인함으로써 대규모 붕괴사고 예방	
점검방법	· 타설높이 : H=4.2m 이상(최대높이) >> 타설량 : 건축 150㎡ 이상/일, 토목 300㎡ 이상/일
주요 점검내용	· 거푸집 동바리 설계도서 사전 검토, 거푸집 동바리 현장설치 상태 점검 · 관계 근로자 작업계획 공유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작업 시 중점관리사항 및 안전대책 수립 여부 등

■ 참고 사항

(3) 흙막이가시설 굴착단계별 지도점검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 흙막이가시설의 굴착단계(굴착 전, 굴착 중, 해체 전)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점검을 시행하여 흙막이가시설 및 옹벽 등의 대형 붕괴사고 예방	
· 흙막이가시설 굴착 전, 굴착 중, 해체 전에 대한 지도점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굴착 전 :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공계획서, 계측계획 등의 적절성에 대한 지도 점검</li> <li>- 굴착 중 : 설계도서와 시공순서 및 설치상태의 적정성, 안전성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굴착 전, 해체 전과 다르게 안전점검 시 수행</li> <li>- 해체 전 : 해체 중 안전검토, 해체 시 발생하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 등 지도점검</li> </ul>	
· 흙막이가시설 굴착단계별 지도점검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굴착 전과 해체 전 사전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로 단계 진행 시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에 준하여 제재</li> </ul>	
기대효과	· 굴착공사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점을 사전지도점검과 안전점검을 통해 예방하여 흙막이가시설 안전성 확보

(4) 비계 설치 · 해체 전 지도점검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 비계의 설치 해체 전 지도점검을 시행하여 비계로 인한 대형 붕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대상현장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폐쇄형</th> <th>개방형</th> <th>터널형</th> <th>공중비계</th> </tr> </thead> <tbody> <tr> <td>형태</td> <td>'ㄱ', 'ㄷ'형</td> <td>'L', 'ㅡ'형</td> <td>터널내</td> <td>교량하부 등</td> </tr> <tr> <td>기준 (높이)</td> <td>15m 이상</td> <td>10m 이상</td> <td>강관 및 시스템비계 4m 이상</td> <td>편도 3차로 이상 횡단</td> </tr> </tbody> </table>	구분	폐쇄형	개방형	터널형	공중비계	형태	'ㄱ', 'ㄷ'형	'L', 'ㅡ'형	터널내	교량하부 등	기준 (높이)	15m 이상	10m 이상	강관 및 시스템비계 4m 이상	편도 3차로 이상 횡단
	구분	폐쇄형	개방형	터널형	공중비계											
형태	'ㄱ', 'ㄷ'형	'L', 'ㅡ'형	터널내	교량하부 등												
기준 (높이)	15m 이상	10m 이상	강관 및 시스템비계 4m 이상	편도 3차로 이상 횡단												
주요 점검내용	· 설치 전 :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공계획서 사전 지도점검 · 시공 중 : 변형, 침하 등 위험요인 발생시 현장 요청에 의한 컨설팅 · 해체 전 : 해체 중 안전 검토, 해체 시 발생하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 등															

## 2.4.14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

- ✓ 공사관계자 안전직무 역량강화 교육 시행
- ✓ 건설 근로자 및 외국인 노동자 찾아가는 안전교육 시행
- ✓ 안전한 현장 만들기 3!3! 법칙 교육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공사관리관 안전직무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 (상, 하반기 2회)
- 안전관리과에서 교육 시행 요청 시 장소 제공 및 근로자 참여 등 업무 협조
- “근로자 안전 10계명”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시행여부 확인

### ■ 관련 규정

- 도기본 안전관리 방침

### ■ 참고 사항

(1) 공사관계자 안전직무 역량강화 교육 시행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 공사관리자, 감리자, 시공사의 안전직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 및 직무지식을 교육 함으로써 안전수준 향상과 직무역량 제고
교육일정	• 총 2회(상, 하반기 교육)
교육대상	•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사 공사관계자
교육내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위험성평가, 흠막이가시실에 관한 안전교육 • 본부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및 현장 안전관리 컨설팅 설명 • 발주자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및 동영상 기록관리 • 안전공학개론과 휴먼에러 사례, 건설공사장의 주요 재해 사례 등



직무역량 강화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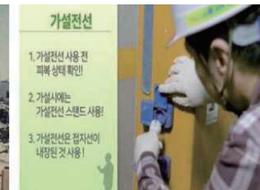
공사참여자 수준평가

### ■ 직무능력 수준평가

- 대상 / 평가 : 교육참여자 전원 / 건설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수준평가 합격기준 : 70점 이상

(2) 건설근로자 찾아가는 안전교육 시행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 본부 건설공사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 하여, 본부 건설현장에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교육대상	• 본부 건설공사장에 참여하는 모든 작업자
교육방법	• 본부 안전분야 위원 등 전문가와 활용, 1인 1현장 찾아가는 안전교육 시행
교육시기	• 1월~12월
교육내용	• 모든 작업자가 알기 쉽고 몸에 익힐 수 있는 내용의 건설안전 교육 • 안전사고 동영상(사례 및 예방)등 시각자료를 활용한 사고사례 중심 안전교육
기대효과	• 모든 작업자가 본부 주관 안전교육에 참여, 현장 작업자 안전의식 제고 • 최근 사고사례 전파 및 현장 중심 예방교육으로 안전사고 최소화

(3) 외국인 노동자 찾아가는 안전교육 시행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 본부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통역원이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 및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
교육일정	• 총 2회 (상, 하반기 교육 - 반기에 1회)
교육대상	•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근로자
강사 및 통역원	• 전문강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외국인 근로자 전문강사 (지원) • 통역원 : 건설안전 통역 및 외국인 상담 유경력자
교육내용	• 건설현장 안전의 이해, 안전한 작업방법 및 사고 예방대책 • 외국인 근로자의 기초 안전교육 및 현장 위험요소에 대한 대처방안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콘텐츠 활용	•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시 모국어로 제작된 안전교육 영상을 활용하여 교육 • 대상국가 :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 안전교육 동영상 - 영상시간 : 1편당 2분 내외 - 제작편수 : 안전모 미착용에 의한 재해사례 등 총 21편 - 영상내용 : 재해발생 사례, 안전수칙 준수사항 등



가설전선

1. 가설전선 사용 전 필독 사항 확인!
2. 가설사에는 가설전선 스프레드 사용!
3. 가설전선은 합선선이 내장된 것 사용!

#### 2.4.15 “근로자 안전 10계명” 일상화 추진

근로자 스스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 안전 10계명”과 더불어 “안전한 현장 만들기 3!3!3!” 법칙 일상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현장 관계자 “근로자 안전 10계명” 교육 및 준수여부 확인

##### ■ 관련 규정

- 도기본 안전관리 방침

##### ■ 참고 사항

착공부터 준공까지 “근로자 안전 10계명”일상화 추진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장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 준수 등에 의한 원시적 사고로, “근로자 안전 10계명”을 선정하여 현장 근로자가 빠 속까지 각인되도록 생활화하여 안전 사고예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관계자 지속적 교육 실시</li> <li>• 안전교육 교재에 게시하여 홍보 활용</li> <li>• 현장에 투입되는 순간 “근로자 안전 10계명”을 볼 수 있도록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시장소 : 작업장 입구, 안전교육장, 식당, 사무실, 근로자 이동 통로 등 근로자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장소</li> <li>- 작업반장은 작업 개시 전 근로자 안전장구 지참여부 확인 및 근로자 안전 10계명 환기 후 작업 개시</li> </ul> </li> <li>• 근로자 안전 10계명 위반자는 당일 작업에서 배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안전 10계명” 교육 및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안전 10계명”문안 및 설치사례</li> </ul>	



근로자 안전 10계명 포스터



현장 설치 사례

- 건설기계 10대 안전 수칙 홍보 및 점검 시행

#### 2.4.16 부실 건설업체 상시 모니터링 강화(안전감찰)

- ✓ 업체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부도 발생, 부당이득을 위한 무리한 공사 진행에 따른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대가(기성)청구 시 발주 부서 공무원의 KISCON 확인 기재 (확인결과 : 이상없음)를 의무화한 대책
- ✓ 발주부서에서 계약부서로 선금, 기성금 등 청구시 기성·감독조서 작성시 KISCON에서 업체의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기재하고, 계약부서에서는 기성(감독)조서의 행정처분 사항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KISCON을 통해 이중으로 확인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하나, 미 이행하고 있다는 감찰 결과를 반영하여, 상시 모니터링 이행관리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기성·감독조서 작성 시 KISCON의 “건설업체 정보”조회를 통한 행정처분 사항 확인·기재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부실건설업체 상시 모니터링 강화계획 (건설총괄부-21536)

#### 2.4.17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강화 (안전감찰)

- ✓ 시공계획서에 안전관리계획을 현장여건에 맞게 작성·승인하고, 근로자·시설물 안전 대책, 수해예방, 재난대책 등을 별도 항목으로 검토 강화하도록 한 대책
- ✓ 감찰 결과, 공종별 근로자·시설물 안전대책 수립이 미흡하고, 수해예방, 재난대책 등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행 및 확인 사항 실행 강화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강화 이행 협조문 발송
- 시공계획서가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및 승인
- 공종별 근로자·시설물 안전대책 확인
- 공종별 수해예방, 재난대책 확인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작성 및 검토 내실화 방안보고 (도시철도설계부-7329)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설계도서의 작성 등)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1조 (시공계획 검토)

#### 2.4.18 불법 하도급과 품떼기 근절(안전감찰)

- ✓ 다단계 불법 하도급과 품떼기(능률급) 고용방식에 따른 무리한 졸속공사로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 ✓ 감찰 결과, 대다수 현장에서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감리원의 확인과 현장내 홍보(포상금 지급 문구 포함 홍보물 게시 및 신고서 비치) 등의 대책이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속적으로 이행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안전대책 이행 협조문 발송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자)
- 감리원 확인여부 및 시공자 현장 내 홍보물 게시여부 확인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불법 하도급과 품떼기 근절대책 보고 (토목부-20037)

#### 2.4.19 안전조회(Tool Box Meeting)시 5RP 제도 시행(안전감찰)

- ✓ 안전조회 후에 작업장 위치와 세부공종(토공,가시설 등)으로 나누고 작업그룹별·공종별로 편성하여 5RP(Risk Point)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내실있는 안전조회가 이루어지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 대책
- ✓ 감찰 결과, 별도의 5RP 작성없이 안전교육만 실시하거나, 외국인 근로자 전담 책임자 미지정, 외국인 근로자 교육 및 관리내용 월2회 발주청 미보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 TBM 및 위험요소 5RP 항목 재교육 미실시, 5RP 작업현장 게시판 미게시 등 전체적으로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안전대책의 지속적인 이행관리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5RP 제도 시행 및 적정 운영 보고여부 확인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안전조회 시 5RP 실행계획(도철토목부-11594)

#### 2.4.20 무자격기술자 퇴출 등 엄중조치(안전감찰)

- ✓ 건설공사 착수와 동시에 해당 공사의 공중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자격 미달자 현장근무, 면허대여자 허위 근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리원이 해당 현장의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의 자격 요건 및 허위근무 여부에 대해 조사(정기·수시) 하고, 분기별로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한 대책
- ✓ 감찰 결과, 안전대책을 대부분 알지 못해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감찰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 점검을 할 때에, 건설기술자 배치현황 및 무자격기술자 근무 여부를 조사하고 분기별로 보고하는 대책이므로 지속 이행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건설기술자 자격기준 입찰안내서에 제시
- 감리원의 건설기술자 자격 요건 등 조사결과 분기별 보고여부 확인
- 공사관리관 현장 안전점검 등 업무수행 시 기술자 자격 요건 확인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무자격기술자 퇴출 등 엄중조치방안 세부실행계획 (도철토목부-10335)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 2.4.21 신속하고 다양한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개선(안전감찰)

- ✓ 지하터널 등 특수공간에 대해 재난상황이 현장 끝선까지 전파되도록 설계에 반영(위치, 종류 등)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경보시설을 설치(시설물 인계 시까지)하여, 작동여부를 정기(매월)적으로 확인하고, 대피도면을 부착하는 등 재난상황 전파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 ✓ 공사관계자 등이 해당 대책을 알지 못해 설계도면 및 지하터널 등 특수공간 경보시설(위치, 종류 등 명시) 반영과 비상경보시설 작동여부 매월 점검, 대피도면 출입구 부착 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감찰 결과를 반영하여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개선대책의 지속적인 이행관리가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입찰안내서 및 설계에 지하터널 등 특수 공간 작업장 비상경보시설 반영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지하터널 등 특수공간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개선 실행계획 (도시철도 토목부-10335)

#### 2.4.22 감리단 시공오차 검측결과 적정성 수시 확인(안전감찰)

- ✓ 시공오차 발생 시에 계획 변경, 감리원의 발주청 보고 등 감리원의 조치 미흡과 주요 구조물의 시공 상태 검측 부실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립한 “감리단 시공오차 검측결과 적정성 수시 확인” 대책
- ✓ 구조적 주요부위와 가시설 등에 대하여 감리단의 검측결과를 공사관리관이 검사항목(Check-point)에 포함하여, 최소 월1회 이상 정기 점검하도록 하였지만, 감찰 결과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에 따라 시공오차 검측결과와 적정성 수시 확인을 통해 부실한 검측이 되지 않도록 본 대책의 지속적인 이행관리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공사관리관이 구조적 주요부위와 가시설 등에 대한 감리단 검측결과를 반영하여 검사항목(check-point) 작성 후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 이행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감리단 검측결과와 적정성 확인방안 (토목부-19847)

#### 2.4.23 기술지원 감리원 운영 개선(안전감찰)

- ✓ 기술지원 감리원(비상주)은 책임감리원이 요청하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시공 상세 도면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리용역회사의 조직 위계상 책임감리원이 기술지원 감리원에게 검토를 요청하기 쉽지 않아서, 내실 있는 현장지원이 곤란하여, 기술지원 감리원은 규정 이외 책임감리원 요청이 없어도 주요 구조물의 현장조사 분석 및 기술적 검토, 주요 구조물 및 중요한 시공 상세도면 검토, 중요한 설계 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및 구조 안정성검토,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등 업무수행을 하도록 한 대책
- ✓ 감찰 결과, 일부 공사관계자 등이 해당 개선대책을 알지 못해 기술지원감리원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개선대책의 적극적인 이행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기술지원 감리원의 운영 대책 이행 협조문 재 발송
- 기술지원 감리원의 운영 대책 이행 확인(기술지원 감리원 활동 실적)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책임감리 제도 역할강화 세부시행 계획 (토목부-21008)

#### 2.4.24 책임감리원 공사중지권 시행 보장

- ✓ 부실시공, 시공오차 등이 발생한 경우에 감리단은 시정·공사 중지 명령 등 제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기한 지체상금 부담으로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와 감리단까지 공정관리 책임을 묻는 경향 등으로 공사 중지 등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사고 우려 시 책임감리원은 “공사 중지명령 조치” 확행과 공정지연 부담에 대해서 감리원에게 공정지연에 대한 책임 면제, 공기 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 시 감리 용역기간 연장 및 감리비 별도 계상조치토록 한 대책
- ✓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61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제40조의2(불이익 조치의 금지), 제40조의3(면책)에 명시되어 있으며, 책임감리원의 공사중지권 보장과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해 본 대책의 지속적인 이행관리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부실시공, 시공오차 등이 발생한 경우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공사중지권 시행 보장 (협조문 발송, 활동실적 확인)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책임감리 제도 역할강화 세부시행 계획 (토목부-21008)
-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61조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 2.4.25 외국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보급(안전감찰)

- ✓ 서울시의 복잡한 공사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미흡 및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체계 미흡 사항 개선을 위해, 건설공종별 소규모 공사장과 외국인 근로자용 매뉴얼 발간, 외국어 안내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 등을 위한 개선대책
- ✓ 일부 공사관계자 등이 해당 개선대책을 알지 못해 외국어(다국어) 안내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 대책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감찰 결과 확인됨에 따라, 본 대책의 적극적인 이행관리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건설공종별 소규모공사장과 외국인 근로자용 매뉴얼 보급 및 활용방법 홍보
- 외국어 안내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 확인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보급 추진계획 (도시철도공무부-912)

#### 2.4.26 주기적 안전교육 및 맞춤형 매뉴얼 작성 보급

- ✓ 본부에 적합한 안전관련 규정 및 세부지침 부재,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 정립 부재, 공사 관리관의 안전관리 역량 부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한 대책
- ✓ 2014년 3월 건설안전기본지침을 제정하고 2021.06.01. 개정작업을 완료하여 신규 현장 안전기술 지도 및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지침과 흠막이 가시설 계측관리 분석 관리지침 수립,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매뉴얼 전파, 연중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관리와 공사 관리관의 역량향상에 기대효과가 높으므로 본 대책의 지속적인 이행관리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안전관리과에서 실시하는 공사관계자 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
- 건설안전기본지침 및 안전사고 매뉴얼 등의 보급 및 활용방법 홍보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건설안전 기본지침 제정 및 활용계획(안전관리과-299)

#### 2.4.27 공사장 휴게실 설치 의무화 및 환경정돈(안전감찰)

- ✓ 휴게 공간 부족 등 근로자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근로자의 휴게 공간 설치 법제화 법률개정 건의 및 무질서한 작업도구, 자재 등 정리정돈과 안전사고 예방강화를 위한 대책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대다수 현장에서 수급인별 근로자에 대한 휴서기, 휴한기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휴게시설 설치 운영관리 상태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이행 관리 필요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시행 2022. 8. 18.

-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이행 및 확인 사항

- 휴서기, 휴한기 공사장 휴게실 설치 등 운영관리 상태 확인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방재안전시설부-4236)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620호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 2.4.28 근로자 음주·흡연 관리방안 추진

- ✓ 건설현장 내 근로자가 음주상태에서 작업 시 불안정한 행동 유발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자 보호 및 산재사고 방지를 위해 근로자 음주·흡연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작업 전 모든 근로자에 대한 음주측정 및 교육실시, 별도의 구획된 흡연구역(소화기 비치) 설치 등을 위한 대책
- ✓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 운동의 일환으로 대부분 현장에서 상시 운영되고 있는 대책으로 상시 관리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근로자 음주·흡연에 대한 관리방안 이행 확인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로자 음주·흡연 관리방안 (방재안전시설부-2481)

#### 2.4.29 건설관계자 이력제 및 평가 시스템 DB구축

- ✓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관계자의 과거 업무수행 실적·역량에 대한 평가기록 시스템을 구축, 업체 선정 시 평가요소로 활용하고 국내외 사고사례를 DB화함으로써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수립한 대책
- ✓ 건설관계자 수행실적 평가시스템 구축, 안전사고 사례 및 현장점검 결과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용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운영 중에 있으며, 공정률 30%, 60%, 95% 도달 시 설계·시공 감리자 평가를 시행하는 등 건설관계자 이력제 및 평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Data Base)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이행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건설관계자 이력제 및 평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건설 관련 수행실적 평가시스템 사용자 교육 결과보고 (건설총괄부-22582)

### 2.4.30 기술자문단 상시 운영

- ✓ 전면 책임감리를 시행 중에 있으나, 현장 안전관리를 완전히 감리에만 일임하기에는 감리의 질적 수준이 미흡하고, 기술지원감리원이 담당하고 있는 공사현장이 과다하여 감리용역 회사의 조직 위계상 책임감리원이 기술지원감리원에게 검토를 요청하기가 쉽지 않는 등 기술지원 감리원 활용이 미흡함에 따라, 분야별 기술자문단을 상시 운영하여, 주요 구조물 및 가시설의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면 검토 의무화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 ✓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본 대책의 유지 및 이행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분야별 기술자문단 상시 운영 여부 확인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기술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토목부-20461)

### 2.4.31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강화 및 하도급 계약 지원센터 개원

- ✓ 하도급 관련 제도는 대폭 보완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이행이 부진하여, 대금 미지급 및 불공정한 불법 저가하도급 계약 사례가 상존하는 등, 하도급관련 제도의 현장 정착이 미흡함에 따라,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 표준하도급 계약서·하도급계약서 제출 등 서류 작성지원, 기타 법률 및 민원 상담(신원보호 강화) 등을 위해, 서울시 하도급계약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발주부서의 월별 정기 점검 등을 시행하는 대책
- ✓ 하도급계약이 있는 2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기관 자체점검, 대금e바로 시스템 점검,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하도급(관리)계획 및 직접시공 적정여부, 대금지급 적정여부, 부당특약 존재에 대해 연 2회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하도급 관련 제도의 정착을 위해 본 대책의 지속적인 이행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서울시 하도급계약 지원센터 설치 운영 홍보
- 발주부서의 월별 정기점검 시행 (하도급계약이 있는 2억원 이상 건설 공사에 대해 발주기관 자체점검, 대금e바로 시스템점검,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
- 연 2회 부당특약 확인을 위한 하도급 실태점검 실시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공정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하도급 호민관제 공약실천 계획 (경영감사담당관-12168)

### 2.4.32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한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공사기간 단축 및 위험한 공법 적용여부 확인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로 공법 변경 시 계획 확인 및 승인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2조 (기술검토)

### 2.4.33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확인 및 승인(요청)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 하여야 한다.

1.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 도급계약 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를 참조하여 공기연장 사유, 공기 연장 시 간접비(재료비·노무비, 보험료, 복리후생, 세금·공과금, 임대비 등) 부담주체 등을 명확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공사기간 연장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실정보고 확인 및 승인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 2.4.34 설계변경의 검토 확인 및 승인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 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③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함.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설계 변경 요청시 설계변경에 대한 실정보고 검토 확인 및 승인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 (설계변경 요청 방법 등)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7조 (일반행정업무)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7조 (설계변경 관리)

### 2.4.35 체크리스트

순서	항 목	이행 및 확인 사항	확인 결과
2.4.1	공사안전보건대상 이행 확인 및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관리관 또는 지정한 건설안전 전문가는 3개월 마다 공사안전보건대상 이행 여부 확인하는가?</li> <li>• 공사안전보건대상 이행계획 변경 확인 및 승인하였는가?</li> </ul>	
2.4.2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확인 및 변경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시공자의 이행여부확인(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이행여부 확인 후 보고 포함) 하였는가?</li> <li>• 안전관리계획서 변경사항에 대한 심사 후 승인을 통보하였는가?</li> <li>•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함께하는 정기회의를 개최 하였는가?</li> <li>•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 지도, 감독 성실 이행여부를 확인하였는가?</li> </ul>	
2.4.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한 실적 보고에 대해 확인하는가?</li> </ul>	
2.4.4	안전관리비의 집행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대해 확인하는가?</li> </ul>	
2.4.5	안전점검 이행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관리관은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를 확인(종합정보망) 하는가?</li> <li>•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대해 시공자에게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 하였는가?</li> <li>• 중대한 결함에 대한 조치를 이행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응급조치,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실시 등) 하였는가?</li> </ul>	
2.4.6	안전교육 이행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교육 실적보고를 확인하는가?</li> <li>•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육실시 및 기록여부를 확인하는가?</li> <li>•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성실 이행여부를 확인하는가?</li> </ul>	
2.4.7	정기적인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관리관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 (다만, 구체적인 회의 방법 및 시기는 발주청이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 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하는가?</li> </ul>	
2.4.8	안전사고 조사 및 조치 결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자가 작성한 사고조사 보고서를 확인하는가?</li> <li>• 현장 사고조사 실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결과를 확인하는가?</li> </ul>	

순서	항 목	이행 및 확인 사항	확인 결과
2.4.8	안전사고 조사 및 조치 결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정보망(www.csi.go.kr)의 사고신고시스템 또는 전화·팩스를 활용하여 제출하고 그 결과를 보관·관리하는가?</li> <li>• 자체적으로 상세현장조사 또는 정밀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였는가?</li> </ul>	
2.4.9	안전문서 관리 (설계도서 등 검토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관리관은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외부로 유출시 승인하였는가?</li> </ul>	
2.4.10	안전관리 수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하였는가?</li> <li>•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에게 요구하는가?</li> <li>•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여부를 확인하는가?</li> </ul>	
2.4.11	일요일 건설공사 금지 및 주말·휴일작업 계획서 확인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말, 휴일작업 계획서 제출을 확인하고 승인하는가?</li> <li>• 재해 발생이 예상되어 일요일 긴급공사를 시행한 경우 사후 승인하였는가?</li> </ul>	
2.4.12	One Day 안전점검 체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MS에 OneDay 점검일정을 등록하면서 수행하고 있는가?</li> <li>• 연 2회 이상 모의훈련 추진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여부를 확인하는가?</li> </ul>	
2.4.13	대형 붕괴 재해 대비 지도 점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관리관은 담당 현장의 지도점검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지도점검을 요청하는가?</li> </ul>	
2.4.14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관리관 안전직무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상, 하반기 2회) 하는가?</li> <li>• 안전관리과에서 교육 시행 요청 시 장소 제공 및 근로자 참여 등의 업무를 협조하는가?</li> <li>• “근로자 안전 10계명”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시행여부를 확인 하는가?</li> </ul>	
2.4.15	근로자 안전 10계명 일상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관계자 “근로자 안전 10계명” 교육 및 준수여부를 확인하는가?</li> </ul>	
2.4.16	부실 건설업체 상시 모니터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성·감독조서 작성 시 KISCON의 “건설업체 정보” 조회를 통한 행정처분 사항을 확인 및 기재를 하는가?</li> </ul>	

순서	항 목	이행 및 확인 사항	확인 결과
2.4.17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강화 (안전감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강화 이행 협조문을 발송하는가?</li> <li>• 시공계획서가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및 승인 하는가?</li> <li>• 공종별 근로자·시설물 안전대책을 확인하는가?</li> <li>• 공종별 수해예방, 재난대책을 확인하는가?</li> </ul>	
2.4.18	불법 하도급과 품떼기 근절 (안전감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대책 이행 협조문을 발송(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자) 하는가?</li> <li>• 감리원 확인여부 및 현장 내 홍보물 게시여부를 확인하는가?</li> </ul>	
2.4.19	안전조회 (Tool Box Meeting)시 5RP 제도 시행 (안전감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RP 제도 시행 및 적정 운영 보고여부를 확인하는가?</li> </ul>	
2.4.20	무자격기술자 퇴출 등 엄중 조치 (안전감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자 자격기준 입찰안내서에 제시 하는가?</li> <li>• 감리원의 건설기술자 자격 요건 등 조사결과 분기별 보고여부를 확인하는가?</li> <li>• 공사관리관 현장 안전점검 등 업무수행 시 기술자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가?</li> </ul>	
2.4.21	신속하고 다양한 재난 상황 전파 시스템 개선 (안전감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안내서 및 설계에 지하터널 등 특수 공간 작업장에 비상 경보시설을 반영하는가?</li> </ul>	
2.4.22	감리단 시공오차 검증 결과 적정성 수시 확인 (안전감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관리관 구조적 주요부위와 가시설 등에 대한 감리단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검사항목(check-point)을 작성 후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이행하는가?</li> </ul>	
2.4.23	기술지원감리원 운영 개선 (안전 감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지원 감리원의 운영 대책 이행 협조문을 발송하는가?</li> <li>• 기술지원 감리원의 운영 대책 이행을 확인(기술지원 감리원 활동 실적) 하는가?</li> </ul>	
2.4.24	책임감리원 공사중지권 시행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시공, 시공오차 등이 발생한 경우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공사중지권 시행을 보장(협조문 발송, 활동실적 확인) 하는가?</li> </ul>	
2.4.25	외국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작성 보급 (안전감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종별 소규모공사장과 외국인 근로자용 매뉴얼 보급 및 활용방법을 홍보하는가?</li> <li>• 외국어 안내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 확인하는가?</li> </ul>	

순서	항 목	이행 및 확인 사항	확인 결과
2.4.26	주기적 안전교육 및 맞춤형 매뉴얼 작성 보급	• 안전관리과에서 실시하는 공사관계자 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하는가?	
		• 건설안전기본지침 및 안전사고 매뉴얼 등의 보급 및 활용방법을 홍보하는가?	
2.4.27	공사장 휴게실 설치 의무화 및 환경정돈 (안전감찰)	• 혹서기, 혹한기 공사장 휴게실 설치 등 운영관리 상태를 확인하는가?	
2.4.28	근로자 음주·흡연 관리방안 추진	• 근로자 음주·흡연에 대한 관리방안의 이행을 확인하는가?	
2.4.29	건설관계자 이력제 및 평가시스템 DB 구축	• 건설관계자 이력제 및 평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를 하는가?	
2.4.30	기술자문단 상시 운영	• 분야별 기술자문단을 상시 운영 여부 확인하는가?	
2.4.31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 강화 및 하도급 계약 지원센터 개원	• 서울시 하도급계약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하는가?	
		• 발주부서의 월별 정기점검을 시행(하도급계약이 있는 2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기관 자체점검, 대금e바로 시스템점검,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 하는가?	
		• 연 2회 부당특약 확인을 위한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하는가?	
2.4.32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 변경금지	• 공사기간 단축 및 위험한 공법 적용여부를 확인하는가?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로 공법 변경 시 계획 확인 및 승인을 하는가?	
2.4.33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검토 확인 및 승인 (요청)	• 공사기간 연장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실정보고 확인 및 승인을 하는가?	
2.4.34	설계변경의 검토 확인 및 승인	• 설계 변경 요청시 설계변경에 대한 실정보고 검토 확인 및 승인을 하는가?	

## 2.5 준공단계

### 2.5.1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확인 및 결과 통보

시공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별표 5에 따른 목차를 참조하여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확인 및 결과 통보

#### ■ 관련 규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31조 (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35조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36조 (제출방법)

### 2.5.2 안전관리문서의 취합 및 보관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안전 관리 참여자가 작성한 안전관리문서를 취합하여 시설물안전법 제9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일부로 보관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안전관리문서(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취합·제출 여부 확인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
-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준공·사용승인 통보서 - 별지 제6호서식)
- 발주자는 준공 시 안전관련 문서를 시공자에게 제출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종합정보망을 통한 온라인 제출)
  - ①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②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경우 사고 개요,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 보고서
  - ③ 시공단계에서 도출되어 유지관리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 발주자는 해당서류를 해당 시설물의 존속시기까지 보존

#### ■ 관련 규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설계도서 등의 제출), 별지 제6호 서식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0조 (공사완료 단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42조 (보존 및 관리현황 보고)

## ■ 참고 사항

- 준공단계에서 필요한 안전관련 문서 목록

목 록	내 용	비 고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정산 설계도서	설계도,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안전관리문서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설계안전성검토		
사고조사 보고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서	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첨부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산정된 경우에만 해당
안전관리비 정산서	정산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첨부	
기술지도완료 증명원		기술지도계약서 제출 대상일 경우

### 2.5.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서 확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사용 및 정산은 계약단위 공사별로 이루어져야 함.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서 수령 확인
- 해당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 참고 사항

- 정산방법
  - 1)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금액이 아닌 총 공사금액을 대상으로 계상하고 정산에 있어서도 해당 차수가 아닌 총 공사기간에 대하여 정산함.

## 2) 소급 정산 가능 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지출한 것이라면 사용시점 이후라도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정산이 가능함.

## 3) 계상금액을 초과 사용한 경우

- 당해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 처리하여야 함.

## 4)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 재정부 계약예규) 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함.
- 또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나 정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함.
- 이는 단지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는 공사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 공사금액의 70% 정도에 해당하는데 따른 것이므로 어떤 경우든 동일한 방법(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함.
- 과세현장 : 공급가액으로 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서 상 경비 항목의 세부 비목으로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정산
- 비과세현장(면세현장)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로 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처리

## • 증빙방법

- 1) 부가사용증빙은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사용항목에 따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품의서, 송장 등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구비, 첨부하면 됨
- 2) 본사 사용분에 대한 현장의 입증방법은 그 내역을 별도 입증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본사 배정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됨
  -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확인은 반드시 대표이사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체위임, 전결규정 등에 의하거나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실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의 확인도 가능함

# Chapter 02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안전업무 가이드

1. 업무 흐름도
2. 공사 단계별 안전업무

### 2.5.4 안전관리비의 정산서 확인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정기 안전점검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을 말함.

- 이행 및 확인 사항
  - 안전관리비의 정산서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 확인
  - 해당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3조 (정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4조 (추가조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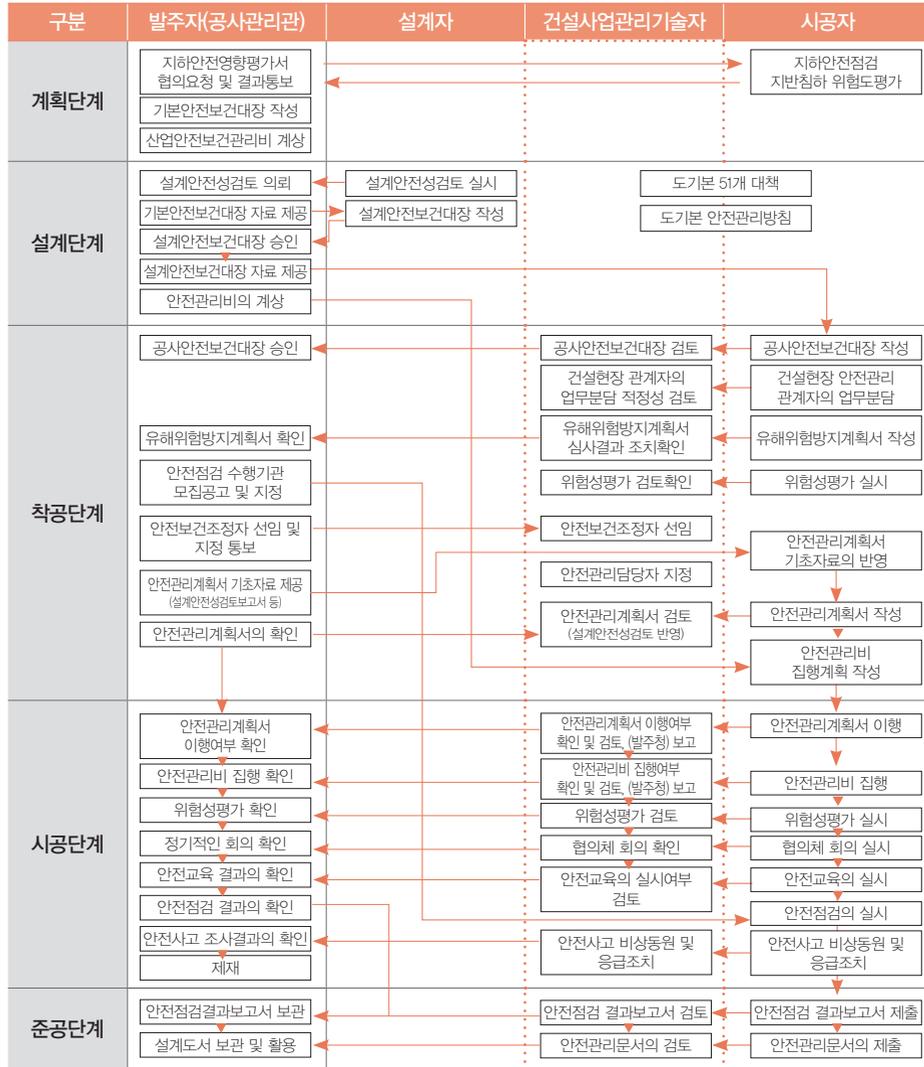
### 2.5.5 체크리스트

순서	항 목	이행 및 확인 사항	확인 결과
2.5.1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확인	• 시공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확인 및 결과를 통보 하였는가?	
2.5.2	안전관리문서의 취합 및 보관	• 안전관리문서(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취합·제출 여부 확인 후 준공 또는 사용을 승인하였는가?	
		•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였는가?	
		• 발주자는 준공 시 안전관련 문서를 시공자에게 제출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종합정보망을 통한 온라인 제출) 하였는가?	
		• 발주자는 해당서류를 해당 시설물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는가?	
2.5.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서를 수령하여 확인하는가? • 해당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였는가?	
2.5.4	안전관리비의 정산	• 안전관리비의 정산서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확인하였는가?	
		• 해당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 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하였는가?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안전업무 가이드

## 1. 업무 흐름도

### 1.1 업무 흐름도



## 2. 공사 단계별 안전업무

### 2.1 착공단계

#### 2.1.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확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 중 이행 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건설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위험요인을 사전 조사를 통해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으로 작성되는 문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설치하고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를 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결과 확인 및 검토
- 조건부 적정 및 부적정에 대한 보완여부 확인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5조 (안전관리)

#### ■ 참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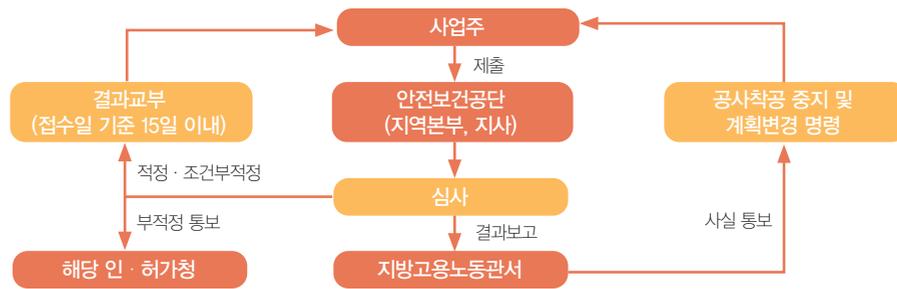
- 제출 대상
  - 1) 지상높이가 3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 ② 판매시설, 운수시설 (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 ③ 종교시설
    - ④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⑥ 지하도상가
    - ⑦ 냉동·냉장 창고시설

- 4)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5) 최대지간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 6) 터널건설 등의 공사
- 7)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 8)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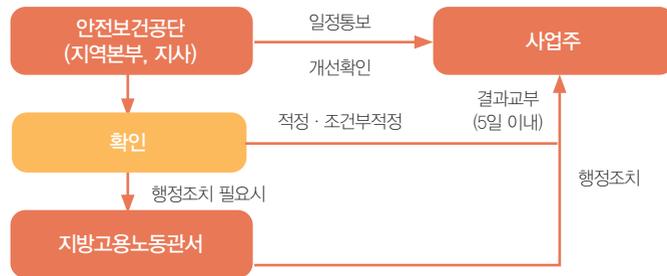
• 제출 기한

- 1)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 착공 기준) 전일까지 안전보건공단에 2부를 제출
- 2)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 ①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②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③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 심사 절차



• 확인 절차



2.1.2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확인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

- 안전한 시공과 공사목적물의 안전, 공사장 주변의 안전을 위해 착공 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 승인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이행 및 확인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변경 시 적정성 검토 및 공사관리관에게 서면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종합정보망에 등록 여부 확인
- 안전관리계획서에 설계안전성검토(DFS) 내용의 반영여부 확인

■ 관련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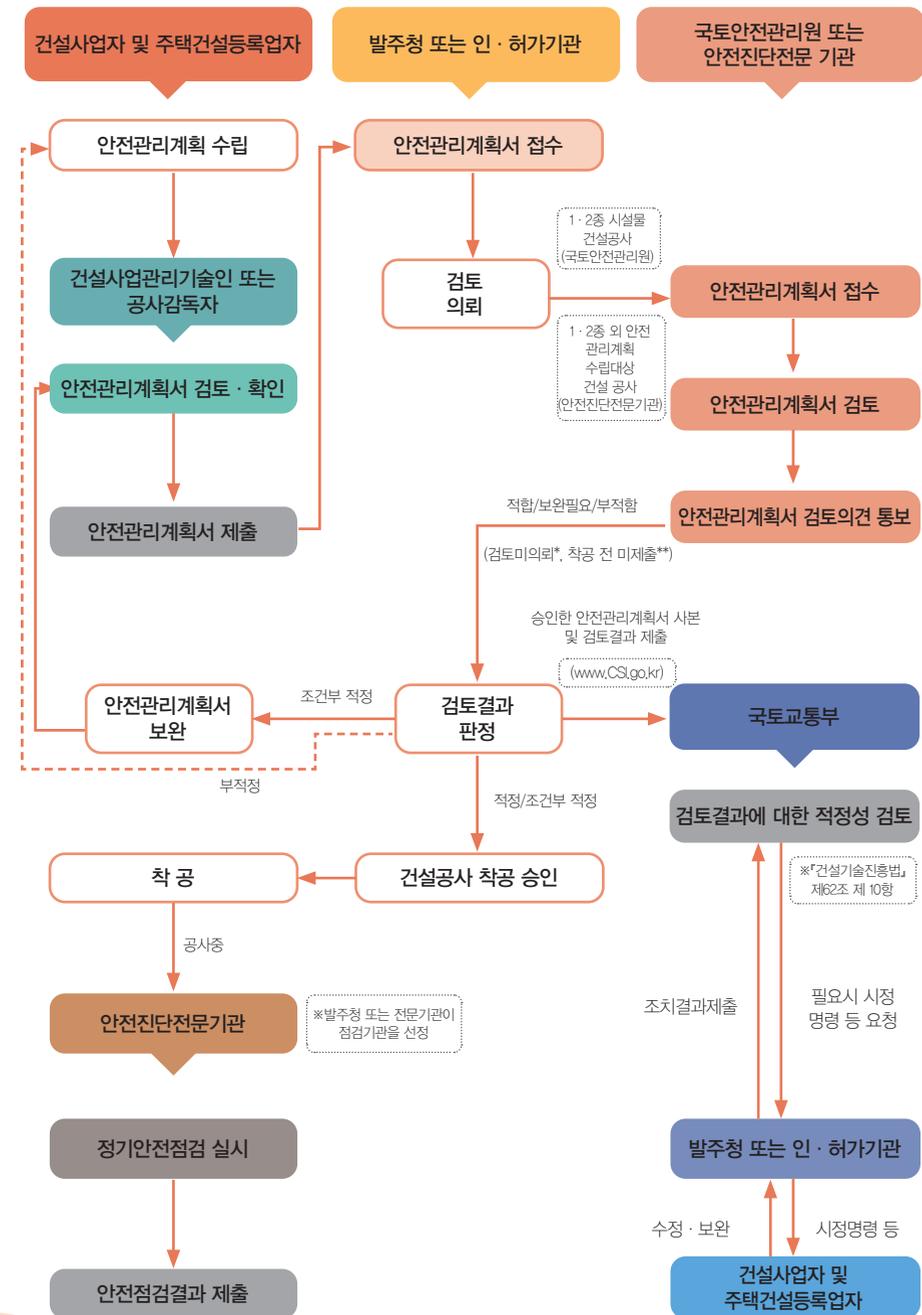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2022-791호) 제8조 (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단계)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51조 (안전관리)

■ 참고 사항

- 적용 대상
- 안전관리계획서 적용 대상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설공사
  -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6)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①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
    - ② 항타 및 항발기
    - ③ 타워크레인

- 7)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① 높이가 3미터 이상인 비계, 브라켓 비계
  -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③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 등)
  - ⑤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ACS, RCS 등)
  - ⑥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합벽지지대, 가설벤트, 터널 작업대차, 터널 라이닝폼 등)
- 8) 기타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안전관리계획서 업무처리 흐름도



•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비교

구분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9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목적	건설공사 시공안전 및 주변안전 확보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작성대상	1) 시트법 1, 2종 시설물(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상하수도, 옹벽·절토사면) 2) 지하 10M 이상 굴착작업 3) 폭발물 사용공사로서 20M이내 시설물, 100M이내 사유건축 영향 예상되는 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공사 또는 10층 이상 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항타기 항발기, 천공기(H=10m이상), T/C 사용공사 6) 건진법 시행령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 ① 높이 31m이상 비계, 브라켓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가무집,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③ 터널지보공, 2m이상 흠막이 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⑤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ACS, RCS 등) ⑥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지지대, 가설벤트, 터널작업대차, 터널라이닝폼 등) 7)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 인정하는 건설공사	1) 지상높이가 3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②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③ 종교시설 ④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⑥ 지하도상가 ⑦ 냉동·냉장 창고시설 4)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5)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6) 터널건설 등의 공사 7)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8)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작성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업자	사업주(시공자)
제출서류	1) 총괄안전관리 계획 2)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시기	공사의 착공 전까지	공사의 착공 전일까지
제출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	고용노동부장관
주요확인	공사목적물 안전/ 가설공법 안전성/ 주변 안전대책	근로자보호후구/ 작업공중, 재료 안전성/ 작업 조건방법/ 가설공사안전/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사용계획
심사기관	국토안전관리원	안전보건공단
결과통보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을 신청자에게 통보 부적정시 계획서 보완, 제출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을 사업자에게 통보 부적정시 공사착공 중지 및 계획 변경 명령

2.1.3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확인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5,000㎡ 이상 창고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착공 전 반드시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청에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보고서

• 2020.12.10. 시행

■ 이행 및 확인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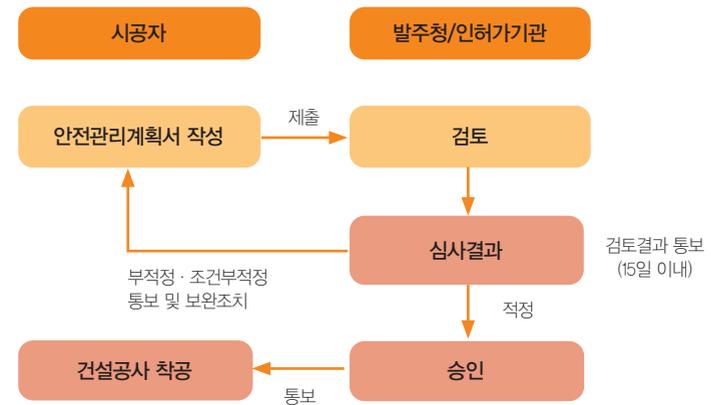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확인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참고 사항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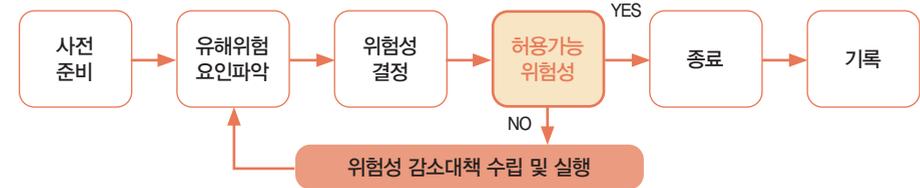
※안전관리계획서 변경시 동일 절차로 진행

• 안전관리계획서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의 비교

구분	안전관리계획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5
대상	1) 시트법 1, 2종 사설물(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상하수도, 옹벽·절토사면) 2) 지하 10M 이상 굴착작업 3) 폭발물 사용공사로서 20M 이내 사설물, 100M 이내 사육가축 영향 예상되는 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공사 또는 10층 이상 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수직중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항타기 항발기, 천공기(H=10m 이상), T/C 사용공사 6) 건진법 시행령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 ① 높이 3m 이상 비계, 브래킷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③ 터널지보공, 2m 이상 흠막이 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⑤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ACS, RCS 등) ⑥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지지대, 가설벤트, 터널작업대차, 터널라이닝폼 등) 7)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 인정하는 건설공사	☑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①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② 연면적 1000㎡ 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③ 연면적 1000㎡ 이상인 공장(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연면적 2000㎡ 이상) ④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 ☑ 서울시 방침에 따른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① 지하 5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41조상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공사
내용	1) 총괄 안전관리계획 - 건설공사 개요 - 현장 특성 분석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등 - 현장 운영계획 :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 점검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 계획 등 -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2)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 가설, 굴착 및 발파, 콘크리트, 강구조물, 성토 및 절토, 해체, 설비공사, 타워크레인 공사 등	1) 건설공사 개요 : 위치도, 대상현장, 전체 공정표, 설계도서(도면) 2) 비계 설치계획 : 외부 설치 비계의 설치계획, 시공상세도, 시공절차, 주의사항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추락방지망, 낙하물 방지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계단난간 등의 설치 계획과 사진, 그림 등의 예시 자료
절차	1) 시공자 계획 수립 2)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 3) 발주청, 인·허가기관에 제출 4)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 검토 5)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승인 6) 착공	1) 시공자 계획 수립 2) 발주청, 인·허가기관에 제출 3)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승인 4) 착공

2.1.4 최초 위험성평가의 검토

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결정하여,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



■ 이행 및 확인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최초 위험성평가 작성 지도·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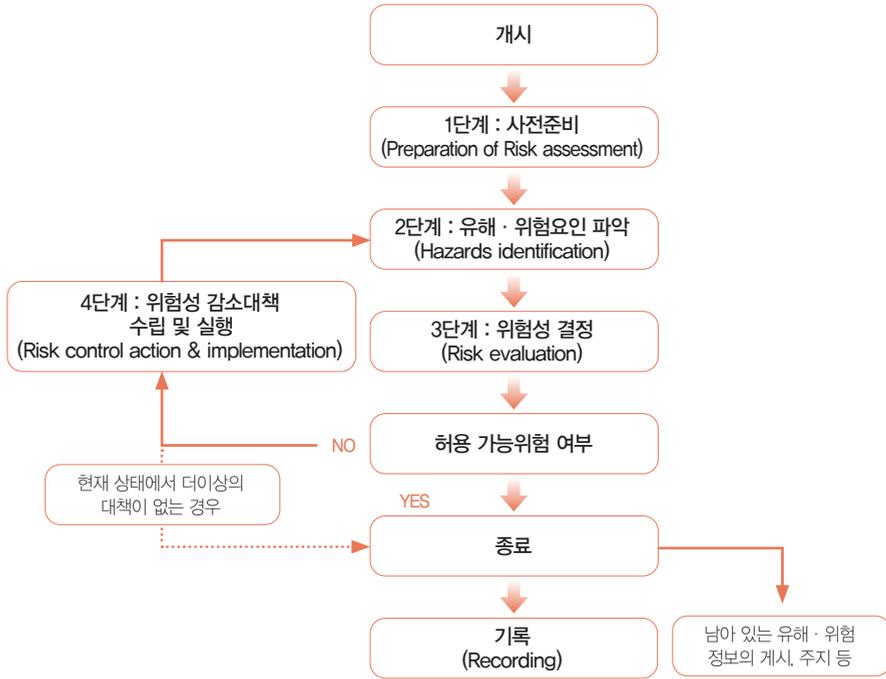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업무 처리규칙
- 현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및 절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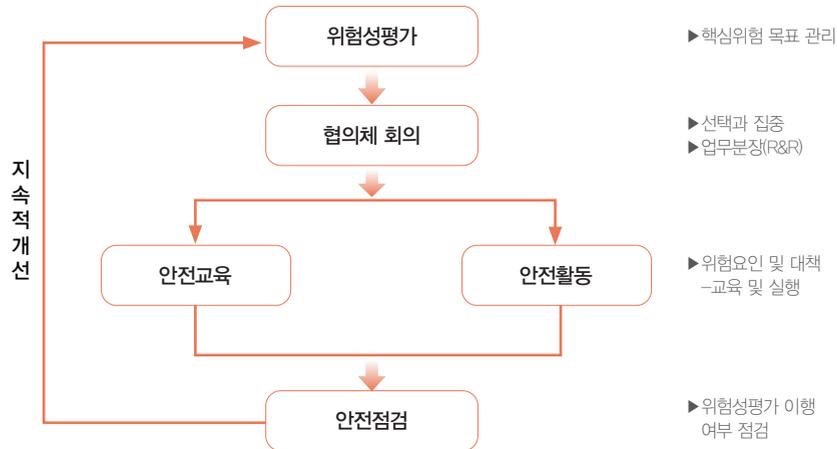
■ 참고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수급인 관계없이 위험성평가의 주체를 사업주로 명시 하고 있으므로, -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해야 하고, 발주자가 지원하는 위험성평가 및 관련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 등 구성원 모두가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여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①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②위험성 결정 내용 ③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위험성평가 절차



• 위험성평가 운영 절차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구분	최초위험성평가	수시위험성평가	정기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공사 착공 전후 1개월 이내	2주 1회(권고) (실시할 사유가 발생할 때 주기와 시기에 상관없이 실시)	최초평가 후 매년 1회
대상 범위	계약 공사 전체 공정	2주 기간에 예상되는 공종	1년되는 시점부터 준공까지 공종
시행 주체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
실시 내용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 이전 · 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 ·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 ·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 · 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 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 ① 기계 · 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②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 · 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③ 안전 · 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④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위험성평가의 방법 및 역할

구분	업무 내용	비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해당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조직구성 및 역할 부여, 예산지원 등)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 · 조언	안전 ·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
관리감독자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	
근로자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및 의견 제시	
방법	• 기계 · 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 · 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 사업주는 구성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 · 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성평가 기록 및 보존방법
  -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② 위험성 결정의 내용
    - ③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④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 ⑤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2.1.5 안전·보건관리체제(조직 구성) 구축 지도

건설공사장 규모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 조직은 안전보건경영 실행과 구성원은 법에서 정한 책임, 직무·권한 및 의무를 준수하여 실행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수급인(현장소장)이 하수급인(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조직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및 권한과 책임이 명시된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고 문서화(업무분장표) 하는 등 현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토록 지도 및 확인
- 현장내 노동환경 및 근로자의 참여를 파악하고 근로자의 참여방안을 검토

#### ■ 관련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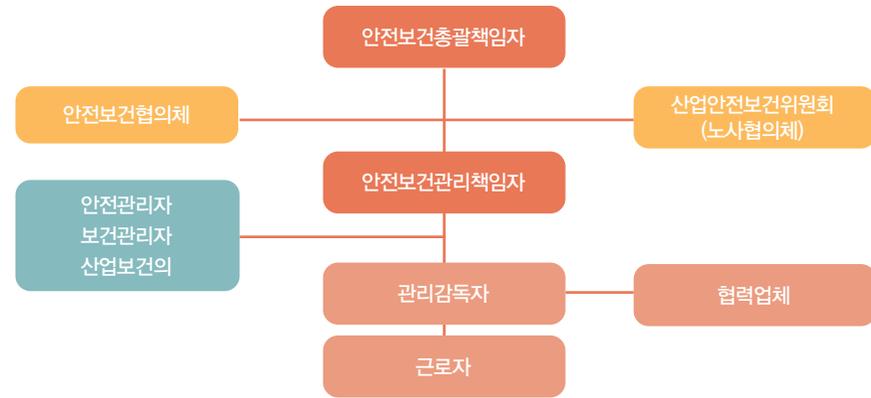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24조 (안전보건관리체제)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2조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1조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 업무)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9조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5조 (안전관리)

#### ■ 참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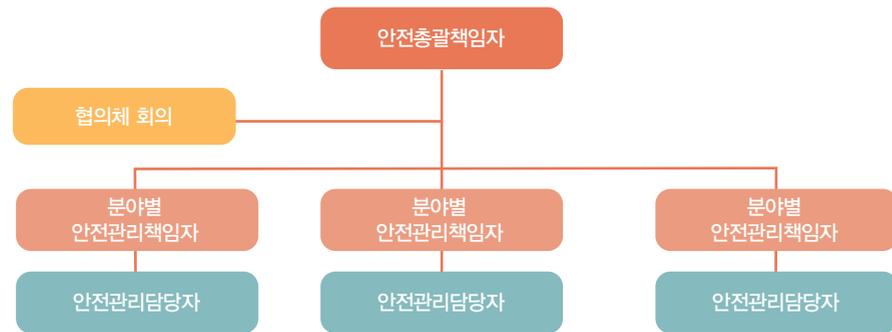
-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조직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비고
주관부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목적	근로자의 안전·보건 재해예방	구조물의 안전 재해예방	
안전관리조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 협의체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협의체 구성 (수급인과 하수급인)	명칭 및 역할이 다름

#### · 안전보건관리조직(산업안전보건법)



#### · 안전관리조직(건설기술진흥법)



#### · 건설사업 관리단 업무분장(예제)

구분	세부 업무	KOSHA-MS 추가 업무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사업관리 업무 총괄</li> <li>· 발주청 공사 감독 대행</li> <li>·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li> <li>· 공법 변경 등 기술지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안전보건방침, 목표(세부추진계획)의 수립, 게시 및 이행 지도</li> <li>· 시공자 조직구성원의 업무분장 지도</li> <li>·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지도</li> <li>· 매월 1회 시스템 이해도와 실행 수준 확인(평가)</li> </ul>
시공건설 사업관리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 시공 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li> <li>· 시험실 운영 및 시험 의뢰 관련업무</li> <li>· 시공계획서 및 공정표 적정성 검토</li> <li>· 시공 상세도 검토</li> <li>· 자재 외주관리 및 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및 구성원 참여 지도, 이행 확인</li> <li>· 위험성평가에 따른 안전보건활동 지도 및 이행 확인</li> <li>· 안전점검 지도 및 이행 확인</li> </ul>

구분	세부 업무	KOSHA-MS 추가 업무
검측건설 사업관리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도서, 관계서류, 관계법령에 따른 시공 적합성 확인</li> <li>검측 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상사태 발생 시의 비상조치계획 수립, 공유, 교육 훈련 지도</li> </ul>
안전건설 사업관리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관련 서류 점검 및 지도</li> <li>안전관리계획 및 실적 확인</li> <li>안전교육, 안전점검 지도 및 시공자 실적 확인</li> <li>안전관리비 사용 지도 및 실적 확인</li> <li>사전 안전성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간 안전관리계획 (위험성평가, 교육, 점검 등)의 수립 지도</li> <li>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지도</li> <li>안전교육 지도 및 이행 확인</li> <li>시공자 안전보건활동 월 1회 기록 확인</li> <li>세부목표 추진결과를 2월 1회 확인</li> <li>문서화 및 기록 관리</li> </ul>

### 2.1.6 안전문서 관리(설계도서 등 검토 업무)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외부로 유출시 시공자 승인요청에 대한 검토 확인

#### ■ 관련 규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 2.1.7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함.

- 적용대상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안전보건조정자 지정 및 선임서류 비치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안전보건조정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7조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 ■ 참고 사항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자격
  - 1) 공사감독자
  - 2) 책임감리자
  - 3) 건설안전기술사
  - 4) 산업안전지도사
  - 5)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6) 건설안전기사로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자
  - 7) 건설안전산업기사로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력자
- 안전보건조정자 역할
  - 1)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 2)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 3)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조치 등의 조정
  -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 2.1.8 안전점검 수행기관 계약 확인

안전점검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청(또는 인·허가기관)에 등록된 기관 중 1개 기관을 선정하여 안전점검을 수행토록 하고 있음.(법령 개정 2020.1.7.)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이 지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시공자의 계약 체결여부 확인

####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 (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022-791호) 제18조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 2.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계획 확인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비용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계획 적정여부 확인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 ■ 참고 사항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공사종류	구분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
			적용 비율 (%)	기초액		
건축공사		3.11%	2.28%	4,325,000원	2.37%	2.64%
토목공사		3.15%	2.53%	3,300,000원	2.60%	2.73%
중간설공사		3.64%	3.05%	2,975,000원	3.11%	3.39%
특수건설공사		2.07%	1.59%	2,450,000원	1.64%	1.78%

#### •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 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 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 가격 작성 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이상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비교

구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주관부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①항
목적	근로자의 안전·보건	시설물의 안전
수행형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사용기준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일정요율 적용)	법 제63조제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내역에 반영, 실제 정산방법)
사용항목	1) 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 및 각종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 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 안전보건 진단비 등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분사 안전점검조직 사용비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영 제100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 통행 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6) 법 제62조 제7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 확인에 필요한 비용 7)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 통신을 이용한 건설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운용 비용

### 2.1.10 안전관리비의 집행계획 확인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정기 안전점검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을 말함.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
- **이행 및 확인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적정여부 확인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안전관리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 **참고 사항**
  -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를 작성
    - 1)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작성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기술자인건비(고급기술자 작업일수)
      - 직접경비(일비, 위험수당, 기계기구 손료, 보고서등 인쇄비, 소모품비, 기타)
      -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 2) 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판단하여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 한다.
    - 3)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 4)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에 관하여는 토목, 건축 등 관련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2.1.11 공사손해보험 가입방식 개선

- ✓ 공사손해보험을 각 공사장별로 분산 가입함에 따라,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예산 미확보 등에 대한 계약변경을 하지 않거나, 누락하거나, 미승계하여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보험을 발주기관이 도급비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공구별로 통합가입함으로써 보험사간의 경쟁을 통해서 보험료를 절감하고,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보험가입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임.
- ✓ 계약담당자에 의한 공사보험 가입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점검 이행

-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 중 다음 공사(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해야 함.
-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공사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공사손해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공사손해보험 가입 방식 개선 방안 (재무과-50910)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5조 (손해보험가입)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5절

### 2.1.12 설계 설명회(Kick-off Meeting) 의무화(안전감찰)

- ✓ 시공자, 감리자의 설계도서 이해 부족과 설계자의 현장 상황, 시공여건에 대한 경험 부족에 따라, 위험이 높은 설계 도서를 제공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할 때에 예상되는 리스크(Risk)와 해결방안, 주요구조물의 시공절차, 기술·산업 안전관리 방안 등 주요 공정에 대한 설계설명회(K.O.M)를 의무화한 대책
- ✓ 감찰 결과, 설계 설명회 의무화 대책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어, 현장과 시공여건을 반영한 안전한 시공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해, 설계 설명회 의무화 대책 이행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착수 전, 주요공정 시공계획 수립 시 공사 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착수회의(K.O.M)에 참여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공사착수회의(Kick-Off Meeting) 의무화 대책 알림(토목부-20456)

2.1.13 공사 특성에 적합한 감리원 적정배치(안전감찰)

- ✓ 터널, 강교 등 공사 특수성에 적합한 감리원 배치 미흡 및 감리업무 과다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공사장 중심으로 안전, 구조(교량), 토질(터널, 가시설 등) 전담 감리원을 추가 배치하여, 고품격 시설물 시공과 감리원 입회·확인 없이는 어떠한 공사도 진행불가 및 즉각적 문제 발견·해결을 통한 안전사고 미연 방지를 위한 대책임.
- ✓ 감찰 결과, 일부 공사관계자 등이 해당 개선대책을 알지 못해 전담 감리원 미 배치 등의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공사 특성에 적합한 감리원 배치 대책 이행 필요
- ✓ 기술지원 감리원 운영 개선 및 무자격기술자 퇴출 등 엄중조치 방안과 연계하여 현장 점검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임.

■ 이행 및 확인 사항

- 공사 특성에 맞는 전담 감리원 배치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터널, 강교 등 공사특성에 적합한 전담 감리원 증원 배치계획 (토목부-19588)

2.1.14 직접시공 의무비율 및 대상공사 상향

- ✓ 낙찰업체가 직접시공을 하지 않고, 공사의 대부분을 저가로 하도급하고 있어, 정상보다 부족한 인원 및 장비 등으로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위험성 증대로, 건설공사 직접시공 비율 및 대상공사 상향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한 대책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도급액 기준 50억에서 70억으로, 대상공사 확대와 직접시공 비율 10%는 도급액 기준이 30억~50억에서 30억~70억으로 의무비율이 조정되었으며, 낙찰업체에 대한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 여부 확인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다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함.

-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50%
-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0%
-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20%
-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

■ 이행 및 이행 및 확인 사항

- 직접시공계획의 검토 확인 및 공사관리관에게 통보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여부 확인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2.1.15 저가 하도급 심사대상 확대

- ✓ 원도급자의 낙찰률이 중·소규모 공사일수록 높으나, 심사대상 하도급 비율은 발주자 예정가격의 60%로 일률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법령 개정 건의 한 대책
- ✓ 저가 하도급 기준금액을 상향(도급액 대비 : 82% 미만, 예정가격 대비 64% 미만)하고, 하도급계약 심사대상 발주자 예정가격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반영된 사항으로 저가 하도급 방지를 위해, 본 대책의 지속적인 이행 필요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이행 및 확인 사항

-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2.1.16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 확인

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 토목, 건축공사로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 총공사금액 :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공사금액
- 건설공사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공공공사 등)를 착공하려는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함(2022.8.18.부터 시행)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사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계약 체결여부 확인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2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 ■ 참고 사항

- 기술지도 대상금액 및 점검횟수

구분	건축공사	토목공사	점검횟수
대상금액	1억 ~ 50억 미만 건축법 제11조 대상	1억 ~ 50억 미만 (1개월 이상 공사)	15일 마다 1회 (2회/월)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50억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 150억원 미만) 전담 또는 겸직선임 가능

※ 안전관리자 겸직 선임시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임

- 기술지도 대상 제외 사업장
  -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보고서를 제출)
  -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 기술지도 계약 체결시기 및 방법
  - 1) 공사착공 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 체결
  - 2) 기술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지출

- 기술지도 진행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항 목	구 분	주요 내용	시행일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개정	• 발주자가 기술지도 계약 체결	2022.08.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개정	• 기술지도 계약 시 전산시스템(K2B)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 사용 • 소방분야 기술지도 별도 신설(기존 건설 분야)	2021.11.19.

### 2.1.17 신규현장 안전기술지도 참석

본격적인 공사 진행 전 선제적인 안전기술지도를 시행하고 착공 초기부터 안전의식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 ■ 이행 및 확인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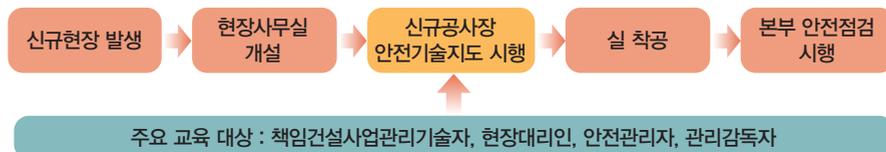
- 본부 안전관리과의 신규공사장 안전기술지도 교육 참여

#### ■ 관련 규정

- 도기본 안전관리 방침

#### ■ 참고 사항

- 안전기술지도 flow



#### ■ 교육 내용

안전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안전 관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점검실시 시기, 안전관리비, 건설공사장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등 총 10개 항목</li> </ul> </li> <li>•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건설안전 관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칙 및 과태료 현황, 안전 보건교육의 종류 및 교육내용, 안전회의의 규정 등,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자의 법적 직무, 안전점검 및 화재 감시자 배치기준, 개인 보호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등 총 15개 항목</li> </ul> </li> <li>• 안전보건경영체계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개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심리상담, 근로자 찾아가는 안전 교육,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건설공사장 재해 유형별 모의훈련,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안전관리비 현장 교육</li> </ul> </li> <li>• 책자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과 발간 책자 5종</li> <li>-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li> </ul> </li> <li>• 관련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안전 10계명, 건설공사장 중점 관리 20대 항목 등 13개 방침</li> </ul> </li> <li>• 안전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장의 모든 실태를 평가하여 위험공사장을 예측하고 사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li> </ul> </li> </ul>

### 2.1.18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수행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함.

- ①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 ②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 ③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 ④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감독권한대행 책임감리원은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 지정된 안전관리담당자는 위와 같은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에 대해 지도, 감독 실시
-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
-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가 중지되는 현장에 입회하여 공사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요구
-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공사관리관에게 즉시 보고

####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5조 (안전관리)

## 2.1.19 체크리스트

순서	항 목	이행 및 확인 사항	확인 결과
2.1.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결과를 확인 및 검토하였는가?</li> <li>조건부 적정 및 부적정에 대한 보완여부를 확인하였는가?</li> </ul>	
2.1.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검토 및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변경 시 적정성 검토 및 공사관리관에게 서면 보고(지적사항) 하였는가?</li> <li>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종합정보망에 등록여부를 확인 하였는가?</li> </ul>	
2.1.3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를 확인하였는가?	
2.1.4	최초 위험성평가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최초 위험성평가 작성 지도·확인 하였는가?	
2.1.5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수급인(현장소장)이 하수급인(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조직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및 권한과 책임이 명시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문서화(업무분장표)하는 등 현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경영 체제를 구축 지도 및 확인하였는가?</li> <li>현장내 노동환경 및 근로자의 참여를 파악하고 근로자의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는가?</li> </ul>	
2.1.6	안전문서 관리 (설계도서등 검토 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외부로 유출시 시공자 승인요청에 대해 검토 확인하였는가?	
2.1.7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안전보건조정자 지정 및 선임서류를 비치 하였는가?	
2.1.8	안전점검 수행기관 계약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이 지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시공자의 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였는가?	
2.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계획 확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계획 적정여부를 확인하였는가?	
2.1.10	안전관리비의 집행계획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적정여부를 확인하였는가?	
2.1.11	공사손해보험 가입방식 개선	공사손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였는가?	
2.1.12	설계설명회 (Kick-off Meeting) 의무화(안전감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착수 전, 주요공정 시공계획 수립 시 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착수회의에 참여하였는가?	

순서	항 목	이행 및 확인 사항	확인 결과
2.1.13	공사 특성에 적합한 감리원 적정 배치 (안전감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 특성에 맞는 전담 감리원을 배치 하였는가?</li> </ul>	
2.1.14	직접시공 의무비용 및 대상공사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접시공계획의 검토 확인 및 공사관리관에게 통보하였는가?</li> <li>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직접시공의무비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였는가?</li> </ul>	
2.1.15	저가 하도급 심사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 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였는가?</li> </ul>	
2.1.16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공사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계약 체결여부를 확인 하였는가?</li> </ul>	
2.1.17	신규현장 안전기술지도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부 안전관리과의 신규공사장 안전기술지도 교육에 참여 하였는가?</li> </ul>	
2.1.18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독 권한대행 책임감리원은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였는가?</li> <li>지정된 안전관리담당자는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에 대해 지도, 감독을 실시하는가?</li> <li>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 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하는가?</li> <li>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가 중지 되는 현장에 입회하여 공사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요구하는가?</li> <li>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공사관리관에게 즉시 보고 하였는가?</li> </ul>	

## 2.2 시공단계

### 2.2.1 안전관리 추진실적 및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검토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함.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의 접수 및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서면 보완 지시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 요구

#### ■ 관련 규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7조 (일반행정업무)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5조 (안전관리)

#### ■ 참고 사항

구분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안전관리 결과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 활동</li> <li>•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 조직표</li> <li>• 안전보건관리체제</li> <li>• 재해발생 현황</li> <li>• 안전교육 실적표</li> <li>• 산재요양 신청서(사본)</li> <li>• 그 밖에 필요한 서류</li> </ul>
제출시기	• 매월	• 분기
적용법령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7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5조

### 2.2.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 확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 중 이행 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건설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위험요인을 사전 조사를 통해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으로 작성되는 문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설치하고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를 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적정 이행여부 확인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5조 (안전관리)

### 2.2.3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검토 및 보고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

- 안전한 시공과 공사목적물의 안전, 공사장 주변의 안전을 위해 착공 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 승인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시공자의 이행여부 검토 후 보고
-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 후 보고
- 발주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함께하는 정기회의에 참여(안전관리계획 이행, 안전관리비 집행 실태 확인, 공중별 위험요소와 저감대책 발굴, 보완 등)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 여건 변경 시 계획변경여부 확인 및 보고
-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여부 확인
- 안전점검 실시여부 확인
- 안전교육 실시여부 확인
-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여부 검토 및 보고
-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및 보고

###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9조 (공사시행 단계)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5조 (안전관리)

## 2.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확인 및 실적보고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비용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및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른 정산자료의 적정성 검토 및 공사관리관에게 보고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 2.2.5 안전관리비의 집행 확인 및 실적보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정기 안전점검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을 말함.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의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및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른 정산자료의 적정성 검토 및 공사관리관에게 보고

###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안전관리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 2.2.6 안전점검의 이행 확인

공사 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말함.

-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안전점검의 종류 :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점검의 종류 : 작업장의 순회점검,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 작업 전 안전점검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의 안전점검 이행여부 확인 및 보고
- 자체안전점검(매일/공종별) 실시(기록 및 조치 포함) 확인
-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여부 확인(종합정보망)
-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있는 경우) 확인
- 준공 전에 초기점검의 실시 확인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실시(공사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경우) 확인
- 안전점검의 결과분석 및 평가 실시여부 확인
-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여부 확인

###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 (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별표7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지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70호)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0조 (안전점검의 계획수립)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 (정기안전점검의 실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1조 (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 참고 사항

-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

건설공사 종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교량		가시설 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 전)	하부공사 시공 시	상부공사 시공 시	-	-
터널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 시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 시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 공사 중기단계 시공 시	-	-
댐	콘크리트댐	유수전환시설 공사 시공 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 시	댐 축조공사 시공 시(하상 기초 완료 후)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 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 시
	필댐	유수전환시설 공사 시공 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 시	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 시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 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 시
하천	수문	가시설 공사 완료시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공 전)	되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 시	-	-	-
	제방	하천바닥 파기, 누수방지, 연약 지반 보강, 기초 처리공사 완료시	본체 및 비탈면 흠쌓기 공사 시공 시	-	-	-
하구둑		배수갑문 공사 중	제체 공사 중	-	-	-
상하 수도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 펌프장 하수처리장	가시설 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 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 시	구조체 공사 말기단계 시공 시	-	-
	상수도 관로	총 공정의 초·중기 단계시공 시	총 공정의 말기단계 시공 시	-	-	-
항만	계류시설	기초공사 및 사석공사 시공 시	제작 및 거치 공사, 항타 공사 시공 시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공 시	속채움 및 뒷채움 공사, 매립공사 시공 시	-
	외곽시설 (갑문, 방파제호안)	가시설 공사 및 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 시	제작 및 거치 공사 시공 시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공 시	속채움 및 뒷채움 공사 시공 시	-
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 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 시	구조체 공사 말기단계 시공 시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 공정의 초·중기 단계 시공 시	총 공정의 말기단계 시공 시	-	-	-
지하차도, 지하상가, 복개구조물		토공사 시공 시	총 공정의 중기단계 시공 시	총 공정의 말기단계 시공 시	-	-

건설공사 종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도로·철도·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옹벽	가시설 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 전)	구조체공사 시공 시	-	-	-
	절토 사면	발파 및 굴착 시공 시	비탈면 보호공 시공 시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 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 전)	되메우기 완료 후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 공정의 초·중기 단계 시공 시	총 공정의 말기단계 시공 시	-	-	-

건설공사 종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건설기계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 시	천공 작업 말기단계 시	-	-	-
	항타 및 항발기	항타·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항발 작업 시	항타·항발작업 말기단계 시	-	-	-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설치작업 시	타워크레인 인상 시 마다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시	-	-
가설 구조물 (시행령 제101 조의 2)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	-	-
	작업발판일체형 거푸집	최초 설치 완료 시	설치 말기단계 시	-	-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	-
	터널 지보공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 시	지보공 설치 말기 단계 시	-	-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흠막이 지보공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 시	-	-	-
	브라켓 비계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브라켓 비계 설치 시	-	-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 시	-	-	-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	최초 설치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 시	-	-	-	
현장 조립 복합가설 구조물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 시	-	-	-	

※ 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점검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점검 목적	공사 중에 설비의 근원적 안전 확보를 위해 근로자의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안전조치를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	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공사목적물의 결함성을 발견하는 수단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li> <li>•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li> <li>•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li> </ul>
안전점검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장 순회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일 1회 이상</li> <li>- 안전보건총괄책임자</li> </ul> </li> <li>•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개월에 1회 이상</li> <li>-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의 근로자 각 1명</li> </ul> </li> <li>• 작업 전 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업무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li> </ul> </li> <li>• 안전·보건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중대재해 발생사업장</li> <li>②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li> <li>③ 추락, 폭발,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안전점검(일일, 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공종별 육안점검으로 실시</li> </ul> </li> <li>• 정기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를 기준으로 실시</li> </ul> </li> <li>• 정밀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li> </ul> </li> <li>• 초기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 (시특법 1종, 2종 시설물)</li> </ul> </li> <li>•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li> </ul> </li> </ul>

•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관련, 별표3)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li> <li>나. 드레인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li> <li>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li> <li>라. 언로드밸브(unloading valve)의 기능</li> <li>마. 윤활유의 상태</li> <li>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li> <li>사.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li> </ul>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권고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li> <li>나.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li> <li>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li> </ul>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권고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li> <li>나.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li> <li>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li> </ul>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li> <li>나.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li> </ul>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방호장치·브레이크의 기능</li> <li>나. 와이어로프·슬링와이어(sling wire) 등의 상태</li> </ul>
양중기의 와이어로프·달기체인·섬유로프·섬유벨트 또는 혹·사슬·링 등의 철구 (이하 "와이어 로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고리 길이작업을 할 때	와이어로프 등의 이상 유무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li> <li>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li> <li>다. 바퀴의 이상 유무</li> <li>라.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li> </ul>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li> <li>나.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li> <li>다.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li> <li>라.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li> <li>마.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흠·균열·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li> </ul>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용접·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 작업을 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여부</li> <li>나.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여부</li> <li>다.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여부</li> <li>라.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조치 여부</li> <li>마.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li> </ul>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li> <li>나.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li> <li>다. 카바이드·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li> <li>라. 그밖에 하역운반기계 등의 적절한 사용방법</li> </ul>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혹이 붙어 있는 슬링·와이어슬링 등이 매달린 상태</li> <li>나. 슬링·와이어슬링 등의 상태(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 수시로 점검)</li> </ul>

• 안전점검의 종류(건설기술진흥법)

구분	주요 내용	
자체안전점검	실시자	협업체, 시공자
	시기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공종별 실시
	내용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해 시행 - 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포함하여 위험도 관리, 협업체 회의, 일상 안전교육과 연계성을 확보, 유지하면서 점검 실시 - 양식은 시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작성, 활용
정기안전점검	실시자	발주자가 지정한 건설안전 점검기관
	시기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
	내용	•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품질 및 시공 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
정밀안전점검	실시자	발주자가 지정한 건설안전 점검기관
	시기	정기안전점검결과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내용	• 물리적, 기능적 결함 현황 및 원인 분석, 구조안전 여부 • 보수, 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대책
초기안전점검	실시자	발주자가 지정한 건설안전 점검기관
	시기	준공직전
	내용	시특법에 규정한 1종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 현장으로 정기 안전점검 수준이상 점검
공사재개점검	실시자	발주자 판단
	시기	공사재개 전
	내용	시특법에 규정한 1종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로서 1년 이상 방치한 현장으로 자체점검 또는 정기점검 수준 이상

2.2.7 안전교육의 이행 확인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공법의 이해, 세부 시공순서 및 안전시공 절차 이해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이행 및 확인 사항

- 안전교육계획에 따른 적정 이행여부 확인
-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 실시여부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월 1회 이상 정기교육 실시여부 확인(월1회)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안전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및 기록 비치
- 매월 안전교육 실적을 검토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시행령 제103조 (안전교육)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5조 (안전관리)

■ 참고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교육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법적 근거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시행령 제103조(안전교육)
안전교육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안전보건교육(근로자, 관리감독자)</li> <li>•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li> <li>• 특별안전보건교육</li> <li>•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li> <li>•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li> <li>•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li> <li>•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교육 :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 - 당일작업의 공법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시공순서와 시공 기술상 주의사항 포함</li> <li>-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 관리</li> <li>- 공사준공 후 발주청에 제출</li> </ul>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관련, 별표4)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판매업무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 1주일 초과 1개월이하 기간제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인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li> <li>•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li> </ul>	
마.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2.2.8 정기적인 회의 참여

발주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함께 공사시행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안전관리비집행 실태 등을 확인하고 공중별 위험요소와 그 저감대책을 발굴 및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정기적인 회의에 참여
  -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 안전관리비 집행실태 확인
  - 공중별 위험요소와 그 저감대책을 발굴 및 보완 여부 확인
- 시공자가 주관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등의 시행 확인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9조 (공사시행 단계)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2조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참고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법적 근거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9조
회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협의체
주기	3개월 1회	2개월 1회	매월 1회	매월 1회
구성	노사 동수 구성	노사 동수 구성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	도급인과 하수급인
심의·의결 협의 사항	아래표 참조	아래표 참조	아래표 참조	·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안전관리비 집행실태 확인 · 공중별 위험요소와 그 저감 대책을 발굴 및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 확인
비고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의 방법 및 시기는 발주청이 시공자 및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 회의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 협의체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대상	공사금액 120억 이상 (토목 150억 이상)	공사금액 120억 이상 (토목 150억 이상)	도급사업
구성	1) 근로자위원 ① 근로자대표 1인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인 ③ 근로자 대표가 지명한 9인 (②의 위원을 포함 하여 9인) 2) 사용자위원 ① 해당 사업의 대표 ② 안전관리자 ③ 보건관리자 ④ 산업보건의(해당 시) ⑤ 해당사업의 대표가 지명한 9인 이내의 사업장 부서의 장	1) 근로자위원 ① 근로자대표 1인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인 ③ 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의 각 근로자 대표 2) 사용자위원 ①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② 안전관리자 1인 ③ 보건관리자 1인 ④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

구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 협의체
주기	· 정기회의 : 3개월 마다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정기회의 : 2개월 마다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매월 1회 이상
심의·의결 사항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 사항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사항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 및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비고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협의체 구성 및 운영(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구분	협의체 운영계획	정기적인 회의 병행할 경우
법적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9조 (공사시행 단계)
구성	<input type="checkbox"/> 안전관리담당자 <input type="checkbox"/> 수급인과 하수급인	<input type="checkbox"/> 공사관리관 <input type="checkbox"/>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input type="checkbox"/> 안전총괄책임자 <input type="checkbox"/> 안전관리책임자
운영	<input type="checkbox"/>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 회의 결과 기록, 보존	
협의내용	<input type="checkbox"/>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보고 <input type="checkbox"/> 안전관리비 집행실태 보고 <input type="checkbox"/> 공중별 위험요소와 그 저감대책을 발굴하기 위한 위험성평가(회의) 이행 보고

## 2.2.9 안전사고 조사 및 조치결과 검토 및 보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등 조치 결과 등 확인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가 작성한 사고보고서의 검토 및 공사관리관에게 보고
- 시공자가 제출한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건설사고 통계자료 검토 및 공사관리관에게 보고

###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5조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61조 (사고조사 등)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5조 (안전관리)

### ■ 참고 사항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법적 근거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시행령 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범위	◎ 중대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건설사고 ·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보고	◎ 산업재해 발생보고 · 중대재해 즉시(지체없이) -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조치 및 전망 -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재해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1개월 이내 · 보고 : 관할지방노동관서	◎ 건설사고 통보 · 발생사실 인지 즉시 -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사고발생 경위 - 조치사항 - 향후 조치계획 · 통보 : 발주처, 인허가기관

## 2.2.10 수시(상시) · 정기(상시 위험성 평가시 정기 위험성평가 같음) 위험성평가 실시 확인

위험성평가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행동,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등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최초 위험성평가: 공사현장의 모든 공중에 대해 해당 공중 시작 전에 실시
- 수시 위험성평가: 2주 1회(권고) 또는 실시할 사유가 발생할 때 주기와 시기에 상관없이 실시
- 정기 위험성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상시 위험성평가: 일, 주, 월 사고예방활동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수급인(현장소장)이 분부 또는 수급인 본사에서 정한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공사의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모든 구성원, 이해관계자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하도록 지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여부 확인
- 주기적인 위험성평가 회의 시행여부 확인

- 안전교육, TBM활동 등을 통한 위험성평가 내용 전파여부 확인
- 연 1회 이상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확인
- 위험성평가 대책 이행 여부 확인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업무 처리규칙

2.2.11 안전·보건관리체제(조직 구성) 운영 확인

건설공사장 규모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 조직은 안전보건경영 실행과 구성원은 법에서 정한 책임, 직무·권한 및 의무를 준수하여 실행

■ 이행 및 확인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안전보건관리조직 유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여부 지도 및 확인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24조 (안전보건관리체제)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2조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1조 (공사착수 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9조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5조 (안전관리)

■ 참고 사항

- 안전보건관계자의 직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구분	직무내용	구분	직무내용
<b>안전보건 총괄책임자</b>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③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⑤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b>안전 총괄책임자</b>	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②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 감독 ③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④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⑤ 협의체의 운영 ⑥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⑦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자체안전점검"이라 한다)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⑧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휘·감독
<b>안전보건 관리책임자</b>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⑨ 그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b>안전 관리책임자</b>	①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서의 검토·이행 ②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③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④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⑤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⑥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구분	직무내용	구분	직무내용
관리 감독자	① 당해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②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 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③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④ 당해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⑤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 관리자 등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⑥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⑦ 그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 담당자	①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②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③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 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③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④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⑤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⑥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⑧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⑨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⑩ 그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2.2.12 안전문서 관리(설계도서 등 검토 업무)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외부로 유출시 시공자 승인요청에 대한 검토 및 보고

### ■ 관련 규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1조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 2.2.13 안전관리 수준 평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평가 기관이 총공사비(전기·소방·통신 공사비는 제외하되, 관급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에정금액을 말한다)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다만 「국유재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채납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

- ① 공기가 50%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 ② 영 제4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등록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현장과 본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한한다)
- ③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현장과 본사
  - 공동도급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공동 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 ■ 관련 규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4장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 2.2.14 일요일 건설공사 금지 및 주말·휴일작업계획서 검토

- ✓ 건설현장에서 주말, 휴일작업 시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 및 근로자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중대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건설현장 주말, 휴일작업 안전관리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주말·휴일 작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 ✓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음.

- 적용대상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위험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도기본 발주공사
- 제출방법 :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위험작업을 주말, 휴일에 수행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 작성하여 제출
- 제출 처 : 120억 이상 현장(관할 고용노동관서), 50억~120억 미만 현장(안전보건공단관할 지역본부/지사) 도기본
- 행정조치 : 고위험작업 위주로 작업계획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미제출 현장, 작성 항목 누락 현장, 관리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상주 여부, 단위작업별 안전조치 수준(조치 미흡) 등에 따라 불시 감독 실시

#### ■ 이행 및 확인 사항

-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요일에 건설공사 시행 여부 확인
- 주말, 휴일작업 계획서 검토 및 보고
-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선승인 후보고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별표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2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 건설현장 주말·휴일작업 안전관리 강화조치 안내 (건설산재예방정책과-459)

### 2.2.15 상시 안전점검 체계 유지

- ✓ 정기 안전점검 시행(정기점검, 외부위원 합동점검, 불시점검 등)
- ✓ 안전사고 대비 모의훈련 시행
- ✓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 ✓ 안전사고 발생현장 관리 강화
- ✓ 관리감독 공백시간 관리(주말 승인 없이 작업하는지 여부 점검)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건설사업관리단 안전점검 시행 및 조치 결과 확인
  -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지침 등의 준수여부 확인
  - 설계 도서 및 시방서 등의 준수여부 확인
- 일일작업에 대한 안전활동 및 활동내용을 일지에 기록 관리
- 안전관리과 및 공사관리관 현장 안전점검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 및 보고
- 건설기계(카고크레인, 기중기, 천공기, 항타·항발기) 반입 전 점검 시행 및 지적사항 시정요구, 조치 결과 보고 확인
- 연 3회 이상 모의훈련 추진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여부 검토 확인
- 위험공종 작업허가제 검토하여 공사관리관에게 제출
- 사고보고서 검토 및 공사관리관에게 제출
- 재발방지대책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과에 제출 및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이행여부 수시 확인
- 휴일작업계획 검토 및 보고(감리원 현장 상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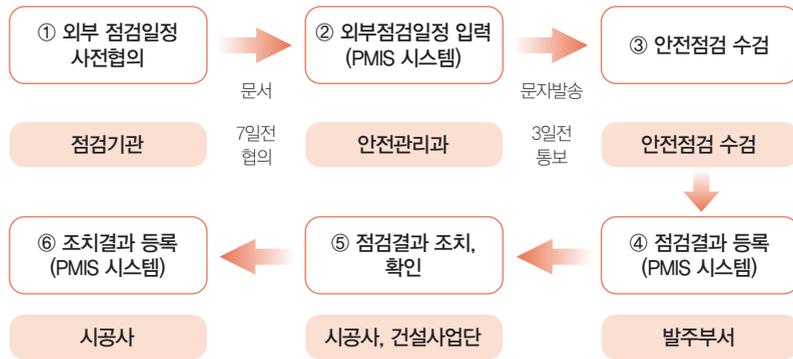
#### ■ 관련 규정

- 도기본 안전관리 방침

■ 참고 사항

(1) 정기 안전점검 시행(정기점검, 외부위원 합동점검, 불시점검)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① 분야별 (구조, 토질 및 기초, 품질, 안전분야) 외부 전문위원과 합동으로 월 안전점검 횟수를 한 현장에 1회 이상 실시하여 현장 안전관리 상태 강화	
점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검토</li> <li>전문분야 위원 (구조, 토질, 안전, 품질분야)들을 적극 활용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설계 상세도, 공법적용현황 등 검토</li> <li>기타 안전관련 준수사항 점검</li> </ul>
시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 실시 (구조분야, 토질분야, 안전분야, 품질분야)</li> <li>안전관리과 1~2회/월</li> </ul>

< 시행흐름도 >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② 건설사업관리단 및 현장 안전관리자 일일점검 체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 관리자들에게 안전대책 시행여부를 일일 점검하여 일지에 기록하게 하고 점검을 통해 상시 안전관리 강화</li> <li>안전관리과 및 공사담당자 현장 점검 시 감리일지 및 시행 여부 확인</li> </ul>	

< 시행흐름도 >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③ 공사관리관 One-day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현장 점검 피로도 감소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li> </ul>
시 기	매월 1회 이상
점검방법	공사시행부서 자체 점검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 점검 시행 1회 이상
결과보고	시행 결과를 안전관리과에 제출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④ 건설기계 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관리과에서 건설기계 점검 계획을 총괄 수립하고 시설국 설비부, 도시철도국 설비부에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시행 및 점검결과 통보</li> </ul>
대상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고빈도가 높고 점검을 통한 예방효과가 큰 건설기계 4종 집중관리</li> <li>건설기계 4종 : 카고크레인, 기중기, 천공기, 항타·항발기</li> </ul>
점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업계획서 작성, 해당 면허소지, 정기검사 수검여부 등 서류점검</li> <li>안전장치 불량, 구조부 균열등 건설기계 안전성 점검</li> <li>5년 이상 노후장비 반입 전 안전점검 실시여부 확인</li> <li>건설기계 저공해 조치가 장착되도록 안내 및 홍보</li> </ul>
점검횟수	• 연 2회 실시(상·하반기)
점검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인1조 운영 : 본부직원 1명, 외부전문가 1명</li> <li>본부직원 : 시설국 설비부, 도시철도국 설비부</li> <li>외부전문가 :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검사원 등</li> </ul>

(2) 안전사고 대비 모의 훈련 시행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사고피해 최소화 및 사고대처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공사장의 안전 관리 수준 및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li> </ul>
시행시기	• 연 2회(장마철/동절기)
시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된 모의훈련 유형에 따라 현장상황에 적합하게 훈련일시, 방법, 유관기관 참여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 실시</li> <li>경찰,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교통 통제 및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유관기관(병원, 한전, 상수도, 도시가스 등)은 사전협의를 지양하고 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 체계, 시간 내 도착 및 임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사고대비 훈련 실시</li> <li>컨트롤타워(현장상황실)를 운영하고 보고체계 점검 및 미비사항 체크 하고 상황별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li> <li>SNS를 활용한 실시간 사고보고 훈련 실시</li> </ul>
훈련유형	① 추락·낙하, ② 붕괴(가설구조물, 사면, 막장), ③ 지하매설물 파손 ④ 건설기계, ⑤ 화재폭발, ⑥ 감전 ※ 6개 사고유형 중 공사장별로 공중에 따른 가장 취약한 유형을 선택

(3) 위험작업 허가제 시행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고발생 위험성이 큰 공중에 대하여 사전에 현장 해당 공사 관계자들이 사전 예방활동을 수행하여 안전성 증진 및 해당 공사 관계자의 위험 공중에 대한 책임감 고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작업 허가제 승인 절차</li> </ul>

위험 작업 허가제 시행 대상 작업	
구분	항 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성평가에서 결정된 최상위 위험 등급 중 1개 작업을 허가 대상을 필수로 지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성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 위험성평가 적용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마다 1개를 지정하여 관리</li> </ul> </li> <li>· 수시 위험성평가 적용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시평가 시기 마다 1개를 지정 하여 관리</li> </ul> </li> </ul> </li> </ul> </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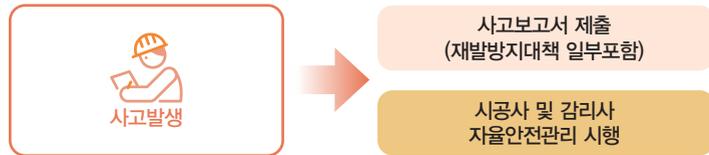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설 구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설밴드 설치 및 해체 작업</li> <li>- 공중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li> <li>- 터널 수직구 워킹타워 조립 및 해체 작업</li> <li>- 바브켓을 사용하는 흙막이 가시설 해체 작업</li> <li>-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작업 (상승포함)</li> </ul> </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li> <li>- 항타 및 항발기 조립 및 해체 작업</li> <li>- 100톤 이상 이동식 크레인 조립 및 해체 작업</li> <li>-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한 맨케이지 탑승 작업</li> </ul> </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소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달비계 사용 작업</li> <li>- 높이 4M 이상 가설방음벽 및 방음판 설치 및 해체 작업</li> </ul> </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기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 (반경 5m 이내 가연성물질 존재하는 장소)</li> <li>※가연성물질 : 단열재, 스티로폼, PVC, 유류, 종이, 합성수지, 목재 등</li> </ul> </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간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포장 작업</li> </ul> </li> </ul>

(4) 안전사고 발생현장 관리강화 및 부실현장 제재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사고 발생현장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부실현장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로 안전문화 정착 유도</li> </ul>	
현황 및 문제점	재발방지대책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서에 첨부된 재발 방지대책을 형식적으로 수립하여 보고되고 있음
	이행상태점검	현장에서 수립한 재발방지대책은 시공사와 감리사의 자율안전 관리체제로 별도의 확인이나 검토를 거치지 않고 있어 재해와 유사한 위험징후를 무시하고 방지 되는 경우 발생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실 적용성이 높은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도록 시행</li> <li>모든 공사장 사고 발생 후 재발 방지대책 이행상태 특별 점검 수행</li> </ul>	

- 안전관리 부실 현장 “강력한 제재”
  - 중점관리 20대 항목 1회 적발 시 현장 경고, 2회 적발 시 벌점위원회 상정(근로자 안전 10계명 포함)
  -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하여 부실현장 관리
    - ※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중 안전점검표에 반영(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 안전모, 안전대 착용 등 안전문화(1단계) 정착되어 가고 있어 “추락 및 전도”사고 예방시설에 대한 집중관리
    - ⇒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과 함께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벌점위원회 상정
    - \* 경고 유효기간 : 안전 경각심 고취를 위해 현장별 최초 경고일로부터 1년간 유효

안전난간 미설치	전도방지시설 미설치
2m이상 추락위험 단부 (작업발판 및 구조물 개구부)	작업중 이동식비계(작업발판 기준 2단이상) 아웃트리거를 사용하는 건설기계

• 당초



• 개선



2.2.16 대형 붕괴 재해 대비 지도 점검 시행

- ✓ 강교 및 중량물 설치 및 해체 지도점검
- ✓ 거푸집동바리 콘크리트 타설 전 지도점검
- ✓ 흙막이가시시설 굴착단계별 지도점검
- ✓ 비계 설치·해체 전 지도점검

■ 이행 및 확인 사항

- 공사관리관은 담당 현장의 지도점검 대상 여부 확인 후 지도점검 요청
  - 강교 및 중량물 설치 및 해체작업
  - 거푸집동바리 콘크리트 타설작업
    - ① 타설 높이 : H=4.2m 이상(최대높이) >> 타설량 : 건축 150m³ 이상/일, 토목 300m³ 이상/일
    - ② 타설 높이 : H=5m 이상(최대높이) >> 타설량과 무관
  - 흙막이가시시설 작업(굴착 전, 굴착 중, 해체 전)
  - 비계 설치 · 해체 전 점검

■ 관련 규정

- 도기본 안전관리 방침

■ 참고 사항

(1) 강교 및 중량물 설치 · 해체 지도점검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 강교 등 중량물 설치 및 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장비 전도재해, 중량물 낙하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작업자 및 시민의 생명을 보호

점검방법	• 중량물 설치 해체 작업 전 건설현장의 사전지도점검 요청에 따라 사전점검 및 현장점검 시행
주요 점검내용	• 작업계획서 내용 검토 • 장비(크레인) 설치에 따른 제반사항 점검 • 관계 근로자 작업계획 공유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작업 시 중점관리사항 및 안전대책 수립 여부 등

(2)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타설 전 지도점검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 대규모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 동바리를 외부전문가와 같이 점검 및 확인함으로써 대규모 붕괴사고 예방

점검방법	• 타설높이 : H=4.2m 이상(최대높이) >> 타설량 : 건축 150m³ 이상/일, 토목 300m³ 이상/일
주요 점검내용	• 거푸집 동바리 설계도서 사전 검토, 거푸집 동바리 현장설치 상태 점검 • 관계 근로자 작업계획 공유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작업 시 중점관리사항 및 안전대책 수립 여부 등

■ 참고 사항

(3) 휴막이가기시설 굴착단계별 지도점검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막이가기시설의 굴착단계(굴착 전, 굴착 중, 해체 전)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점검을 시행하여 휴막이가기시설 및 옹벽 등의 대형 붕괴사고 예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막이가기시설 굴착 전, 굴착 중, 해체 전에 대한 지도점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굴착 전 :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공계획서, 계획계획 등의 적절성에 대한 지도 점검</li> <li>- 굴착 중 : 설계도서와 시공순서 및 설치상태의 적정성, 안전성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굴착 전, 해체 전과 다르게 안전점검 시 수행</li> <li>- 해체 전 : 해체 중 안전검토, 해체 시 발생하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 등 지도점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막이가기시설 굴착단계별 지도점검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굴착 전과 해체 전 사전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로 단계 진행 시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에 준하여 제재</li> </ul> </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굴착공사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점을 사전지도점검과 안전점검을 통해 예방하여 휴막이가기시설 안전성 확보</li> </ul>

(4) 비계 설치·해체 전 지도점검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계의 설치 해체 전 지도점검을 시행하여 비계로 인한 대형 붕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li> </ul>															
대상현장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폐쇄형</th> <th>개방형</th> <th>터널형</th> <th>공중비계</th> </tr> </thead> <tbody> <tr> <td>형 태</td> <td>'ㄷ', 'ㄷ'형</td> <td>'ㄴ', 'ㄴ'형</td> <td>터널내</td> <td>교량하부 등</td> </tr> <tr> <td>기 준 (높이)</td> <td>15m 이상</td> <td>10m 이상</td> <td>강관 및 시스템비계 4m 이상</td> <td>편도 3차로 이상 횡단</td> </tr> </tbody> </table>	구 분	폐쇄형	개방형	터널형	공중비계	형 태	'ㄷ', 'ㄷ'형	'ㄴ', 'ㄴ'형	터널내	교량하부 등	기 준 (높이)	15m 이상	10m 이상	강관 및 시스템비계 4m 이상	편도 3차로 이상 횡단
구 분	폐쇄형	개방형	터널형	공중비계												
형 태	'ㄷ', 'ㄷ'형	'ㄴ', 'ㄴ'형	터널내	교량하부 등												
기 준 (높이)	15m 이상	10m 이상	강관 및 시스템비계 4m 이상	편도 3차로 이상 횡단												
주요 점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 전 :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공계획서 사전 지도점검</li> <li>• 시공 중 : 변형, 침하 등 위험요인 발생시 현장 요청에 의한 컨설팅</li> <li>• 해체 전 : 해체 중 안전 검토, 해체 시 발생하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 등</li> </ul>															

2.2.17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

- ✓ 공사관계자 안전직무 역량강화 교육 시행
- ✓ 건설 근로자 및 외국인 노동자 찾아가는 안전교육 시행
- ✓ 안전한 현장 만들기 3기3기 법적 교육

■ 이행 및 확인 사항

- 공사관리관 안전직무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 (상, 하반기 2회)
- 안전관리과에서 교육 시행 요청 시 장소 제공 및 근로자 참여 등 업무 협조
- “근로자 안전 10계명”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시행여부 확인

■ 관련 규정

- 도기본 안전관리 방침

■ 참고 사항

(1) 공사관계자 안전직무 역량강화 교육 시행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관리자, 감리자, 시공사의 안전직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 및 직무지식을 교육 함으로써 안전수준 향상과 직무역량 제고</li> </ul>
교육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2회(상, 하반기 교육)</li> </ul>
교육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사 공사관계자</li> </ul>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위험성평가, 휴막이가기시설에 관한 안전교육</li> <li>• 본부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및 현장 안전관리 컨설팅 설명</li> <li>• 발주자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및 동영상 기록관리</li> <li>• 안전공학개론과 휴먼에러 사례, 건설공시장의 주요 재해 사례 등</li> </ul>



직무역량 강화교육



공사참여자 수준평가

■ 직무능력 수준평가

- 대 상 / 평 가 : 교육참여자 전원 / 건설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수준평가 합격기준 : 70점 이상

## (2) 건설근로자 찾아가는 안전교육 시행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부 건설공사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 하여, 본부 건설현장에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li> </ul>
교육대상	• 본부 건설공사장에 참여하는 모든 작업자
교육방법	• 본부 안전분야 위원 등 전문강사 활용, 1인 1현장 찾아가는 안전교육 시행
교육시기	• 1월~12월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작업자가 알기 쉽고 몸에 익힐 수 있는 내용의 건설안전 교육</li> <li>안전사고 동영상(사례 및 예방)등 시각자료를 활용한 사고사례 중심 안전교육</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작업자가 본부 주관 안전교육에 참여, 현장 작업자 안전의식 제고</li> <li>최근 사고사례 전파 및 현장 중심 예방교육으로 안전사고 최소화</li> </ul>

## (3) 외국인 노동자 찾아가는 안전교육 시행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부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문강사와 통역원이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 및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li> </ul>
교육일정	• 총 2회 (상, 하반기 교육 - 반기에 1회)
교육대상	•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근로자
강사 및 통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강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외국인 근로자 전문강사 (지원)</li> <li>통역원 : 건설안전 통역 및 외국인 상담 유경력자</li> </ul>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현장 안전의 이해, 안전한 작업방법 및 사고 예방대책</li> <li>외국인 근로자의 기초 안전교육 및 현장 위험요소에 대한 대처방안</li> </ul>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콘텐츠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시 모국어로 제작된 안전교육 영상을 활용하여 교육</li> <li>대상국가 :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li> <li>안전교육 동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시간 : 1편당 2분 내외</li> <li>- 제작편수 : 안전모 미착용에 의한 재해사례 등 총 2편</li> <li>- 영상내용 : 재해발생 사례, 안전수칙 준수사항 등</li> </ul> </li> </ul>



## 2.2.18 “근로자 안전 10계명” 일상화 추진

근로자 스스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 안전 10계명”과 더불어 “안전한 현장 만들기 3!3!3!” 법칙 일상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현장 관계자 “근로자 안전 10계명” 교육 및 준수여부 확인

## ■ 관련 규정

- 도기본 안전관리 방침

## ■ 참고 사항

## 착공부터 준공까지 “근로자 안전 10계명”일상화 추진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공사장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 준수 등에 의한 원시적 사고로, “근로자 안전 10계명”을 선정하여 현장 근로자가 빠 속까지 각인되도록 생활화하여 안전 사고예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 안전 10계명” 교육 및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 관계자 지속적 교육 실시</li> <li>안전교육 교재에 게시하여 홍보 활용</li> <li>현장에 투입되는 순간 “근로자 안전 10계명”을 볼 수 있도록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시장소 : 작업장 입구, 안전교육장, 식당, 사무실, 근로자 이동 통로 등 근로자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장소</li> <li>- 작업반장은 작업 개시 전 근로자 안전장구 지참여부 확인 및 근로자 안전 10계명 환기 후 작업 개시</li> </ul> </li> <li>근로자 안전 10계명 위반자는 당일 작업에서 배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 안전 10계명”문안 및 설치사례</li> </ul>	



근로자 안전 10계명 포스터

현장 설치 사례

- 건설기계 10대 안전 수칙 홍보 및 점검 시행

## 2.2.19 위험시기 및 재난대비 특별 안전점검 시행

- ✓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특별안전점검 시행
- ✓ 태풍, 폭염, 한파 대비 안전, 품질 점검 시행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수방대비 수방계획 검토 및 이행 확인
- 태풍대비 수방계획 검토 및 이행 확인
- 폭염대비 혹서기 대책 검토 및 이행 확인
- 해빙기 관련 안전대책 검토 및 이행 확인
- 코로나19 예방대책 시행 여부 확인

### ■ 관련 규정

- 도기본 안전관리 방침

### ■ 참고 사항

위험시기 및 재난대비 특별 안전점검 시행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특별안전점검 시행</li> <li>• 태풍, 폭염, 한파 대비 안전, 품질 점검 시행</li> </ul>
수방대비 특별점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수해 계획 수립, 자재, 장비 보관 및 이상 유무</li> <li>• 풍수해 취약 정비 방안 수립</li> <li>• 우수 흐름 지장을 제거 및 배수처리 기능 확보</li> <li>•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배수로, 침사지, 사면 보호시설 등 설치 현황</li> <li>• 터널 갱구 등 절개지 사면 안전 및 토류벽 안전조치 등</li> </ul>
태풍대비 공사장 특별점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공, 가설구조물, 터널 막장, 사면 절개지, 흙막이가시설 등 위험요인 관리실태</li> <li>• 태풍, 폭우대비 공사장 안전관리실태</li> <li>• 공사장 화재 대비 소화설비 설치 및 관리실태</li> </ul>



장비 전도방지 현황점검



배수로 정비 현황점검



사면 보호조치 현황점검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폭염대비 공사장 특별점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확인</li> <li>• 점심시간 등을 이용한 낮잠 및 매 시간마다 15분 휴식시간 유지</li> <li>• 폭염경보 발령 시 한낮 시간대(12:00~14:00) 작업 중지 또는 실외작업 일시중단 여부</li> </ul>
해빙기 관련 특별점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빙기 대비 터파기 공사장 등 흙막이가시설 공사 및 경사지에 대한 안전조치 확인, 안전시설 설치여부, 안전점검 실시여부 등 관리실태 점검</li> </ul>
코로나19 예방대책 시행 여부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스크 지급, 발열 체크여부 등 코로나19 예방 상태</li> </ul>

## 2.2.20 현장 소통 및 최신자료 공유

-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 PMIS)내 “안전 Q&A 코너” 운영
-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 PMIS) 안전자료방 운영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안전 Q&A 자료방 활용

### ■ 관련 규정

- 도기본 안전관리 방침

### ■ 참고 사항

(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내 “안전 Q&A 코너” 운영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참여자들의 안전관련 지식에 대한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도움 및 소통</li> </ul>
운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안전관리 항목에 “안전 Q&amp;A 코너” 운영</li> <li>• 안전 Q&amp;A에 올라온 질문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에서 전문지식과 안전 관련 규정을 발췌하여 5일 이내에 답변 처리</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과 안전관리에 대한 소통 강화</li> <li>• 공사관계자의 안전관리 역량강화</li> <li>• 전문가 집단의 전문지식 적극 활용 등</li> </ul>

(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내 "안전자료방" 운영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관리과에서 수집된 최신 안전관련 자료 및 안전관련 방침을 건설공사 관계자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안전자료방 운영</li> </ul>
운영내용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안전관리 항목에 "안전자료방"코너 운영
	
기대효과	· 최신 안전자료 및 안전관련 지침서를 수시로 확인 가능

### 2.2.21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강화(안전감찰)

- ✓ 시공계획서에 안전관리계획을 현장여건에 맞게 작성·승인하고, 근로자·시설물 안전 대책, 수해예방, 재난대책 등을 별도 항목으로 검토 강화하도록 한 대책
- ✓ 감찰 결과, 공종별 근로자·시설물 안전대책 수립이 미흡하고, 수해예방, 재난대책 등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행 및 확인 사항 실행 강화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단계별 안전성 강화대책 검토 및 보고
- 시공계획서가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검토 및 보고
- 공종별 근로자·시설물 안전대책 검토
- 공종별 수해예방, 재난대책 검토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작성 및 검토 내실화 방안보고 (도시철도설계부-7329)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설계도서의 작성 등)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1조 (시공계획 검토)

### 2.2.22 불법 하도급과 품떼기 근절(안전감찰)

- ✓ 다단계 불법 하도급과 품떼기(능률급) 고용방식에 따른 무리한 졸속공사로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 ✓ 감찰 결과, 대다수 현장에서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감리원의 확인과 현장내 홍보 (포상금 지급 문구 포함 홍보물 게시 및 신고서 비치) 등의 대책이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속적으로 이행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불법 하도급과 품떼기 근절대책 이행여부 확인
- 현장 내 홍보물 게시(포상금 지급 문구 게시판에 게시 및 신고서 비치 등) 확인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불법 하도급과 품떼기 근절대책 보고(토목부-20037)

### 2.2.23 안전조회(Tool Box Meeting)시 5RP 제도 시행(안전감찰)

- ✓ 안전조회 후에 작업장 위치와 세부공종(토공,가시설 등)으로 나누고 작업그룹별·공종별로 편성하여 5RP(Risk Point)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내실있는 안전조회가 이루어지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 대책
- ✓ 감찰 결과, 별도의 5RP 작성없이 안전교육만 실시하거나, 외국인 근로자 전담 책임자 미지정, 외국인 근로자 교육 및 관리내용 월2회 발주청 미보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 TBM 및 위험요소 5RP 항목 재교육 미실시, 5RP 작업현장게시판 미게시 등 전체적으로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안전대책의 지속적인 이행관리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5RP 제도 시행 및 적정 운영 여부 확인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안전조회 시 5RP 실행계획(도철토목부-11594)

### 2.2.24 무자격기술자 퇴출 등 엄중조치(안전감찰)

- ✓ 건설공사 착수와 동시에 해당 공사의 공중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자격 미달자 현장근무, 면허대여자 허위 근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리원이 해당 현장의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의 자격 요건 및 허위근무 여부에 대해 조사(정기·수시) 하고, 분기별로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한 대책
- ✓ 감찰 결과, 안전대책을 대부분 알지 못해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감찰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 점검을 할 때에, 건설기술자 배치현황 및 무자격기술자 근무 여부를 조사하고 분기별로 보고하는 대책이므로 지속 이행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자 자격 요건 등 조사결과를 분기별 발주청 보고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무자격기술자 퇴출 등 엄중조치방안 세부실행계획 (도철도목부-10335)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 2.2.25 신속하고 다양한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개선(안전감찰)

- ✓ 지하터널 등 특수공간에 대해 재난상황이 현장 끝선까지 전파되도록 설계에 반영(위치, 종류 등)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경보시설을 설치(시설물 인계 시까지)하여, 작동여부를 정기(매월)적으로 확인하고, 대피도면을 부착하는 등 재난상황 전파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 ✓ 공사관계자 등이 해당 대책을 알지 못해 설계도면 및 지하터널 등 특수공간 경보시설(위치, 종류 등 명시) 반영과 비상경보시설 작동여부 매월 점검, 대피도면 출입구 부착 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감찰 결과를 반영하여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개선대책의 지속적인 이행관리가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지하터널 등 특수공간 작업장에 비상경보시설 설치여부 확인
- 비상경보시설 작동여부 매월 점검 및 대피도면 출입구 부착여부 확인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지하터널 등 특수공간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개선 실행계획(도시철도 토목부-10335)

### 2.2.26 감리단 시공오차 검측결과 적정성 수시 확인(안전감찰)

- ✓ 시공오차 발생 시에 계획 변경, 감리원의 발주청 보고 등 감리원의 조치 미흡과 주요 구조물의 시공 상태 검측 부실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립한 “감리단 시공오차 검측결과 적정성 수시 확인” 대책
- ✓ 구조적 주요부위와 가시설 등에 대하여 감리단의 검측결과를 공사관리관이 검사항목(Check-point)에 포함하여, 최소 월1회 이상 정기 점검하도록 하였지만, 감찰 결과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에 따라 시공오차 검측결과 적정성 수시 확인을 통해 부실한 검측이 되지 않도록 본 대책의 지속적인 이행관리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오차 검측결과 적정성 수시 확인 및 기록
- 시공오차 검측결과에 대한 계획 변경 및 발주청 보고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감리단 검측결과 적정성 확인방안 (토목부-19847)

### 2.2.27 기술지원감리원 운영 개선(안전감찰)

- ✓ 기술지원 감리원(비상주)은 책임감리원이 요청하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시공 상세 도면을 검토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리용역회사의 조직 위계상 책임감리원이 기술지원 감리원에게 검토를 요청하기 쉽지 않아서, 내실 있는 현장지원이 곤란하여, 기술지원 감리원은 규정 이외 책임감리원 요청이 없어도 주요 구조물의 현장조사 분석 및 기술적 검토, 주요 구조물 및 중요한 시공 상세도면 검토, 중요한 설계 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및 구조 안정성검토,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등 업무수행을 하도록 한 대책
- ✓ 감찰 결과, 일부 공사관계자 등이 해당 개선대책을 알지 못해 기술지원감리원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개선대책의 적극적인 이행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기술지원 감리원은 규정 이외 책임감리원 요청이 없어도 주요 구조물의 현장조사 분석 및 기술적 검토, 주요 구조물 및 중요한 시공 상세도면 검토,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및 구조 안정성 검토,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등의 업무수행
- 기술지원 감리원의 독자적인 업무수행 보장 및 활동실적 기록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책임감리 제도 역할강화 세부시행 계획 (토목부-21008)

## 2.2.28 책임감리원 공사중지권 시행 보장

- ✓ 부실시공, 시공오차 등이 발생한 경우에 감리단은 시정·공사 중지 명령 등 제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기한 지체상금 부담으로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와 감리단까지 공정관리 책임을 묻는 경향 등으로 공사 중지 등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사고 우려 시 책임감리원은 “공사 중지명령 조치” 확행과 공정지연 부담에 대해서 감리원에게 공정지연에 대한 책임 면제, 공기 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 시 감리 용역기간 연장 및 감리비 별도 계상조치토록 한 대책
- ✓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61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제40조의2(불이익 조치의 금지), 제40조의3(면책)에 명시되어 있으며, 책임감리원의 공사중지권 보장과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해 본 대책의 지속적인 이행관리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부실시공, 시공오차 등이 발생한 경우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공사중지 시행 및 활동실적 기록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책임감리 제도 역할강화 세부시행 계획 (토목부-21008)
-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61조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 2.2.2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작성 보급(안전감찰)

- ✓ 서울시의 복잡한 공사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미흡 및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체계 미흡 사항 개선을 위해, 건설공종별 소규모 공사장과 외국인 근로자용 매뉴얼 발간, 외국어 안내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 등을 위한 개선대책
- ✓ 일부 공사관계자 등이 해당 개선대책을 알지 못해 외국어(다국어) 안내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 대책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감찰 결과 확인됨에 따라, 본 대책의 적극적인 이행관리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건설공종별 소규모공사장과 외국인 근로자용 매뉴얼 비치 및 활용지도
- 외국어 안내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 확인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보급 추진계획(도시철도공무부-9121)

## 2.2.30 주기적 안전교육 및 맞춤형 매뉴얼 작성 보급

- ✓ 본부에 적합한 안전관련 규정 및 세부지침 부재,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 정립 부재, 공사관리관의 안전관리 역량 부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한 대책
- ✓ 2014년 3월 건설안전기본지침을 제정하고 2021.06.01. 개정작업을 완료하여 신규 현장 안전기술지도 및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지침과 흠막이 가시설 계측관리 분석관리지침 수립,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매뉴얼 전파, 연중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관리와 공사관리관의 역량향상에 기대효과가 높으므로 본 대책의 지속적인 이행관리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안전관리과에서 실시하는 공사관계자 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
- 건설안전기본지침 및 안전사고 매뉴얼 등의 비치 및 활용지도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건설안전 기본지침 제정 및 활용계획(안전관리과-299)

## 2.2.31 공사장 휴게실 설치 의무화 및 환경정돈(안전감찰)

- ✓ 휴게 공간 부족 등 근로자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근로자의 휴게 공간 설치 법제화 법률개정 건의 및 무질서한 작업도구, 자재 등 정리정돈과 안전사고 예방강화를 위한 대책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대다수 현장에서 수급인별 근로자에 대한 휴서기, 휴한기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휴게시설 설치 운영관리 상태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이행 관리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시행 2022. 8. 18.

-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이행 및 확인 사항

- 휴서기, 휴한기 공사장 휴게실 설치 및 적정 운영여부 확인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방재안전시설부-4236)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620호 제7조의2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 2.2.32 근로자 음주·흡연 관리방안 추진

- ✓ 건설현장 내 근로자가 음주상태에서 작업 시 불안정한 행동 유발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자 보호 및 산재사고 방지를 위해 근로자 음주·흡연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작업 전 모든 근로자에 대한 음주측정 및 교육 실시, 별도의 구획된 흡연구역(소화기 비치) 설치 등을 위한 대책
- ✓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 운동의 일환으로 대부분 현장에서 상시 운영되고 있는 대책으로 상시 관리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근로자 음주·흡연에 대한 관리방안 검토
- 작업 전 모든 근로자에 대한 음주측정 및 교육 실시여부 확인
- 지정된 흡연구역 설치 및 소화기 비치여부 확인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로자 음주·흡연 관리방안(방재안전시설부-2481)

### 2.2.33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강화 및 하도급 계약 지원센터 개원

- ✓ 하도급 관련 제도는 대폭 보완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이행이 부진하여, 대금 미지급 및 불공정한 불법 저가하도급 계약 사례가 상존하는 등, 하도급관련 제도의 현장 정착이 미흡함에 따라,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 표준 하도급계약서·하도급계약서 제출 등 서류 작성지원, 기타 법률 및 민원 상담(신원보호 강화) 등을 위해, 서울시 하도급계약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발주부서의 월별 정기 점검 등을 시행하는 대책
- ✓ 하도급계약이 있는 2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기관 자체점검, 대금e바로 시스템 점검,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하도급(관리)계획 및 직접시공 적정여부, 대금지급 적정여부, 부당특약 존재에 대해 연 2회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하도급 관련 제도의 정착을 위해 본 대책의 지속적인 이행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서울시 하도급계약 지원센터 설치 운영 안내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공정한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하도급 호민관제 공약실천 계획 (경영감사담당관-12168)

### 2.2.34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한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공사기간 단축, 위험한 공법 적용 및 시공자 임의로 공법 변경여부 확인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로 공법 변경 시 계획 검토 및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2조(기술검토)

### 2.2.35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검토 및 제출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1.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 도급계약 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를 참조하여 공기연장 사유, 공기연장 시 간접비(재료비·노무비, 보험료, 복리후생, 세금·공과금, 임대비 등) 부담주체 등을 명확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실정보고 검토 및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7조(일반행정업무)

### 2.2.36 설계변경의 검토 및 실정 보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 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③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함.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설계변경 요청에 대한 현지 확인
- 설계변경에 대한 실정보고 검토 및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설계변경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 (설계변경 요청 방법 등)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7조 (일반행정업무)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7조 (설계변경 관리)

### 2.2.37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확인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회사 내 안전보건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문서를 말하며, 안전보건 관리는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직업병 예방, 건강 증진 등을 도모하는데 있음.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여부 확인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제27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 참고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사업의 종류	상시 근로자 수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상
(11) 상기 사업을 제외한 사업(건설업 등)	100명 이상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1	총칙 ①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③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①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④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⑤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① 안전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②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③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구분	세부 내용
4	작업장 안전관리	④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⑤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⑥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에 관한 사항 ⑦ 안전표지·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①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②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③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④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⑤ 보건표지·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① 질병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②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③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②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보칙	①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보건 관련 제언 및 포상·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안전·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의 사항 ④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 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 2.2.38 유해·위험 방지 조치 이행 확인

- ✓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작업 중지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안전보건표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를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외국어 표지판 포함) 여부 확인
- 설비·물질·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위험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확인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제39조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4호)

■ 참고 사항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1. 금지표지	101 출입금지	102 보행금지	103 차량통행금지	104 사용금지	105 탑승금지	106 금연
	107 화기금지	108 물체이동금지	2. 경고표지	201 인화성물질 경고	202 산화성물질 경고	203 폭발성물질 경고
205 부식성물질 경고	206 방사성물질 경고	207 고압전기 경고	208 매달린 물체 경고	209 낙하물 경고	210 고온 경고	211 저온 경고
212 몸균형 상실 경고	213 레이저광선 경고	214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	215 위험장소 경고	3. 지시표지	301 보안경 착용	302 방독마스크 착용
303 방진마스크 착용	304 보안면 착용	305 안전모 착용	306 귀마개 착용		307 안전화 착용	308 안전장갑 착용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구분	내용
안전조치	<p>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li> <li>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물질 등에 의한 위험</li> <li>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li> </ol> <p>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발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li> <li>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li> <li>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li> <li>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li> </ol>
보건조치	<p>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흠(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 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li> <li>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 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li> <li>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li> <li>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단말기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li> <li>5. 단순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li> <li>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건강장해</li> </ol>

2.2.39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이행 확인

-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 ✓ 안전인증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인증하는 절차 및 제도
- ✓ 자율안전확인인 신고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 안전검사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 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

- 안전인증(KCs 마크 획득) : 서면심사 → 기술능력·생산체계심사 → 제품심사
- 자율안전확인신고 : 신고 접수 → 제출서류 확인 → 증명서 교부

■ 이행 및 확인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실시여부 확인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여부 확인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방호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

■ 참고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방호조치
1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의 해당 기계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작동 부분에 돌기부분이 있는 것</li> <li>② 동력전달부분 또는 속도조절부분이 있는 것</li> <li>③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문함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li> <li>②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li> <li>③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톨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li> </ul> </li> </ul>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안전검사의 차이점

구분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안전검사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자율안전확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설치이전	구조 변경	대상기계	주기	특이사항	대상기계	특이사항
기계 및 설비		프레스	프레스	3년/2년			
		전단기 및 절곡기	전단기	3년/2년			
		크레인	크레인	3년/2년 (건설현장 6개월 마다)	정격하중 2톤미만 제외		
		리프트	리프트	3년/2년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압력용기	압력용기	3년/2년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제품 4년마다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롤러기	롤러기	3년/2년	밀폐형 구조 제외	혼합기	
		사출성형기	사출 성형기	3년/2년	형 체결력 294KN 미만 제외	파쇄기 또는 분쇄기	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고소작업대	고소 작업대	3년/2년	화물, 특수자동차에 탑재 한정	식품가공용 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
		곤돌라	곤돌라	3년/2년		공작기계	동근톱, 대패 루타기, 락톱, 모떼기기계만 해당
			국소배기장치	3년/2년	이동식 제외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	
방호 장치			원심기	3년/2년	산업용만 해당	인쇄기	
			컨베이어	3년/2년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3년/2년		산업용 로봇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 방지기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롤러기 급정지장치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연삭기 덮개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목재 가공용 동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		
	충돌·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구분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안전검사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자율안전확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설치 이전	구조 변경	대상기계	주기	특이사항	대상기계	특이사항
보호구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2.2.40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확인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MSDS를 작성, 비치 또는 게시하고, 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자는 MSDS를 함께 제공토록 하고 있음.

#### ■ 이행 및 확인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여부 확인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 표시 부착여부 확인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실시여부 확인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 2.2.41 작업환경측정 실시 확인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 ①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114종), 금속류(24종), 산 및 알칼리류(17종),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기타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② 물리적 인자(2종) :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 ③ 분진(7종) : 광물성분진, 곡물 분진(Grain dusts), 먼 분진(Cotton dusts), 목재 분진(Wood dusts), 석면 분진(Asbestos dusts; 1332-21-4 등), 용접 흄(Welding fume), 유리섬유(Glass fibers)

· 작업환경측정 시기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이후 6개월 주기로 실시

#### · 작업환경측정 실시방법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작업환경측정 실시여부 확인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제26조, 제2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8조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 2.2.4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확인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건강검진기 본법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 ①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109종), 금속류(20종), 산 및 알칼리류(8종),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기타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금속가공유

- ② 물리적 인자(8종) : 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 ③ 분진(7종) : 곡물 분진(Grain dusts),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면 분진(Cotton dusts), 목재 분진(Wood dusts), 용접 흄(Welding fume), 유리 섬유(Glass fiber dusts), 석면 분진(Asbestos dusts; 1332-21-4 등)
- ④ 야간작업(2종)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연 1회) 실시여부 확인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실시여부 확인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여부 확인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5조~제210조

#### ■ 참고 사항

- 근로자 건강진단

건강진단 종류	시기	대상
배치전건강진단	업무배치 전	대상 업무 배치 예정자
특수건강진단	기본주기 설정 및 단축할 수 있는 조건 명시	대상 유해인자 노출근로자 작업 전환자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시기 외에 작업관련 증상을 호소할 때	천식, 피부질환, 기타 건강장애 증상 호소자
임시건강진단	직업병 유소견자 다수 발생할 때	동일부서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비사무직(1년 1회), 사무직(2년 1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 •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2.2.43 근로시간 금지 또는 제한조치 확인

- ✓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함.
- ✓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됨.

-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질병자의 근로금지 또는 제한조치여부 확인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잠함 또는 잠수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여부 확인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시 무자격자의 근로제한여부 확인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 (질병자 등의 취업 제한)

### ■ 참고 사항

- 질병자의 근로금지
  - ①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 ②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 ③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자로서 근로에 의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 ④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자
- 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 ① 유해물질에 중독된 자
  - ② 방사선 피폭자
  - ③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
  - ④ 결핵, 빈혈환자
  - ⑤ 알콜 중독자
  - ⑥ 감압증 환자 (고기압에 의한 장애자)
  - ⑦ 관절염, 류마티스 환자
  - ⑧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자

### 2.2.44 체크리스트

순서	항 목	이행 및 확인 사항	확인 결과
2.2.1	안전관리 추진실적 및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 추진 실적 보고서의 접수 및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서면 보완을 지시하는가?</li> <li>•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 하는가?</li> </ul>	
2.2.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가?</li> </ul>	
2.2.3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검토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시공자의 이행 여부를 검토 후 보고하는가?</li> <li>•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해 검토 후 보고 하는가?</li> <li>• 발주자, 시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함께 하는 정기 회의에 참여하는가?</li> <li>•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 여건 변경 시 계획변경 여부를 확인 및 보고하는가?</li> <li>•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가?</li> <li>• 안전점검 실시여부를 확인하는가?</li> <li>• 안전교육 실시여부를 확인하는가?</li> <li>•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가?</li> <li>•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여부를 검토 및 보고하였는가?</li> <li>•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확인 및 보고하는가?</li> </ul>	
2.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확인 및 실적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을 확인 및 보고 하는가?</li> </ul>	
2.2.5	안전관리비의 집행 확인 및 실적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안전관리활동 실적에 따른 정산 자료의 적정성 검토 및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는가?</li> </ul>	
2.2.6	안전점검의 이행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안전점검(매일/공종별) 실시(기록 및 조치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가?</li> <li>•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여부를 확인(종합정보망) 하는가?</li> <li>•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있는 경우)를 확인하는가?</li> </ul>	

순서	항 목	이행 및 확인 사항	확인 결과
2.2.6	안전점검의 이행 확인	• 준공 전에 초기점검의 실시를 확인하는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실시(공사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경우)를 확인하는가?	
		• 안전점검의 결과분석 및 평가 실시여부를 확인하는가?	
		•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의 실시여부를 확인하는가?	
2.2.7	안전교육의 이행 확인	• 안전교육계획에 따른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는가?	
		•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 실시여부를 확인하는가?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월 1회 이상 정기교육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가?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안전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및 기록 비치하는가?	
		• 매월 안전교육 실적을 검토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 하는가?	
2.2.8	정기적인 회의에 참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정기적인 회의에 참여하는가?	
		• 시공자가 주관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등의 시행을 확인하는가?	
2.2.9	안전사고 조사 및 조치결과 확인	• 시공자가 작성한 사고보고서의 검토 및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는가?	
		• 시공자가 제출한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건설사고 통계 자료 검토 및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는가?	
2.2.10	수시·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확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수급인(현장소장)이 본부 또는 수급인 본사에서 정한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공사의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모든 구성원, 이해관계자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하도록 지도하는가?	
		• 주기적인 위험성평가 회의 시행여부 확인하는가?	
		• 안전교육, TBM활동 등을 통한 위험성평가 내용 전파여부 확인하는가?	
		• 위험성평가 대책 이행 여부 확인하는가?	
2.2.11	안전·보건관리체제 (조직 구성) 운영 확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안전보건관리조직 유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여부 지도 및 확인하는가?	

순서	항 목	이행 및 확인 사항	확인 결과
2.2.12	안전문서 관리 (설계도서 등 검토 업무)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 문서 등을 외부로 유출 시 시공자 승인요청에 대한 검토 및 보고하는가?	
2.2.13	안전관리 수준 평가	•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하였는가?	
2.2.14	일요일 건설공사 금지 및 주말·휴일작업계획서 검토	•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서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요일에 건설공사 시행여부를 확인 하는가?	
		•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승인인 후보고 하는가?	
2.2.15	상시 안전점검 체계 유지	• 건설사업관리단 안전점검 시행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가?	
		• 일일작업에 대한 안전활동 및 활동내용을 일지에 기록 하고 있는가?	
		• 안전관리과 및 공사관리관 현장 안전점검에 대한 조치 결과를 확인 및 보고하는가?	
		• 건설기계(카고크레인, 기중기, 천공기, 항타·항발기) 반입 전 점검 시행 및 지적사항 시정요구, 조치 결과보고를 확인 하는가?	
		• 연 3회 이상 모의훈련 추진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여부를 검토 확인하는가?	
		• 위험공종 작업허가서를 검토하여, 공사관리관에게 제출 하는가?	
		• 사고보고서 검토 및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는가?	
		• 재발방지대책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과에 제출 및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가?	
• 휴일작업계획 검토 및 보고(감리원 현장 상주) 하는가?			
2.2.16	대형 붕괴 재해 대비 지도 점검 시행	• 안전관리과 또는 공사관리관에게 지도 점검을 요청하는가?	
		• 강교 및 중량물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확인하는가?	
		•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타설 전 작업을 확인하는가?	
		• 흙막이가시시설 굴착단계별 작업을 확인 하는가?	
2.2.17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안전직무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 (상, 하반기 2회) 하였는가?	
		• “근로자 안전 10계명”과 “안전한 현장 만들기 3333 운동”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시행을 지도하는가?	

순서	항 목	이행 및 확인 사항	확인 결과
2.2.18	근로자 안전 10계명 일상화 추진	• 현장 관계자 “근로자 안전 10계명” 교육을 지도하는가?	
		• 현장에 “근로자 안전 10계명” 게시여부를 확인하는가?	
		• 현장에서 “근로자 안전 10계명” 준수여부를 확인하는가?	
		• 건설기계 10대 안전수칙 홍보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가?	
2.2.19	위험시기 및 재난대비 특별 안전점검 시행	• 풍수해 대비 예방계획 검토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폭염대비 혹서기대책 검토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해빙기 관련 안전대책 검토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였는가?	
2.2.20	현장 소통 및 최신자료 공유	• 안전 Q&A 자료방을 알고 있는가?	
2.2.21	시공단계별 안전성 강화(안전감찰)	• 시공단계별 안전성 강화대책을 검토 및 보고하는가?	
		• 시공계획서가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 되었는지 검토 및 보고하는가?	
		• 공종별 근로자·시설물 안전대책을 검토 하는가?	
		• 공종별 수해예방, 재난대책을 검토하는가?	
2.2.22	불법 하도급과 품떼기 근절 (안전감찰)	• 불법 하도급과 품떼기 근절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가?	
		• 현장 내 홍보물 게시(포상금 지급 문구 게시판에 게시 및 신고서 비치 등)를 확인하는가?	
2.2.23	안전조회(Tool Box Meeting) 시 5RP 제도 시행 (안전감찰)	• 5RP 제도 시행 및 적정 운영여부를 확인하는가?	
2.2.24	무자격기술자 퇴출 등 엄중조치(안전감찰)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자 자격 요건 등 조사결과를 분기별로 발주청에 보고하는가?	
2.2.25	신속하고 다양한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개선 (안전감찰)	• 지하터널 등 특수공간 작업장에 비상 경보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가?	
		• 비상경보시설 작동여부를 매월 점검 및 대피도면을 출입구에 부착여부를 확인하는가?	
2.2.26	감리단 시공오차 검측결과 적정성 수시 확인 (안전감찰)	• 시공오차 검측결과의 적정성을 수시 확인 및 기록 관리 하는가?	
		• 시공오차 검측결과에 대한 계획 변경 및 발주청에 보고하는가?	

순서	항 목	이행 및 확인 사항	확인 결과
2.2.27	기술지원감리원 운영 개선(안전감찰)	• 기술지원감리원은 규정 이외 책임감리원의 요청이 없어도 구조물의 현장조사 분석 및 기술적 검토, 주요 구조물 및 중요한 시공 상세도면 검토, 중요한 설계 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및 구조 안정성검토,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가?	
		• 기술지원감리원의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활동 실적을 기록하는가?	
2.2.28	책임감리원 공사중지권 시행 보장	• 부실시공, 시공오차 등이 발생한 경우와 안전사고가 우려 되는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공사중지 시행 및 활동 실적을 기록하는가?	
2.2.29	외국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작성 보급 (안전감찰)	• 건설공종별 소규모공사장과 외국인 근로자용 매뉴얼 비치 및 활용지도하는가?	
		• 외국어 안내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여부를 확인하는가?	
2.2.30	주기적 안전교육 및 맞춤형 매뉴얼 작성 보급	• 안전관리과에서 실시하는 공사관계자 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하는가?	
		• 건설안전기본지침 및 안전사고 매뉴얼 등의 비치 및 활용 토록 지도하는가?	
2.2.31	공사장 휴게실 설치 의무화 및 환경정돈 (안전감찰)	• 혹서기, 혹한기 공사장 휴게실 설치 및 적정 운영여부를 확인하는가?	
2.2.32	근로자 음주흡연 관리방안 추진	• 근로자 음주·흡연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 하는가?	
		• 작업 전 근로자 음주측정 및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가?	
		• 지정된 흡연구역 설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하는가?	
2.2.33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 강화 및 하도급 계약 지원센터 개원	• 서울시 하도급계약 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안내하는가?	
2.2.34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 공사기간 단축, 위험한 공법 적용 및 시공자 임의로 공법 변경여부를 확인하는가?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로 공법 변경 시 계획 검토 및 보고 하는가?	
2.2.35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검토 및 실정보고	•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실정보고 검토 및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였는가?	
2.2.36	설계변경의 검토 및 실정 보고	• 설계변경 요청에 대해 현지를 확인하였는가?	
		• 설계변경에 대한 실정보고 검토 및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 하였는가?	

순서	항 목	이행 및 확인 사항	확인 결과
2.2.37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확인	• 시공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여부를 확인하였는가?	
2.2.38	유해·위험 방지 조치 이행 확인	•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 (외국어 표지판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가?	
		• 설비·물질·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위험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가?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 하는가?	
2.2.39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이행 확인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장치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가?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여부를 확인 하는가?	
2.2.40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확인	•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해당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여부를 확인하는가?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 부착여부를 확인하는가?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실시여부를 확인하는가?	
2.2.41	작업환경측정 실시 확인	•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작업환경측정 실시여부를 확인하는가?	
2.2.4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확인	•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연 1회) 실시여부를 확인하는가?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실시여부를 확인하는가?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가?	
2.2.43	근로시간 금지 또는 제한조치 확인	• 질병자의 근로금지 또는 제한조치 여부를 확인하는가?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업에서 하는 작업 (잠함 또는 잠수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여부를 확인 하는가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시 무자격자의 근로제한 여부를 확인하는가?	

## 2.3 준공단계

### 2.3.1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검토 및 보고

시공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별표 5에 따른 목차를 참조하여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

#### ■ 확인사항

- 시공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검토 및 보고

#### ■ 관련 규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31조 (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35조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36조 (제출방법)

### 2.3.2 안전관리문서의 취합 및 보관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안전 관리 참여자가 작성한 안전관리문서를 취합하여 시설물안전법 제9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일부로 보관

#### ■ 확인사항

-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문서(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검토 및 승인요청
- 준공 시 관련 문서 검토 및 보고
  - ①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 ②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경우 사고 개요,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 보고서
  - ③ 시공단계에서 도출되어 유지관리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 ■ 관련 규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설계도서 등의 제출), 별지 제6호 서식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0조 (공사완료 단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42조 (보존 및 관리현황 보고)

## ■ 참고 사항

### • 안전관련 문서 목록

목 록	내 용	비 고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정산 설계도서	설계도,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안전관리문서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설계안전성검토		
사고조사 보고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서	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첨부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산정된 경우에만 해당
안전관리비 정산서	정산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첨부	
기술지도완료 증명원		기술지도계약서 제출 대상일 경우

### 2.3.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서 검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사용 및 정산은 계약단위 공사별로 이루어져야 함.

## ■ 확인사항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서 검토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 참고 사항

### • 정산방법

- (1)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금액이 아닌 총 공사금액을 대상으로 계상하고 정산에 있어서도 해당 차수가 아닌 총 공사기간에 대하여 정산함.
- (2) 소급 정산 가능 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지출한 것이라면 사용시점 이후라도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정산이 가능함.

### (3) 계상금액을 초과 사용한 경우

- 당해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협의 처리하여야 함.

### (4)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 재정부 계약예규) 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함.
- 또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나 정산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함.
- 이는 단지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는 공사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 공사금액의 70% 정도에 해당하는데 따른 것이므로 어떤 경우든 동일한 방법(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함.
- 과세현장 : 공급가액으로 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서 상 경비 항목의 세부 비목으로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정산
- 비과세현장(면세현장)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로 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처리

### • 증빙방법

- (1) 부가사용증빙은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사용항목에 따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품의서, 송장 등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구비, 첨부하면 됨.
- (2) 분사 사용분에 대한 현장의 입증방법은 그 내역을 별도 입증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분사 배정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됨.
  - 분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확인은 반드시 대표이사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체위임, 전결규정 등에 의하거나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실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의 확인도 가능함.

# Chapter 03

## 시공사 안전업무 가이드

1. 업무 흐름도
2. 공사 단계별 안전업무

### 2.3.4 안전관리비의 정산서 검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정기 안전점검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을 말함.

- 이행 및 확인 사항
  - 안전관리비의 정산서(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 검토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3조 (정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4조 (추가조정 등)

### 2.3.5 체크리스트

순서	항 목	이행 및 확인 사항	확인 결과
2.3.1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시공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검토 및 보고하였는가?	
2.3.2	안전관리문서의 취합 및 보관	•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문서(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를 검토 및 승인요청 하였는가? • 준공 시 관련 문서를 검토 및 보고하였는가?	
2.3.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서 검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서를 검토하였는가?	
2.3.4	안전관리비의 정산서 검토	• 안전관리비의 정산서(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검토하였는가?	

# 시공사 안전업무 가이드

## 1. 업무 흐름도

### 1. 업무 흐름도

구분	발주자(공사관리관)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사
계획단계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협의요청 및 결과통보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지하안전점검 자반침하 위험도평가
설계단계	설계안전성검토 의뢰 기본안전보건대장 자료 제공 설계안전보건대장 승인 설계안전보건대장 자료 제공 안전관리비의 계상	설계안전성검토 실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도기본 이계 대책 도기본 안전관리방침	
착공단계	공사안전보건대장 승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및 지정 안전보건조장자 선임 및 지정 통보 안전관리계획서 기초자료 제공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등)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	공사안전보건대장 검토 건설현장 관계자의 업무분담 적정성 검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조치확인 위험성평가 검토확인 안전보건조장자 선임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설계안전성검토 반영)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관리계획서 기초자료의 반영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작성	
시공단계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안전관리비 집행 확인 정기적인 회의 확인 안전교육 결과의 확인 안전점검 결과의 확인 안전사고 조사결과 확인 제재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및 검토 (발주청) 보고 안전관리비 집행여부 확인 및 검토 (발주청) 보고 위험성평가 검토확인 협의체 회의 확인 안전교육의 실시여부 검토 안전사고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안전관리비 집행 위험성평가 실시 협의체 회의 실시 안전교육의 실시 안전사고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준공단계	안전점검결과보고서 보관 설계도서 보관 및 활용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검토 안전관리문서의 검토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안전관리문서의 제출	

## 2. 공사 단계별 안전업무

### 2.1 착공단계

#### 2.1.1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제출

건설공사에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각각 계획, 설계, 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고서

•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는 공사관리관에게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 및 발주자(공사관리관)에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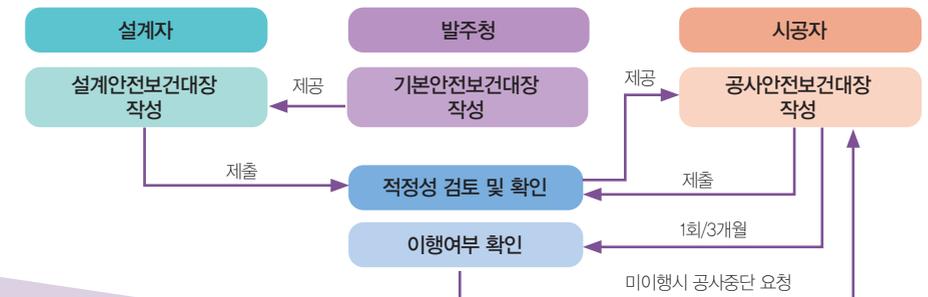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

#### ■ 참고 사항

종 류	작성주체	작성시기	비 고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계획단계	건설안전전문가 업무수행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	설계단계	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포함
공사안전보건대장	시공사	시공단계	발주자는 3개월마다 이행 여부 확인

#### ■ 진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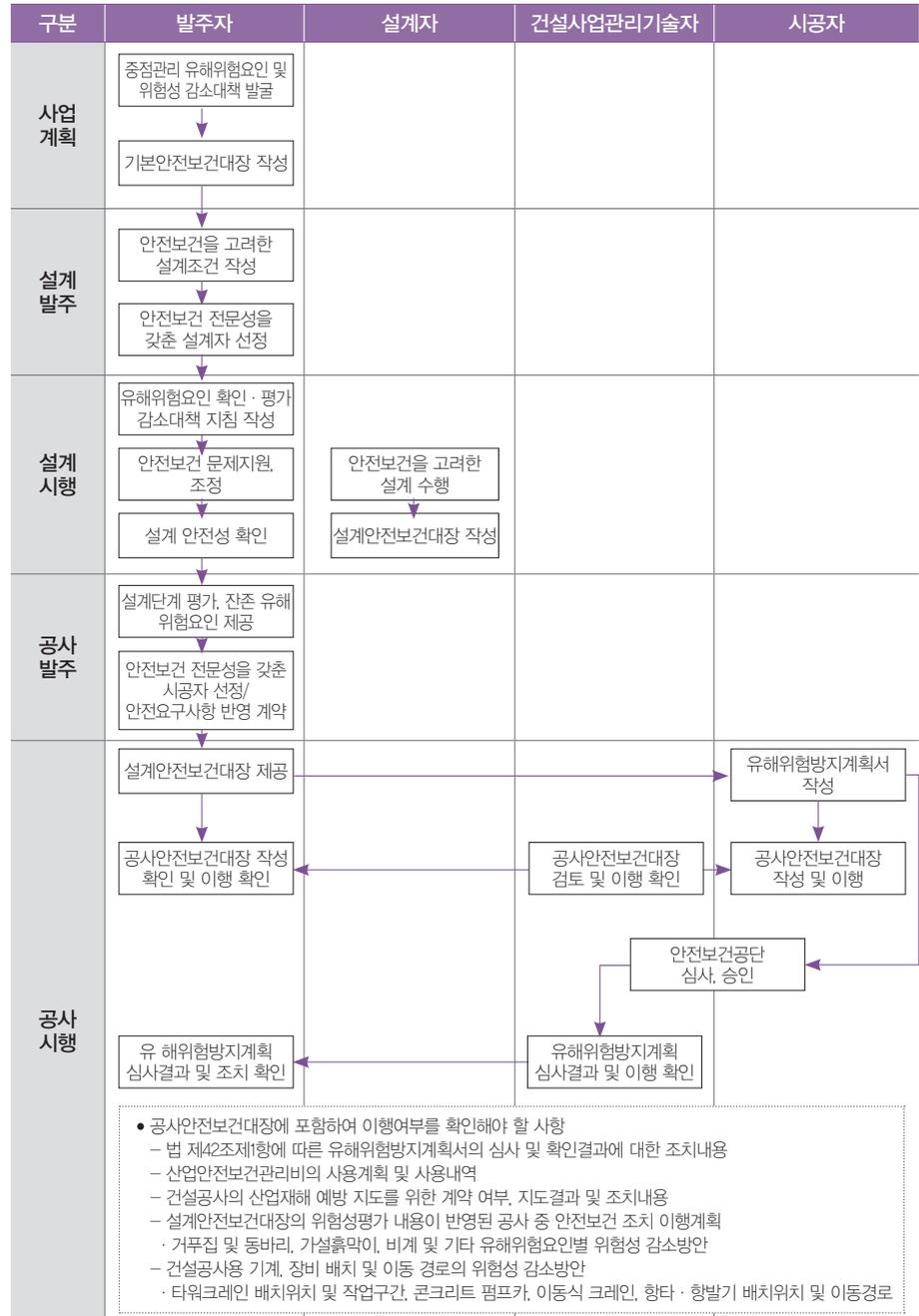


■ 주요 내용

- (1) 공사단계에서 시공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는 3개월 이내마다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작업을 중단하도록 요청
- (2) 발주자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천만원 부과

종 류	작성주체	작성시기	내 용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계획단계	①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등 ② 공사현장 제반 정보 ③ 중점 관리 대상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④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설계변경의 요청, 안전 보건조정자 선임,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이행확인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	설계단계	①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등 ② 핵심 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 거푸집 및 동바리 :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유해 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 가설휴막이 :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 비계 :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 기타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공사안전보건대장	시공자	시공단계	①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등 ②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 거푸집 및 동바리 :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 가설휴막이 :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 비계 :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기타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③ 건설공사용 기계·장비 배치 및 이동 경로의 위험성 감소방안 - 타워크레인 배치 위치 및 작업구간 - 콘크리트 펌프카 배치 위치 및 이동 경로 - 이동식크레인 배치 위치 및 이동 경로 - 횡타·항발기 배치 위치 및 이동 경로

• 세부 진행 절차



## 2.1.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제출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 중 이행 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건설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위험요인을 사전 조사를 통해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으로 작성되는 문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설치하고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를 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안전보건공단)에게 제출
-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결과가 부적정일 경우 재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결과가 조건부적정일 경우 조건부 사항에 대해 보완하고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 중인 "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에 가입하여 해당 자료를 등록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제출서류 등)

### ■ 참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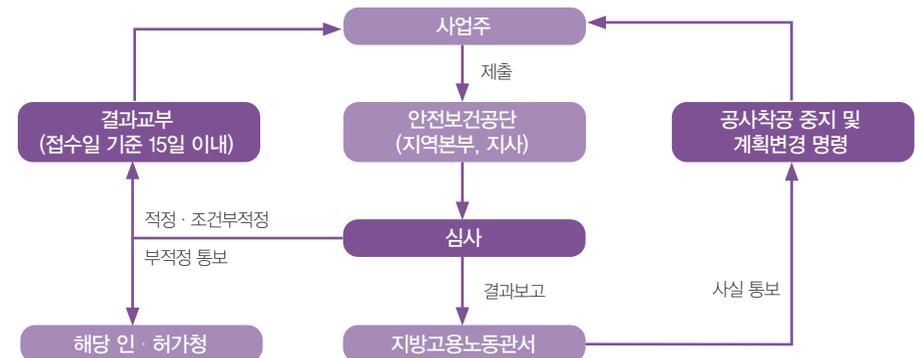
- 제출 대상
  - (1) 지상높이가 3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 ②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 ③ 종교시설
    - ④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⑥ 지하도상가
    - ⑦ 냉동·냉장 창고시설
  - (4)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5)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 (6) 터널건설 등의 공사
- (7)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 (8)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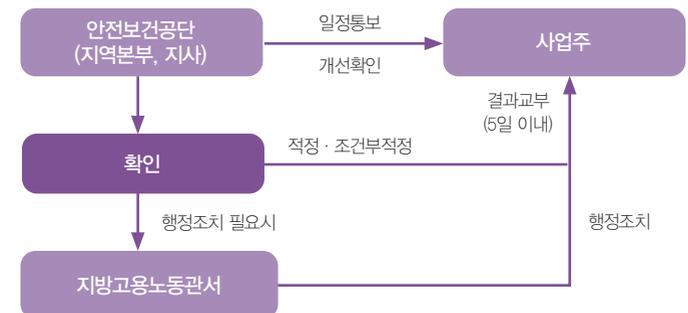
### • 제출 기한

- (1)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안전보건공단에 2부를 제출
- (2)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 ①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②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③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 • 심사 절차



### • 확인 절차



### 2.1.3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변경 및 제출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

- 안전한시공과 공사목적물의 안전, 공사장 주변의 안전을 위해 착공 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 승인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는 공사관리관이 제공한 설계안전성 검토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정보 확인
-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서 첨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제출)
- 공사 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가시설 변경에 대한 사항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추가 제출
- 안전관리계획서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
- 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조건부적정일 경우 보완사항을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서면보고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보완 조치
- 시공자는 작업공종에 따라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종 착수 전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승인을 받고 작업현장에 비치
-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검토

####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2022-791호) 제8조 (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단계)

#### ■ 참고 사항

- 안전관리계획서 적용 대상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양육하는 가족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설공사
  -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6)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①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
- ② 향타 및 향발기
- ③ 타워크레인

(7)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① 높이가 3미터 이상인 비계, 브라켓 비계
-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③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 등)
- ⑤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ACS, RCS 등)
- ⑥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지지대, 가설벤트, 터널 작업대차, 터널 라이닝폼 등)

(8) 기타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2.1.4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5,000㎡ 이상 창고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착공 전 반드시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청에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보고서

• 2020.12.10. 시행

#### ■ 이행 및 확인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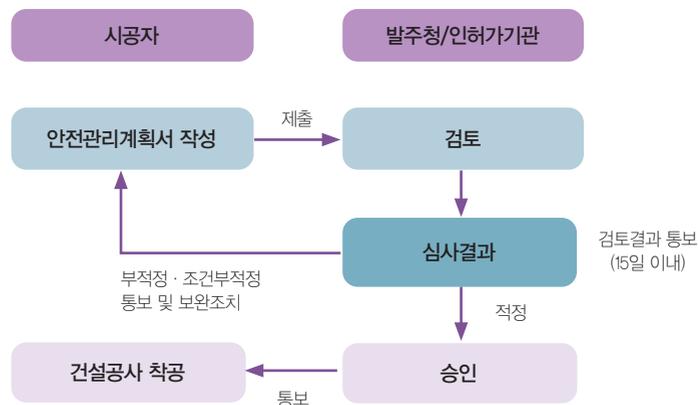
- 시공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이 아닌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보완 등 필요한 조치 후 제출

####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 참고 사항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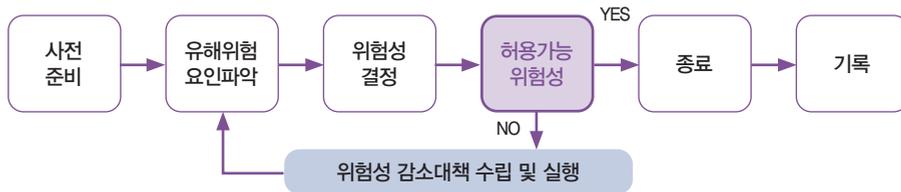
※안전관리계획서 변경시 동일 절차로 진행

### • 안전관리계획서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의 비교

구분	안전관리계획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
대상	1) 시트법 1, 2중 시설물(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상하수도, 옹벽·절토사면) 2) 지하 10M 이상 굴착작업 3) 폭발물 사용공사로서 20M이내 시설물, 100M 이내 사유가축 영향 예상되는 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공사 또는 10층 이상 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수직중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향타기 항발기, 천공기(H=10m이상), T/C 사용공사 6) 건진법 시행령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 ① 높이 3m이상 비계, 브라켓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③ 터널지보공, 2m이상 흠막이 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⑤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ACS, RCS 등) ⑥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지시대, 가설벤트, 터널작업대차, 터널 라이닝폼 등) 7)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 인정하는 건설공사	•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①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② 연면적 1000㎡ 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③ 연면적 1000㎡ 이상인 공장(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연면적 2000㎡ 이상) ④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 서울시 방침에 따른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 서울시 방침에 따른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① 지하 5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41조상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공사
내용	1) 총괄 안전관리계획 - 건설공사 개요 - 현장 특성 분석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등 - 현장 운영계획 : 안전관리조직, 공종별 안전 점검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 계획 등 -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2)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 가설, 굴착 및 발파, 콘크리트, 강구조물, 성토 및 절토, 해체, 설비공사, 타워크레인 공사 등	1) 건설공사 개요 : 위치도, 대상현장, 전체 공정표, 설계도서(도면) 2) 비계 설치계획 : 외부 설치 비계의 설치계획, 시공상세도, 시공절차, 주의사항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추락방지망, 낙하물 방지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계단난간 등의 설치 계획과 사진, 그림 등의 예시 자료
절차	1) 시공자 수립 2)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 3) 발주청, 인·허가기관에 제출 4)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 검토 5)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승인 6) 착공	1) 시공자 수립 2) 발주청, 인·허가기관에 제출 3)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승인 4) 착공

### 2.1.5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

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결정하여,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는 최초 위험성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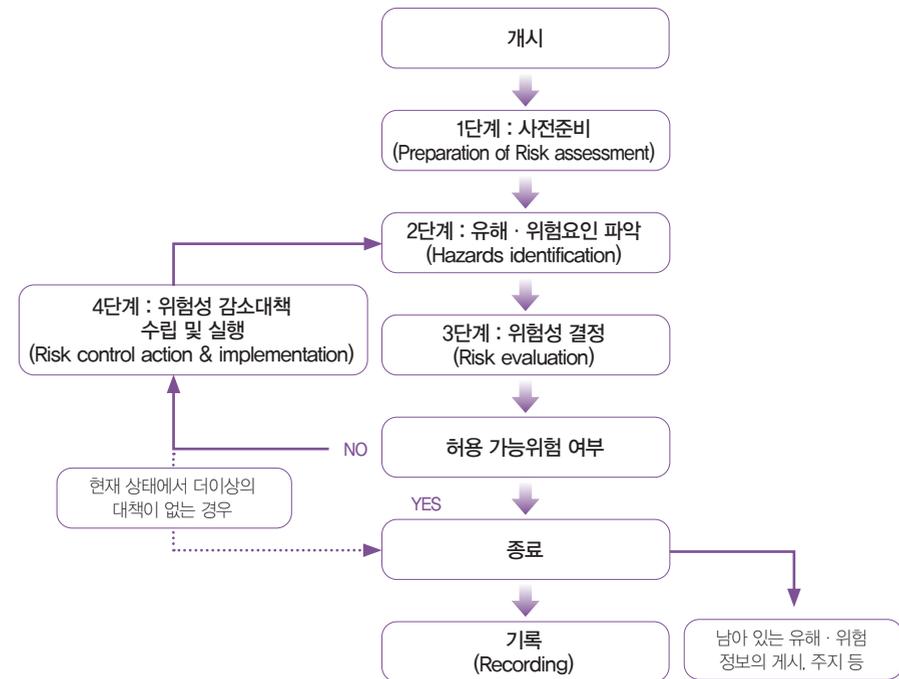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업무 처리규칙
- 현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및 절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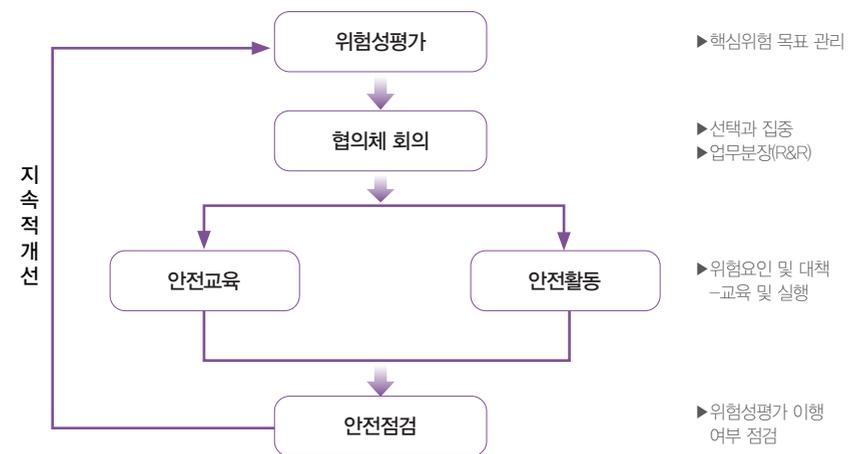
#### ■ 참고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수급인 관계없이 위험성평가의 주체를 사업주로 명시 하고 있으므로,
  -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해야 하고, 발주자가 지원하는 위험성평가 및 관련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 등 구성원 모두가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여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①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② 위험성 결정 내용 ③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 위험성평가 절차



#### • 위험성평가 운영 절차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구분	최초위험성평가	수시위험성평가	정기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공사 착공 전후 1개월 이내	2주 1회(권고) (실시할 사유가 발생할 때 주기와 시기에 상관없이 실시)	최초평가 후 매년 1회
대상 범위	계약 공사 전체 공정	2주 기간에 예상되는 공종	1년되는 시점부터 준공까지 공종
시행 주체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
실시 내용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 ①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②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③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④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상시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① 실시 내용은 상기와 동일 ② 일 평가, 주 평가, 월 평가로 실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4a4a8a; color: white; margin: 0;">일반적인위험성평가절차</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4a4a8a; color: white; margin: 0;">상시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p> </div> <p>※ 상시 위험성 평가 시행시 수시 및 정기 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같음</p>
-------	--

· 위험성평가 기록 및 보존방법

-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①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② 위험성 결정의 내용
  - ③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④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 ⑤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2.1.6 안전·보건관리체제(조직 구성) 구축

건설공사장 규모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 조직은 안전보건경영 실행과 구성원은 법에서 정한 책임, 직무·권한 및 의무를 준수하여 실행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는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참여자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총괄 감독하기 위해 안전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 시공자는 하수급인(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조직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및 권한과 책임이 명시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문서화(업무분장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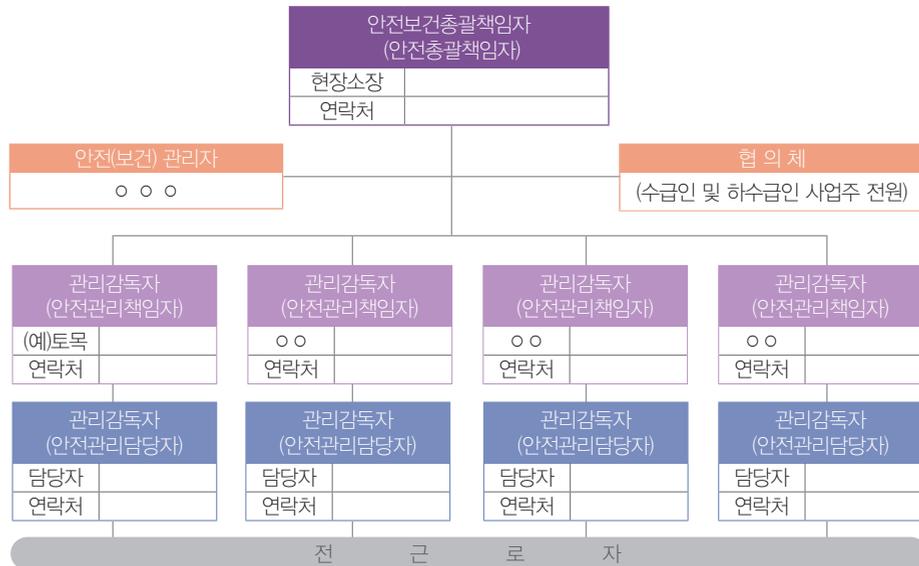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24조 (안전보건관리체제)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2조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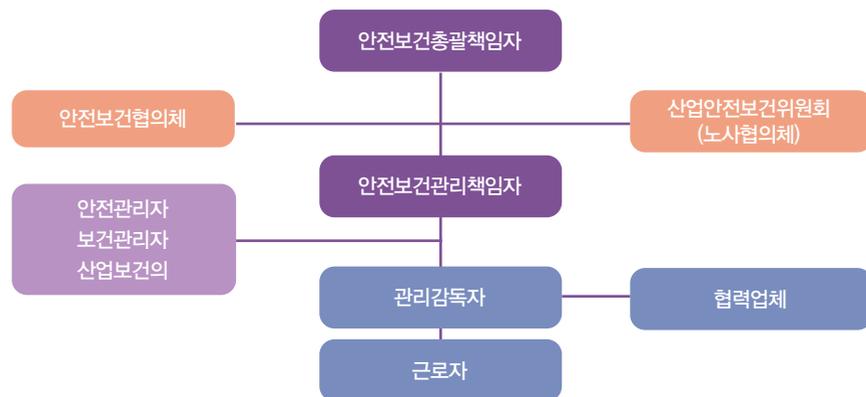
■ 참고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조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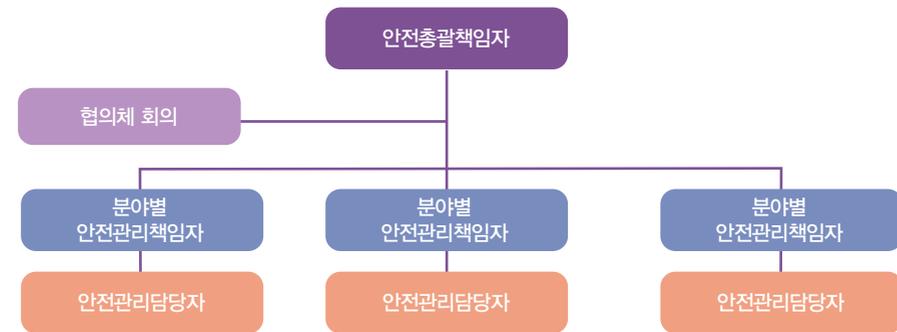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비고
주관부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목적	근로자의 안전·보건 재해예방	구조물의 안전 재해예방	
안전관리조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 협의체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협의체 구성 (수급인과 하수급인)	명칭 및 역할이 다름



• 안전보건관리조직(산업안전보건법)



• 안전관리조직(건설기술진흥법)



### 2.1.7 안전문서 관리(설계도서 등 검토 업무)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는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외부로 유출시 발주자에 승인요청
- 관련 규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1조(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 2.1.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요청 및 계약 체결, 통보

안전점검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청(또는 인·허가기관)에 등록된 기관 중 1개 기관을 선정하여 안전점검을 수행토록 하고 있음.(법령 개정 2020.1.7.)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요청
  - 시공자는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에게 통보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 (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022-791호) 제18조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 2.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 작성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비용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 작성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 ■ 참고 사항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공사종류	구 분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	기초액		
건축공사		3.11%	4,325,000원	2.37%	2.64%
토목공사		3.15%	3,300,000원	2.60%	2.73%
중건설공사		3.64%	2,975,000원	3.11%	3.39%
특수건설공사		2.07%	2,450,000원	1.64%	1.78%

### •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 · 계상 방법

-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 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 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 가격 작성 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 · 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이상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비교

구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주관부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li> <li>•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제7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안전관리비)</li>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①항</li> </ul>
목적	근로자의 안전 · 보건	시설물의 안전
수행형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사용기준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일정요율 적용)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내역에 반영, 실비 정산방법)
사용항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li> <li>2) 안전시설비 등</li> <li>3) 개인 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li> <li>4) 사업장 안전보건 진단비 등</li> <li>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li> <li>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li> <li>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li> <li>8) 본사 안전전담조직 사용비</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li> <li>2) 영 제100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li> <li>3) 발파 ·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li> <li>4) 공사장 주변 통행 안전관리대책 비용</li> <li>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 운용 비용</li> <li>6) 법 제62조 제7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 확인에 필요한 비용</li> <li>7)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 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 · 운용 비용</li> </ol>

### 2.1.10 안전관리비의 집행계획 확인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정기 안전점검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을 말함.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작성

####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안전관리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 ■ 참고 사항

-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를 작성
  - 1)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작성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기술자인건비(고급기술자 작업일수)
    - 직접경비(일비, 위험수당, 기계기구 손료, 보고서등 인쇄비, 소모품비, 기타)
    -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 2) 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판단하여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 한다.
  - 3)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 4)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에 관하여는 토목, 건축 등 관련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2.1.11 공사손해보험 가입방식 개선

- ✓ 공사손해보험을 각 공사장별로 분산 가입함에 따라,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예산 미확보 등에 대한 계약변경을 하지 않거나, 누락하거나, 미승계하여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보험을 발주기관이 도급비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공구별로 통합가입함으로써 보험사간의 경쟁을 통해서 보험료를 절감하고,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보험 가입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임.
- ✓ 계약담당자에 의한 공사보험 가입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점검 이행

-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중 다음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해야 함.

-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공사

-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50%
-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0%
-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20%
-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는 공사손해보험 가입 여부 통보
- 공사손해보험 통합 가입에 대한 협조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공사손해보험 가입 방식 개선 방안 (재무과-50910)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5조 (손해보험가입)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5절

### 2.1.12 설계설명회 (Kick-off Meeting)의무화(안전감찰)

- ✓ 시공자, 감리자의 설계도서 이해 부족과 설계자의 현장 상황, 시공여건에 대한 경험 부족에 따라, 위험이 높은 설계 도서를 제공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할 때에 예상되는 리스크(Risk)와 해결방안, 주요구조물의 시공절차, 기술·산업 안전관리 방안 등 주요 공정에 대한 설계설명회(K.O.M)를 의무화한 대책
- ✓ 감찰 결과, 설계 설명회 의무화 대책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어, 현장과 시공여건을 반영한 안전한 시공계획수립과 이행을 위해, 설계 설명회 의무화 대책 이행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 주요공정 시공계획 수립 시 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착수회의(K.O.M)에 참여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공사착수회의(Kick-Off Meeting)의무화 대책알림(토목부-20456)

## 2.1.13 직접시공 의무비율 및 대상공사 상황

- ✓ 낙찰업체가 직접시공을 하지 않고, 공사의 대부분을 저가로 하도급하고 있어, 정상보다 부족한 인원 및 장비 등으로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위험성 증대로, 건설공사 직접시공 비율 및 대상공사 상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한 대책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도금액 기준 50억에서 70억으로, 대상공사 확대와 직접시공 비율 10%는 도금액 기준이 30억~50억에서 30억~70억으로 의무비율이 조정되었으며, 낙찰업체에 대한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 여부 확인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다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함.

-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50%
-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0%
-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20%
-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건설사업관리단에 통보(건설산업 종합정보망 또는 직접시공계획통보서)
  - ① 직접시공 및 하도급 할 공사량,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 ② 예정공정표
- 시공자는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2.1.14 저가 하도급 심사대상 확대

- ✓ 원도급자의 낙찰률이 중·소규모 공사일수록 높으나, 심사대상 하도급 비율은 발주자 예정가격의 60%로 일률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법령 개정 건의 한 대책
- ✓ 저가 하도급 기준금액을 상향(도금액 대비 : 82% 미만, 예정가격 대비 64% 미만)하고, 하도급계약 심사대상 발주자 예정가격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반영된 사항으로 저가 하도급 방지를 위해, 본 대책의 지속적인 이행 필요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 이행 및 확인 사항

- 발주자가 시행하는 저가 하수급인에 대한 심사 협조
- 발주자가 심사한 결과를 통해 수급인(시공자)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에 대한 협조(이행)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2.1.15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 체결

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 토목, 건축공사로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 총공사금액 :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공사금액
- 건설공사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공공공사 등)를 착공하려는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022.8.18.부터 시행)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계약 체결 및 통보

■ 참고 사항

• 기술지도 대상금액 및 점검횟수

구분	건축공사	토목공사	점검횟수
대상금액	1억 ~ 50억 미만 건축법 제11조 대상	1억 ~ 50억 미만 (1개월 이상 공사)	15일 마다 1회 (2회/월)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50억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 150억원 미만) 전담 또는 겸직선임 가능  
 ※ 안전관리자 겸직 선임시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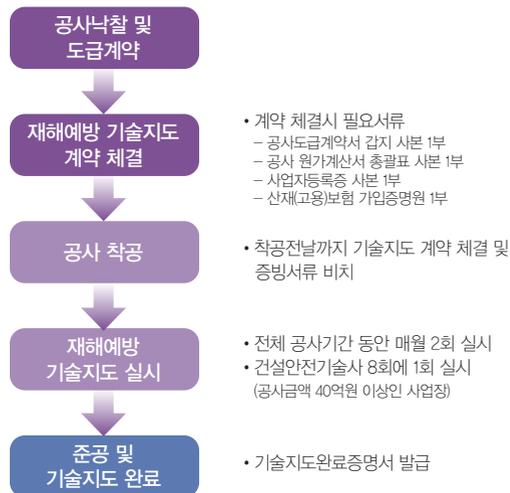
• 기술지도 대상 제외 사업장

-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보고서를 제출)
-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 기술지도 계약 체결시기 및 방법

- (1) 공사착공 전달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 체결
- (2) 기술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 주관

• 기술지도 진행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항 목	구 분	주요 내용	시행일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개정	• 발주자가 기술지도 계약 체결	2022.08.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개정	• 기술지도 계약 시 전산시스템(K2B)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 사용 • 전기, 통신, 소방분야 기술지도 별도	2021.11.19.

2.1.16 신규현장 안전기술지도 참석

본격적인 공사 진행 전 선제적인 안전기술지도를 시행하고 착공 초기부터 안전의식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 이행 및 확인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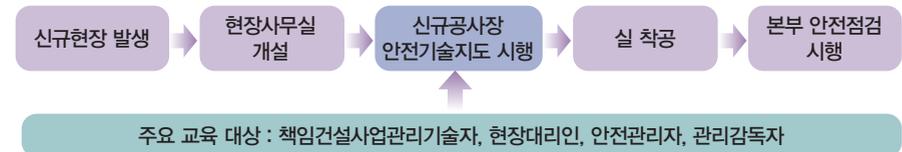
- 본부 안전관리과의 신규공사장 안전기술지도 교육 참여

■ 관련 규정

- 도기본 안전관리 방침

■ 참고 사항

- 안전기술지도 flow



■ 교육 내용

안전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안전 관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점검 실시 시기, 안전관리비, 건설공사장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등 총 10개 항목</li> </ul> </li> <li>•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건설안전 관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칙 및 과태료 현황,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및 교육내용, 안전회의 규정 등,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자의 법적 직무, 안전점검 및 화재 감시자 배치기준, 개인 보호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등 총 15개 항목</li> </ul> </li> <li>• 안전보건경영체계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개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심리상담, 근로자 찾아가는 안전 교육,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건설공사장 재해 유형별 모의훈련,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안전관리비 현장 교육</li> </ul> </li> <li>• 책자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과 발간 책자 5종</li> <li>-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li> </ul> </li> <li>• 관련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안전 10계명, 건설공사장 중점 관리 20대 항목 등 13개 방침</li> </ul> </li> <li>• 안전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장의 모든 실태를 평가하여 위험공사장을 예측하고 사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li> </ul> </li> </ul>

2.1.17 체크리스트

순서	항 목	이행 및 확인 사항	확인 결과
2.1.1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자는 공사관리관에게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 및 발주자(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였는가?</li> </ul>	
2.1.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안전보건공단)에게 제출하였는가?</li> <li>•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결과가 부적정일 경우 재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였는가?</li> <li>•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결과가 조건부적정일 경우 조건부 사항에 대해 보완하고 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안전보건공단)에 가입하여 해당 자료를 등록하였는가?</li> </ul>	
2.1.3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변경 및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자는 공사관리관이 제공한 설계안전성 검토 및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정보를 확인하였는가?</li> <li>•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건설사업관리기술자) 하였는가?</li> <li>• 공사 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가시설변경에 대한 사항을 추가 제출(건설사업관리기술자) 하였는가?</li> <li>• 안전관리계획서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에 등록하였는가?</li> <li>• 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조건부적정일 경우 보완사항을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에 등록하였는가?</li> <li>•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서면보고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보완 조치하였는가?</li> <li>• 시공자는 작업공중에 따라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종 착수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고 작업 현장에 비치하였는가?</li> <li>• 가설구조물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 하였는가?</li> </ul>	
2.1.4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였는가?</li> <li>•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이 아닌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보완 등 필요한 조치 후 제출하였는가?</li> </ul>	
2.1.5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자는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는가?</li> </ul>	
2.1.6	안전·보건관리체제(조직 구성)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자는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참여자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총괄 감독하기 위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였는가?</li> <li>• 시공자는 하수급인(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조직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및 권한과 책임이 명시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문서화(업무분장표) 하였는가?</li> </ul>	

순서	항 목	이행 및 확인 사항	확인 결과
2.1.7	안전문서 관리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 시공자는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 계약문서 등을 외부로 유출시 발주자에 승인요청 하는가?	
2.1.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요청 및 계약 체결, 통보	•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요청하였는가?	
		• 시공자는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통보 하였는가?	
2.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계획 작성	• 시공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계획을 작성 하였는가?	
2.1.10	안전관리비의 집행계획 확인	•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을 작성하였는가?	
2.1.11	공사손해보험 가입방식 개선	• 시공자는 공사손해보험 가입 여부를 통보하였는가?	
		• 공사손해보험 통합 가입에 대해 협조 하였는가?	
2.1.12	설계설명회 (Kick-off Meeting) 의무화 (안전감찰)	•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 주요 공정 시공계획 수립 시 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착수회의에 참여하였는가?	
2.1.13	직접시공 의무비율 및 대상공사 상향	• 시공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건설사업관리단에 통보하였는가?	
		• 시공자는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준수하는가?	
2.1.14	저가 하도급 심사대상 확대	• 발주자가 시행하는 저가 하수급인에 대한 심사에 협조하였는가?	
		• 발주자가 심사한 결과를 통해 수급인(시공자)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에 대해 협조(이행) 하였는가?	
2.1.15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 지도 계약 체결	•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계약 체결 및 통보하였는가?	
2.1.16	신규현장 안전기술지도 참석	• 본부 안전관리과 신규공사장 안전기술지도 교육에 참여하는가?	

## 2.2 시공단계

### 2.2.1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해당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시공을 감독 하는 발주자 주도의 선제적 재해예방관리체계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 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
-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
  - ①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 보건 조치 이행계획
  -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 ④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공사담당)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 시공자(공사담당)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계획 변경 및 승인 요청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

### 2.2.2 안전관리 추진실적 및 안전관리 결과 보고

시공자는 매월 또는 매분기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는 매월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 시공자는 매 분기별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및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

#### ■ 관련 규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7조 (일반행정업무)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5조 (안전관리)

## ■ 참고 사항

구분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안전관리 결과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관리 활동</li> <li>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관리 조직표</li> <li>안전보건관리체제</li> <li>재해발생 현황</li> <li>안전교육 실적표</li> <li>산재요양 신청서 (사본)</li> <li>그 밖에 필요한 서류</li> </ul>
제출시기	• 매월	• 분기
적용법령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7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5조

### 2.2.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 중 계획서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건설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위험요인을 사전 조사를 통해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으로 작성되는 문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설치하고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를 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적정 이행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주요사항 변경 시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
- 매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
- 대형사고 위험작업 시기를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
- 주요 가설구조물 공법 변경 시 계획서 이력관리표 작성
- 관리책임자 변경 시 계획서 내용 인계·인수 확인서 작성, 비치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제출서류 등)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5조 (안전관리)

### 2.2.4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

- 안전한 시공과 공사목적물의 안전, 공사장 주변의 안전을 위해 착공 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 승인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공사담당)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이행 및 변경 요청
-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
- 발주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함께하는 정기회의에 참여(안전관리계획 이행, 안전관리비 집행 실태 확인, 공중별 위험요소와 저감대책 발굴, 보완 등)
- 협의체 구성 및 운영(수급인대표자, 하수급인대표자)
- 안전점검 이행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실적 보고
- 안전교육 이행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실적 보고
-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 협의,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보고
- 월간 안전관리비 및 실적 보고

####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9조 (공사시행 단계)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5조 (안전관리)

### 2.2.5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비용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안전담당)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
- 시공자(안전담당)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정기 보고(월간, 분기)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3호)

## 2.2.6 안전관리비의 집행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정기 안전점검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을 말함.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공사담당)는 분기별 안전관리비 사용현황을 공사 진척에 따라 사용
- 시공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 사업관리기술자에게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

###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안전관리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 2.2.7 안전점검의 실시

공사 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말함.

-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안전점검의 종류 :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점검의 종류 : 작업장의 순회점검,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작업 전 안전점검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는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 시공자(공사담당)는 자체 및 정기안전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매일 공종별로 자체안전점검 실시(기록 및 조치 포함)
- 시공자(공사담당)는 자체안전점검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
- 시공자(공사담당)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에 의뢰하여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종합정보망)
-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있는 경우 정밀안전점검 실시

- 준공 전에 초기점검 실시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실시(공사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경우)
- 시공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작성하여 제출한 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신속히 보완, 조치, 확인하고 그 기록을 보관
- 시공자는 공종별 정기안전점검에 의해 시설물의 치명적인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정밀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
- 안전점검의 결과분석 및 평가 실시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 및 기록
- 노사가 참여하는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 및 기록

###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 (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별표7)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지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70호)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0조 (안전점검의 계획수립)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 (정기안전점검의 실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1조 (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 참고 사항

•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

건설공사 종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교량		가시설 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 전)	하부공사 시공 시	상부공사 시공 시	-	-
터널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 시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 시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 공사 중기단계 시공 시	-	-
댐	콘크리트댐	유수전환시설 공사 시공 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 시	댐 축조공사 시공 시(하상 기초 완료 후)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 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 시
	필댐	유수전환시설 공사 시공 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 시	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 시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 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 시
하천	수문	가시설 공사 완료시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공 전)	되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 시	-	-	-
	제방	하천바닥 파기, 누수방지, 연약 지반 보강, 기초 처리공사 완료시	본체 및 비탈면 흙쌓기 공사 시공 시	-	-	-
하구둑		배수갑문 공사 중	제체 공사 중	-	-	-
상하수도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 펌프장 하수처리장	가시설 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 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 시	구조체 공사 말기단계 시공 시	-	-
	상수도 관로	총 공정의 초·중기 단계시공 시	총 공정의 말기단계 시공 시	-	-	-
항만	계류시설	기초공사 및 사석공사 시공 시	제작 및 거치 공사, 항타 공사 시공 시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공 시	속채움 및 뒹채움 공사, 매립공사 시공 시	-
	외곽시설 (갑문, 방파제호안)	가시설 공사 및 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 시	제작 및 거치 공사 시공 시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공 시	속채움 및 뒹채움 공사 시공 시	-
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 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 시	구조체 공사 말기단계 시공 시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 공정의 초·중기 단계 시공 시	총 공정의 말기단계 시공 시	-	-	-
지하차도, 지하상가, 복개구조물		토공사 시공 시	총 공정의 중기단계 시공 시	총 공정의 말기단계 시공 시	-	-

건설공사 종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도로·철도·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옹벽	가시설 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 전)	구조체공사 시공 시	-	-	-
	절토 사면	발파 및 굴착 시공 시	비탈면 보호공사 시공 시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 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 전)	되메우기 완료 후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 공정의 초·중기 단계 시공 시	총 공정의 말기단계 시공 시	-	-	-

건설공사 종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건설 기계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 시	천공 작업 말기단계 시	-	-	-
	항타 및 항발기	항타·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항발 작업 시	항타·항발작업 말기단계 시	-	-	-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설치작업 시	타워크레인 인상 시 마다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시	-	-
가설 구조물 (시행령 제101조의 2) 가설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	-	-
	작업발판일체형 거푸집	최초 설치 완료 시	설치 말기단계 시	-	-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등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	-
	터널 지보공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 시	지보공 설치 말기 단계 시	-	-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 시	-	-	-
	브라켓 비계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브라켓 비계 설치 시	-	-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 시	-	-	-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	최초 설치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 시	-	-	-
	현장 조립 복합가설 구조물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 시	-	-	-

※ 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점검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점검 목적	공사 중에 설비의 근원적 안전 확보를 위해 근로자의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안전조직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	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공사목적물의 결함성을 발견하는 수단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li> <li>•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li> <li>•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li> </ul>
안전점검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장 순회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일 1회 이상</li> <li>- 안전보건총괄책임자</li> </ul> </li> <li>•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개월에 1회 이상</li> <li>-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외 근로자 각 1명</li> </ul> </li> <li>• 작업 전 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업무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li> </ul> </li> <li>• 안전·보건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중대재해 발생사업장</li> <li>②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li> <li>③ 추락, 폭발,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안전점검(일일, 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공종별 육안점검으로 실시</li> </ul> </li> <li>• 정기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를 기준으로 실시</li> </ul> </li> <li>• 정밀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li> </ul> </li> <li>• 초기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 (시특법 1종, 2종 시설물)</li> </ul> </li> <li>•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li> </ul> </li> </ul>

•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관련, 별표3)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li> <li>나. 드레인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li> <li>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li> <li>라. 언로드밸브(unloading valve)의 기능</li> <li>마. 윤활유의 상태</li> <li>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li> <li>사.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li> </ul>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li> <li>나.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li> <li>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li> </ul>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li> <li>나.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li> <li>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li> </ul>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li> <li>나.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li> </ul>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방호장치·브레이크의 기능</li> <li>나. 와이어로프·슬링와이어(sling wire) 등의 상태</li> </ul>
양중기의 와이어로프·달기체인·섬유로프·섬유벨트 또는 훅·샤클·링 등의 철구(이하 "와이어 로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고리 걸이작업을 할 때	와이어로프 등의 이상 유무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li> <li>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li> <li>다. 바퀴의 이상 유무</li> <li>라.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li> </ul>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li> <li>나.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li> <li>다.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li> <li>라.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li> <li>마.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훅·균열·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li> </ul>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용접·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 작업을 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여부</li> <li>나.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여부</li> <li>다.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여부</li> <li>라.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조치 여부</li> <li>마.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li> </ul>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가.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나.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다. 카바이드·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라. 그밖에 하역운반기계 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훅이 붙어 있는 슬링·와이어슬링 등이 매달린 상태 나. 슬링·와이어슬링 등의 상태(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 수시로 점검)

• 안전점검의 종류(건설기술진흥법)

구분	주요 내용	
자체안전점검	실시자	협업체, 시공자
	시기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공종별 실시
	내용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해 시행 - 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포함하여 위험도 관리, 협업체 회의, 일상안전교육과 연계성을 확보, 유지하면서 점검 실시 - 양식은 시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작성, 활용
정기안전점검	실시자	발주자가 지정한 건설안전 점검기관
	시기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
	내용	•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품질 및 시공 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
정밀안전점검	실시자	발주자가 지정한 건설안전 점검기관
	시기	정기안전점검결과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내용	• 물리적, 기능적 결함 현황 및 원인 분석, 구조안전 여부 • 보수, 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대책
초기안전점검	실시자	발주자가 지정한 건설안전 점검기관
	시기	준공직전
	내용	시특법에 규정한 1종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 현장으로 정기 안전점검 수준이상 점검
공사재개점검	실시자	발주자 판단
	시기	공사재개 전
	내용	시특법에 규정한 1종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로서 1년 이상 방치한 현장으로 자체점검 또는 정기점검 수준 이상

## 2.2.8 안전교육의 실시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공법의 이해, 세부 시공순서 및 안전시공 절차 이해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
  - (1) 교육의 필요성 발견
  - (2) 교육대상, 내용 및 방법 결정
  - (3) 교육준비
  - (4) 교육실시
  - (5) 교육평가
- 시공자(공사담당)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에 따른 안전교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실시
  - (1) 안전사고에 관한 통계 및 정보
  -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5) 생산 공정 및 공법에 관한 사항
  - (6)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 주의사항
  - (7) 관련 법규에 관한 사항
-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 실시
  - (1)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분기 6시간 이상)
  - (2)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반기 8시간 이상)
  - (3)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특별교육 대상공종별 2시간 이상)
  -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5) 작업변경 시 교육 실시
  -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7)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
- 시공자(공사담당)는 매일 공사 착수 전 안전교육 실시
- 근로자의 재해예방 및 건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정기교육 실시(월1회)
- 시공자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건설 사업관리기술자에게 안전교육 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준공 후 안전 교육의 결과를 서면으로 발주청에 제출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시행령 제103조(안전교육)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5조(안전관리)

### ■ 참고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교육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법적 근거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시행령 제103조(안전교육)
안전교육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안전보건교육(근로자, 관리감독자)</li> <li>•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li> <li>• 특별안전보건교육</li> <li>•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li> <li>•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li> <li>•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li> <li>•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교육 :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일작업의 공법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시공순서와 시공 기술상 주의사항 포함</li> <li>-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 관리</li> <li>- 공사준공 후 발주청에 제출</li> </ul> </li> </ul>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관련, 별표4)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28조 관련, 별표4)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판매업무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1주일 초과 1개월이하 기간제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인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5 제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2.2.9 정기적인 회의 이행 및 참여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함께 공사시행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안전관리비집행실태 등을 확인하고 공종별 위험요소와 그 저감대책을 발굴 및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는 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정기적인 회의에 참여
  -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보고
  - 안전관리비 집행실태 보고
  - 공종별 위험요소와 그 저감대책을 발굴하기 위한 위험성평가(회의) 이행 보고
-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월 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분기 1회) 실시
- 노사 협의체(2월 1회)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노사 협의체는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갈음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협의체 회의는 별도로 시행하여야 함.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9조 (공사시행 단계)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2조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 참고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법적 근거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9조
회의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협의체
주기	3개월 1회	2개월 1회	매월 1회	매월 1회
구성	노사 동수 구성	노사 동수 구성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심의·의결 협의사항	아래표 참조	아래표 참조	아래표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안전관리비 집행 실태 확인</li> <li>• 공종별 위험요소와 그 저감대책을 발굴 및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 확인</li> </ul>
비고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의 방법 및 시기는 발주청이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 회의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 협의체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대상	공사금액 120억 이상 (토목 150억 이상)	공사금액 120억 이상 (토목 150억 이상)	도급사업
구성	1) 근로자위원 ① 근로자대표 1인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인 ③ 근로자 대표가 지명한 9인 (②의 위원을 포함 하여 9인) 2) 사용자위원 ① 해당 사업의 대표 ② 안전관리자 ③ 보건관리자 ④ 산업보건의(해당 시) ⑤ 해당사업의 대표가 지명한 9인 이내의 사업장 부서의 장	1) 근로자위원 ① 근로자대표 1인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인 ③ 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의 각 근로자 대표 2) 사용자위원 ①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② 안전관리자 1인 ③ 보건관리자 1인 ④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회의 : 3개월 마다</li> <li>•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회의 : 2개월 마다</li> <li>•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li> </ul>	• 매월 1회 이상

구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 협의체
심의 의결 사항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 사항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 방법 2)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사항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 및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비고	•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협의체 구성 및 운영(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구분	협의체 운영계획	정기적인 회의 병행할 경우
법적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9조 (공사시행 단계)
구성	<input type="checkbox"/> 안전관리담당자 <input type="checkbox"/> 수급인과 하수급인	<input type="checkbox"/> 공사관리관 <input type="checkbox"/>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input type="checkbox"/> 안전총괄책임자 <input type="checkbox"/> 안전관리책임자
운영	<input type="checkbox"/>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 회의 결과 기록, 보존	
협의내용	<input type="checkbox"/>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보고 <input type="checkbox"/> 안전관리비 집행실태 보고 <input type="checkbox"/> 공중별 위험요소와 그 저감대책을 발굴하기 위한 위험성평가(회의) 이행 보고

## 2.2.10 안전사고 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

###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등 조치 결과 등 확인 제출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중대재해가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
  - 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② 조치 및 전망
  - ③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시간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자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
  - ①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현장주소)
  - ② 사고발생 경위
  - ③ 피해사항(사망자수, 부상자수)
  - ④ 공사명
  - ⑤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건설사고 통계자료 작성, 제출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근로자대표 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산업재해 사고보고서 기록·보존(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재해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한 요약신청서 사본)

###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61조(사고조사 등)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5조(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 참고 사항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법적 근거	시행규칙 제3조 (중대재해의 범위) 시행규칙 제67조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시행규칙 제7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시행령 제105조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범위	◎ 중대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건설사고 •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보고	◎ 산업재해 발생보고 • 중대재해 즉시 (지체없이) -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조치 및 전망 -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재해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1개월 이내 • 보고 : 관할지방노동관서	◎ 건설사고 통보 • 발생사실 인지 즉시 -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사고발생 경위 - 조치사항 - 향후 조치계획 • 통보 : 발주처, 인허가기관

#### 2.2.11 수시(상시)· 정기(상시 위험성 평가시 정기 위험성평가 같음)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행동,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등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최초 위험성평가 : 공사현장의 모든 공중에 대해 해당 공종 시작 전에 실시
- 수시 위험성평가 : 2주 1회 또는 실시할 사유가 발생할 때 주기와 시기에 상관없이 실시
- 정기 위험성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상시 위험성평가 : 일, 주, 월 사고예방활동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는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 주기적인 위험성평가 회의 실시
- 안전교육, TBM활동 등을 통한 위험성평가 내용 전파
- 위험성평가의 중점관리사항에 대한 점검 실시 및 조치
- 정기 위험성평가는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위험성평가의 결과 및 조치사항 기록, 3년간 보존
  - ①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② 위험성 결정의 내용
  - ③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④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 ⑤ 그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업무 처리규칙

#### 2.2.12 안전·보건관리체제(조직 구성) 운영

건설공사장 규모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 조직은 안전보건경영 실행과 구성원은 법에서 정한 책임, 직무·권한 및 의무를 준수하여 실행

-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 ① 대상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순위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
  - ② 대상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이사회 보고 및 승인) 및 이행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는 안전보건관리조직 유지 관리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시공자는 매년 안전보건계획 수립(이사회 보고 및 승인) 및 이행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24조 (안전보건관리체제)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2조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1조 (공사착수 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9조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5조 (안전관리)

• 안전보건관계자의 직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구분	직무내용	구분	직무내용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③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⑤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안전 총괄책임자	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②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 감독 ③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④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⑤ 협의체의 운영 ⑥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⑦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자체안전점검"이라 한다)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⑧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휘·감독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⑨ 그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 관리책임자	①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서의 검토·이행 ②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③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④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⑤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⑥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관리감독자	① 당해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안전관리 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구분	직무내용	구분	직무내용
관리감독자	②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 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③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④ 당해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⑤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 관리자 등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⑥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 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⑦ 그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 담당자	①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②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③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안전관리자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③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④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⑤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⑥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⑧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⑨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⑩ 그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2.2.13 안전관리담당자 업무의 협조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함.

- ①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 ②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 ③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 ④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안전관리담당자가 위와 같은 작업현장에 입회하여 실시하는 지도, 감독에 대한 시공자 안전관리자의 협조
-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수행
- 시공자는 공사가 중지되는 현장에서 공사 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
- 자체 안전점검 결과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안전조치 이행
- 시공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즉시 보고

####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5조(안전관리)

### 2.2.14 안전문서 관리(설계도서 등 검토 업무)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는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외부로 유출시 발주자에게 승인요청

#### ■ 관련 규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1조(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 2.2.15 안전관리 수준 평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평가 기관이 총공사비(전기·소방·통신 공사비는 제외하되, 관급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다만 「국유재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채납 건설 공사는 제외한다)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

- ① 공기가 50%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 ② 영 제44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현장과 본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한한다)
  - ③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현장과 본사
- 공동도급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공동 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

#### ■ 이행 및 확인 사항

- 발주청 요구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 현장 평가에 대한 협조

#### ■ 관련 규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4장(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 2.2.16 일요일 건설공사 금지 및 주말·휴일작업계획서 제출

✓ 건설현장에서 주말, 휴일작업 시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 및 근로자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중대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건설현장 주말, 휴일작업 안전관리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주말·휴일 작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음.

- 적용대상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위험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 제출방법 :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위험작업을 주말, 휴일에 수행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 작성하여 제출
- 제 출 처 : 120억 이상 현장(관할 고용노동관서), 50억~120억 미만 현장(안전보건공단관할 지역본부/지사)
- 행정조치 : 고위험작업 위주로 작업계획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미제출 현장, 작성 항목 누락 현장, 관리지(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상주 여부, 단위작업별 안전조치 수준(조치 미흡) 등에 따라 불시 감독 실시

■ 이행 및 확인 사항

-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요일에 건설공사 시행 금지
- 주말, 휴일작업 계획서 제출
-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를 시행한 경우 사후 승인 요청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별표4 (사전조사 및 작업 계획서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2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 건설현장 주말·휴일작업 안전관리 강화조치 안내 (건설산재예방정책과-459)

2.2.17 상시 안전점검 체계 유지

- ✓ 정기 안전점검 시행(정기점검, 외부위원 합동점검, 불시점검 등)
- ✓ 안전사고 대비 모의훈련 시행
- ✓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 ✓ 안전사고 발생현장 관리 강화
- ✓ 관리감독 공백시간 관리(주말 승인 없이 작업하는지 여부 점검)

■ 이행 및 확인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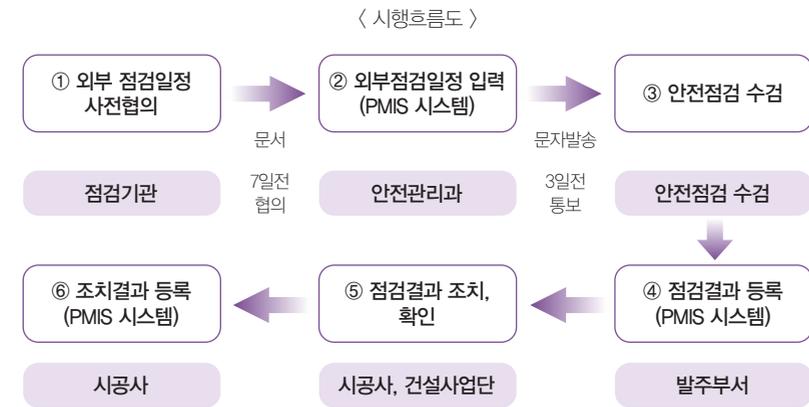
- 정기 안전점검 시행에 따른 점검결과 조치
  -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지침 등의 준수
  -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의 준수
- 일일 자체안전점검 실시 및 일지에 기록
- 공사관리관 현장 안전점검 시행 결과에 대한 조치
- 건설기계(카고크레인, 기중기, 천공기, 항타·항발기) 반입 전 점검사항 시정조치 및 조치 결과보고
- 연 3회 이상 모의훈련 추진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 위험공종 작업허가서 작성 및 승인 요청
- 사고보고서 작성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 재발방지대책을 작성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제출 및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이행
- 휴일작업계획 수립 및 승인 요청

■ 관련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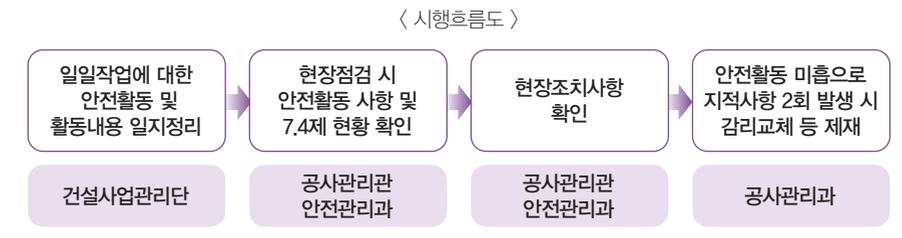
- 도기본 안전관리 방침

■ 참고 사항

(1) 정기 안전점검 시행(정기점검, 외부위원 합동점검, 불시점검)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① 분야별 (구조, 토질 및 기초, 품질, 안전분야) 외부 전문위원과 합동으로 월 안전점검 횟수를 한 현장에 1회 이상 실시하여 현장 안전관리 상태 강화
점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검토</li> <li>• 전문분야 위원 (구조, 토질, 안전, 품질분야)들을 적극 활용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설계 상세도, 공법적용현황 등 검토</li> <li>• 기타 안전관련 준수사항 점검</li> </ul>
시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 실시 (구조분야, 토질분야, 안전분야, 품질분야)</li> <li>• 안전관리과 1~2회/월.</li> </ul>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② 건설사업관리단 및 현장 안전관리자 일일점검 체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관리자들에게 안전대책 시행여부를 일일 점검하여 일지에 기록하게 하고 점검을 통해 상시 안전관리 강화</li> <li>• 안전관리과 및 공사담당자 현장 점검 시 감리일지 및 시행 여부 확인</li> </ul>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③ 공사관리관 One-day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현장 점검 피로도 감소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li> </ul>	
시 기	매월 1회 이상
점검방법	공사시행부서 자체 점검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 점검 시행 1회 이상
결과보고	시행 결과를 안전관리과에 제출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④ 건설기계 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관리과에서 건설기계 점검 계획을 총괄 수립하고 시설국 설비부, 도시철도국 설비부에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시행 및 점검결과 통보</li> </ul>	
대상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고빈도가 높고 점검을 통한 예방효과가 큰 건설기계 4종 집중관리</li> <li>건설기계 4종 : 카고크레인, 기중기, 천공기, 항타·항발기</li> </ul>
점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업계획서 작성, 해당 면허소지, 정기검사 수검여부 등 서류점검</li> <li>안전장치 불량, 구조부 균열등 건설기계 안전성 점검</li> <li>5년 이상 노후장비 반입 전 안전점검 실시여부 확인</li> <li>건설기계 저공해 조치가 장착되도록 안내 및 홍보</li> </ul>
점검횟수	연 2회 실시(상·하반기)
점검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인1조 운영 : 본부직원 1명, 외부전문가 1명</li> <li>본부직원 : 시설국 설비부, 도시철도국 설비부</li> <li>외부전문가 :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검사원 등</li> </ul>

(2) 안전사고 대비 모의 훈련 시행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사고피해 최소화 및 사고대처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공사장의 안전 관리 수준 및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li> </ul>	
시행시기	연 2회(장마철/동절기)
시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된 모의훈련 유형에 따라 현장상황에 적합하게 훈련일시, 방법, 유관기관 참여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 실시</li> <li>경찰,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교통 통제 및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유관기관(병원, 한전, 상수도, 도시가스 등)은 사전협의를 지양하고 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 체계, 시간 내 도착 및 임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사고대비 훈련 실시</li> <li>컨트롤타워(현장상황실)를 운영하고 보고체계 점검 및 미비사항 체크 하고 상황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li> <li>SNS를 활용한 실시간 사고보고 훈련 실시</li> </ul>
훈련유형	① 추락·낙하, ② 붕괴(가설구조물, 사면, 막장), ③ 지하매설물 파손 ④ 건설기계, ⑤ 화재폭발, ⑥ 감전 ※ 6개 사고유형 중 공사장별로 공종에 따른 가장 취약한 유형을 선택

(3) 위험작업 허가제 시행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고발생 위험성이 큰 공종에 대하여 사전에 현장 해당 공사 관계자들이 사전 예방활동을 수행하여 안전성 증진 및 해당 공사 관계자의 위험 공종에 대한 책임감 고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작업 허가제 승인 절차</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 작업 허가제 시행 대상 작업</li> </ul>	
구분	항 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성평가에서 결정된 최상위 위험 등급 중 1개 작업을 허가 대상을 필수로 지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성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 위험성평가 적용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마다 1개를 지정하여 관리</li> </ul> </li> <li>· 수시 위험성평가 적용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시평가 시기 마다 1개를 지정 하여 관리</li> </ul> </li> </ul> </li> </ul> </li> </ul>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설 구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설베트 설치 및 해체 작업</li> <li>공중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li> <li>터널 수직구 워킹타워 조립 및 해체 작업</li> <li>바브켓을 사용하는 흙막이 가시설 해체 작업</li> <li>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작업 (상승포함)</li> </ul> </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li> <li>항타 및 항발기 조립 및 해체 작업</li> <li>100톤 이상 이동식 크레인 조립 및 해체 작업</li> <li>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한 맨케이지 탑승 작업</li> </ul> </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소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달비계 사용 작업</li> <li>높이 4M 이상 가설방음벽 및 방음판 설치 및 해체 작업</li> </ul> </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기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 (반경 5m 이내 가연성물질 존재하는 장소)</li> <li>※가연성물질 : 단열재, 스티로폼, PVC, 유류, 종이, 합성수지, 목재 등</li> </ul> </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간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 포장 작업</li> </ul> </li> </ul>

(4) 안전사고 발생현장 관리강화 및 부실현장 제재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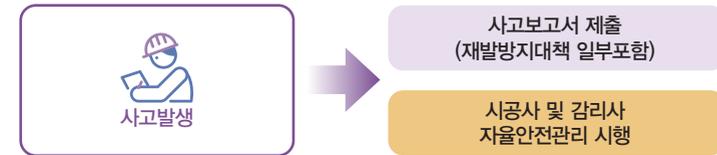
• 안전사고 발생현장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부실현장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로 안전문화 정착 유도

현황 및 문제점	재발방지대책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서에 첨부된 재발 방지대책을 형식적으로 수립하여 보고되고 있음
	이행상태점검	현장에서 수립한 재발방지대책은 시공사와 감리사의 자율안전관리체계로 별도의 확인이나 검토를 거치지 않고 있어 재해와 유사한 위험징후를 무시하고 방치 되는 경우 발생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실 적용성이 높은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도록 시행</li> <li>모든 공사장 사고 발생 후 재발 방지대책 이행상태 특별 점검 수행</li> </ul>	

- 안전관리 부실 현장 “강력한 제재”
  - 중점관리 20대 항목 1회 적발 시 현장 경고, 2회 적발 시 벌점위원회 상정(근로자 안전 10계명 포함)
  -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하여 부실현장 관리
    - ※ 공중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중 안전점검표에 반영(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 안전모, 안전대 착용 등 안전문화(1단계) 정착되어 가고 있어 “추락 및 전도” 사고 예방시설에 대한 집중관리
    - ⇒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과 함께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벌점위원회 상정
    - \* 경고 유효기간 : 안전 경각심 고취를 위해 현장별 최초 경고일로부터 1년간 유효

안전난간 미설치	전도방지시설 미설치
2m이상 추락위험 단부 (작업발판 및 구조물 개구부)	작업중 이동식비계(작업발판 기준 2단이상) 아웃트리거를 사용하는 건설기계

• 당초



• 개선



### 2.2.18 대형 붕괴 재해 대비 지도 점검 시행

- ✓ 강교 및 중량물 설치 및 해체 지도점검
- ✓ 거푸집동바리 콘크리트 타설 전 지도점검
- ✓ 흙막이가시설 굴착단계별 지도점검
- ✓ 비계 설치·해체 전 지도점검

■ 이행 및 확인 사항

- 공사관리관은 담당 현장의 지도점검 대상 여부 확인 후 지도점검 요청
  - 강교 및 중량물 설치 및 해체작업
  - 거푸집동바리 콘크리트 타설작업
    - ① 타설 높이 : H=4.2m 이상(최대높이) >> 타설량 : 건축 150㎡ 이상/일, 토목 300㎡ 이상/일
    - ② 타설 높이 : H=5m 이상(최대높이) >> 타설량과 무관
  - 흙막이가시설 작업(굴착 전, 굴착 중, 해체 전)
  - 비계 설치·해체 전 점검

■ 관련 규정

- 도기본 안전관리 방침

■ 참고 사항

(1) 강교 및 중량물 설치·해체 지도점검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교 등 중량물 설치 및 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장비 전도재해, 중량물 낙하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작업자 및 시민의 생명을 보호</li> </ul>	
점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량물 설치 해체 작업 전 건설현장의 사전지도점검 요청에 따라 사전점검 및 현장점검 시행</li> </ul>
주요 점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업계획서 내용 검토</li> <li>장비(크레인) 설치에 따른 제반사항 점검</li> <li>관계 근로자 작업계획 공유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li> <li>작업 시 중점관리사항 및 안전대책 수립 여부 등</li> </ul>
(2)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타설 전 지도점검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규모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 동바리를 외부전문가와 같이 점검 및 확인함으로써 대규모 붕괴사고 예방</li> </ul>	
점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설높이 : H=4.2m 이상(최대높이) &gt;&gt; 타설량 : 건축 150㎡ 이상/일, 토목 300㎡ 이상/일</li> </ul>
주요 점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푸집 동바리 설계도서 사전 검토, 거푸집 동바리 현장설치 상태 점검</li> <li>관계 근로자 작업계획 공유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li> <li>작업 시 중점관리사항 및 안전대책 수립 여부 등</li> </ul>

■ 참고 사항

(3) 흙막이가시설 굴착단계별 지도점검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흙막이가시설의 굴착단계(굴착 전, 굴착 중, 해체 전)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점검을 시행하여 흙막이가시설 및 옹벽 등의 대형 붕괴사고 예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흙막이가시설 굴착 전, 굴착 중, 해체 전에 대한 지도점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굴착 전 :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공계획서, 계획계획 등의 적절성에 대한 지도 점검</li> <li>굴착 중 : 설계도서와 시공순서 및 설치상태의 적정성, 안전성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굴착 전, 해체 전과 다르게 안전점검 시 수행</li> <li>해체 전 : 해체 중 안전검토, 해체 시 발생하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 등 지도점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흙막이가시설 굴착단계별 지도점검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굴착 전과 해체 전 사전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로 단계 진행 시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에 준하여 제재</li> </ul> </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굴착공사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점을 사전지도점검과 안전점검을 통해 예방하여 흙막이가시설 안전성 확보</li> </ul>

(4) 비계 설치·해체 전 지도점검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계의 설치 해체 전 지도점검을 시행하여 비계로 인한 대형 붕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li> </ul>																
대상현장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폐쇄형</th> <th>개방형</th> <th>터널형</th> <th>공중비계</th> </tr> </thead> <tbody> <tr> <td>형태</td> <td>'ㄱ', 'ㄷ'형</td> <td>'L', '—'형</td> <td>터널내</td> <td>교량하부 등</td> </tr> <tr> <td>기준 (높이)</td> <td>15m 이상</td> <td>10m 이상</td> <td>강관 및 시스템비계 4m 이상</td> <td>편도 3차로 이상 횡단</td> </tr> </tbody> </table>	구분	폐쇄형	개방형	터널형	공중비계	형태	'ㄱ', 'ㄷ'형	'L', '—'형	터널내	교량하부 등	기준 (높이)	15m 이상	10m 이상	강관 및 시스템비계 4m 이상	편도 3차로 이상 횡단
	구분	폐쇄형	개방형	터널형	공중비계											
형태	'ㄱ', 'ㄷ'형	'L', '—'형	터널내	교량하부 등												
기준 (높이)	15m 이상	10m 이상	강관 및 시스템비계 4m 이상	편도 3차로 이상 횡단												
주요 점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치 전 :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공계획서 사전 지도점검</li> <li>시공 중 : 변형, 침하 등 위험요인 발생시 현장 요청에 의한 컨설팅</li> <li>해체 전 : 해체 중 안전 검토, 해체 시 발생하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 등</li> </ul>															

## 2.2.19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

- ✓ 공사관계자 안전직무 역량강화 교육 시행
- ✓ 건설 근로자 및 외국인 노동자 찾아가는 안전교육 시행
- ✓ 안전한 현장 만들기 3I3I 법칙 교육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공사관리관 안전직무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 (상, 하반기 2회)
- 안전관리과에서 교육 시행 요청 시 장소 제공 및 근로자 참여 등 업무 협조
- “근로자 안전 10계명”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시행여부 확인

### ■ 관련 규정

- 도기본 안전관리 방침

### ■ 참고 사항

(1) 공사관계자 안전직무 역량강화 교육 시행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 공사관리자, 감리자, 시공사의 안전직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 및 직무지식을 교육 함으로써 안전수준 향상과 직무역량 제고
교육일정	• 총 2회(상, 하반기 교육)
교육대상	•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사 공사관계자
교육내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위험성평가, 흠막이가시실에 관한 안전교육 • 본부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및 현장 안전관리 컨설팅 설명 • 발주자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및 동영상 기록관리 • 안전공학개론과 휴먼에러 사례, 건설공사장의 주요 재해 사례 등



직무역량 강화교육



공사참여자 수준평가

### ■ 직무능력 수준평가

- 대상 / 평가 : 교육참여자 전원 / 건설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수준평가 합격기준 : 70점 이상

(2) 건설근로자 찾아가는 안전교육 시행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 본부 건설공사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 하여, 본부 건설현장에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교육대상	• 본부 건설공사장에 참여하는 모든 작업자
교육방법	• 본부 안전분야 위원 등 전문가사 활용, 1인 1현장 찾아가는 안전교육 시행
교육시기	• 1월~12월
교육내용	• 모든 작업자가 알기 쉽고 몸에 익힐 수 있는 내용의 건설안전 교육 • 안전사고 동영상(사례 및 예방)등 시각자료를 활용한 사고사례 중심 안전교육
기대효과	• 모든 작업자가 본부 주관 안전교육에 참여, 현장 작업자 안전의식 제고 • 최근 사고사례 전파 및 현장 중심 예방교육으로 안전사고 최소화

(3) 외국인 노동자 찾아가는 안전교육 시행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 본부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사와 통역원이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 및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
교육일정	• 총 2회 (상, 하반기 교육 - 반기에 1회)
교육대상	•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근로자
강사 및 통역원	• 전문가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외국인 근로자 전문가사 (지원) • 통역원 : 건설안전 통역 및 외국인 상담 유경력자
교육내용	• 건설현장 안전의 이해, 안전한 작업방법 및 사고 예방대책 • 외국인 근로자의 기초 안전교육 및 현장 위험요소에 대한 대처방안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콘텐츠 활용	•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시 모국어로 제작된 안전교육 영상을 활용하여 교육 • 대상국가 :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 안전교육 동영상 - 영상시간 : 1편당 2분 내외 - 제작편수 : 안전모 미착용에 의한 재해사례 등 총 21편 - 영상내용 : 재해발생 사례, 안전수칙 준수사항 등



가설전선

1. 가설전선 사용 전 필수 선택 확인!
2. 가설사에는 가설전선 소프트웨어 사용!
3. 가설전선은 합선선이 내장된 것 사용!

### 2.2.20 “근로자 안전 10계명” 일상화 추진

근로자 스스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 안전 10계명”과 더불어 “안전한 현장 만들기 3!3!3!” 법칙 일상화

- 이행 및 확인 사항
  - 현장 관계자 “근로자 안전 10계명” 교육 및 준수여부 확인
- 관련 규정
  - 도기본 안전관리 방침

#### ■ 참고 사항

착공부터 준공까지 “근로자 안전 10계명”일상화 추진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장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 준수 등에 의한 원시적 사고로, “근로자 안전 10계명”을 선정하여 현장 근로자가 뼈 속까지 각인되도록 생활화하여 안전 사고예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관계자 지속적 교육 실시</li> <li>• 안전교육 교재에 게시하여 홍보 활용</li> <li>• 현장에 투입되는 순간 “근로자 안전 10계명”을 볼 수 있도록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시장소 : 작업장 입구, 안전교육장, 식당, 사무실, 근로자 이동 통로 등 근로자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장소</li> <li>- 작업반장은 작업 개시 전 근로자 안전장구 지참여부 확인 및 근로자 안전 10계명 환기 후 작업 개시</li> </ul> </li> <li>• 근로자 안전 10계명 위반자는 당일 작업에서 배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안전 10계명” 교육 및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안전 10계명”문안 및 설치사례</li> </ul>	



근로자 안전 10계명 포스터



현장 설치 사례

- 건설기계 10대 안전 수칙 홍보 및 점검 시행

### 2.2.21 위험시기 및 재난대비 특별 안전점검 시행

- ✓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특별안전점검 시행
- ✓ 태풍, 폭염, 한파 대비 안전, 품질 점검 시행

- 이행 및 확인 사항
  - 수방대비 수방계획 수립 이행
  - 태풍대비 수방계획 수립 이행
  - 폭염대비 혹서기대책 수립 이행
  - 해빙기 관련 안전대책 수립 이행
  - 코로나19 예방대책 시행

- 관련 규정
  - 도기본 안전관리 방침

#### ■ 참고 사항

위험시기 및 재난대비 특별 안전점검 시행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특별안전점검 시행</li> <li>• 태풍, 폭염, 한파 대비 안전, 품질 점검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방대비 특별점검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수해 계획 수립, 자재, 장비 보관 및 이상 유무</li> <li>• 풍수해 취약 정비 방안 수립</li> <li>• 유수 흐름 지장물 제거 및 배수처리 기능 확보</li> <li>•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배수로, 침사지, 사면 보호시설 등 설치 현황</li> <li>• 터널 갱구 등 절개지 사면 안전 및 토류벽 안전조치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풍대비 공사장 특별점검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공, 가설구조물, 터널 막장, 사면 절개지, 흙막이가시설 등 위험요인 관리실태</li> <li>• 태풍, 폭우대비 공사장 안전관리실태</li> <li>• 공사장 화재 대비 소화설비 설치 및 관리실태</li> </ul>



장비 전도방지 현황점검



배수로 정비 현황점검



사면 보호조치 현황점검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폭염대비 공사장 특별점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확인</li> <li>점심시간 등을 이용한 낮잠 및 매 시간마다 15분 휴식시간 유지</li> <li>폭염경보 발령 시 한낮 시간대(12:00~14:00) 작업 중지 또는 실외작업 일시중단 여부</li> </ul>
해빙기 관련 특별점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빙기 대비 터파기 공사장 등 흠막이가시설 공사 및 경사지에 대한 안전조치 확인, 안전시설 설치여부, 안전점검 실시여부 등 관리실태 점검</li> </ul>
코로나19 예방대책 시행 여부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스크 지급, 발열 체크여부 등 코로나19 예방 상태</li> </ul>

### 2.2.22 현장 소통 및 최신자료 공유

-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 PMIS)내 "안전 Q&A 코너" 운영
-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 PMIS) 안전자료방 운영

- 이행 및 확인 사항
  - 안전 Q&A 자료방 활용
- 관련 규정
  - 도기본 안전관리 방침
- 참고 사항

(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내 "안전 Q&A 코너" 운영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참여자들의 안전관련 지식에 대한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도움 및 소통</li> </ul>
운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안전관리 항목에 "안전 Q&amp;A 코너" 운영</li> <li>안전 Q&amp;A에 올라온 질문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에서 전문지식과 안전 관련 규정을 발췌하여 5일 이내에 답변 처리</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과 안전관리에 대한 소통 강화</li> <li>공사관계자의 안전관리 역량강화</li> <li>전문가 집단의 전문지식 적극 활용 등</li> </ul>

(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내 "안전자료방" 운영	
세부 추진사항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관리과에서 수집된 최신 안전관련 자료 및 안전관련 방침을 건설공사 관계자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안전자료방 운영</li> </ul>
운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안전관리 항목에 "안전자료방" 코너 운영</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신 안전자료 및 안전관련 지침서를 수시로 확인 가능</li> </ul>

### 2.2.23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강화(안전감찰)

- ✓ 시공계획서에 안전관리계획을 현장여건에 맞게 작성·승인하고, 근로자·시설물 안전 대책, 수해예방, 재난대책 등을 별도 항목으로 검토 강화하도록 한 대책
- ✓ 감찰 결과, 공종별 근로자·시설물 안전대책 수립이 미흡하고, 수해예방, 재난대책 등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행 및 확인 사항 실행 강화 필요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단계별 안전성 강화대책 수립 이행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서 작성
  - 공종별 근로자·시설물 안전대책 수립
  - 공종별 수해예방, 재난대책 수립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작성 및 검토 내실화 방안보고 (도시철도설계부-7329)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설계도서의 작성 등)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1조 (시공계획 검토)

### 2.2.24 불법 하도급과 품폐기 근절(안전감찰)

- ✓ 다단계 불법 하도급과 품폐기(능률급) 고용방식에 따른 무리한 졸속공사로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 ✓ 감찰 결과, 대다수 현장에서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감리원의 확인과 현장내 홍보(포상금 지급 문구 포함 홍보물 게시 및 신고서 비치) 등의 대책이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속적으로 이행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불법 하도급과 품폐기 근절대책 수립 이행
- 현장내 홍보물 게시 (포상금 지급 문구 게시판에 게시 및 신고서 비치 등)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불법 하도급과 품폐기 근절대책 보고 (토목부-20037)

### 2.2.25 안전조회(Tool Box Meeting)시 5RP 제도 시행(안전감찰)

- ✓ 안전조회 후에 작업장 위치와 세부공종(토공,가시설 등)으로 나누고 작업그룹별·공종별로 편성하여 5RP(Risk Point)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내실있는 안전조회가 이루어지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 대책
- ✓ 감찰 결과, 별도의 5RP 작성없이 안전교육만 실시하거나, 외국인 근로자 전담 책임자 미지정, 외국인 근로자 교육 및 관리내용 월2회 발주청 미보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 TBM 및 위험요소 5RP 항목 재교육 미실시, 5RP 작업현장 게시판 미게시 등 전체적으로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안전대책의 지속적인 이행관리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5RP 제도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 선정, 교육, 현황판에 게시 및 보고 등 적정 운영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안전조회 시 5RP 실행계획(도철토목부-11594)

### 2.2.26 무자격기술자 퇴출 등 엄중조치(안전감찰)

- ✓ 건설공사 착수와 동시에 해당 공사의 공중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자격 미달자 현장근무, 면허대여자 허위 근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리원이 해당 현장의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요건 및 허위근무 여부에 대해 조사(정기·수시) 하고, 분기별로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한 대책
- ✓ 감찰 결과, 안전대책을 대부분 알지 못해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감찰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 점검을 할 때에, 건설기술자 배치현황 및 무자격기술자 근무 여부를 조사하고 분기별로 보고하는 대책이므로 지속 이행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건설기술자 자격기준 입찰안내서에 따라 적정 건설기술자 배치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무자격기술자 퇴출 등 엄중조치방안 세부실행계획(도철토목부-10335)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 2.2.27 신속하고 다양한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개선(안전감찰)

- ✓ 지하터널 등 특수공간에 대해 재난상황이 현장 끝선까지 전파되도록 설계에 반영(위치, 종류 등)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경보시설을 설치(시설물 인계 시까지)하여, 작동여부를 정기(매월)적으로 확인하고, 대피도면을 부착하는 등 재난상황 전파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 ✓ 공사관계자 등이 해당 대책을 알지 못해 설계도면 및 지하터널 등 특수공간 경보시설(위치, 종류 등 명시) 반영과 비상경보시설 작동여부 매월 점검, 대피도면 출입구 부착 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감찰 결과를 반영하여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개선대책의 지속적인 이행관리가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지하터널 등 특수공간 작업장에 비상경보시설 설치
- 비상경보시설 작동여부 매월 점검 실시 및 대피도면을 출입구에 부착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지하터널 등 특수공간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개선 실행계획 (도시철도 토목부-10335)

### 2.2.28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작성 보급(안전감찰)

- ✓ 서울시의 복잡한 공사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미흡 및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체계 미흡 사항 개선을 위해, 건설공종별 소규모 공사장과 외국인 근로자용 매뉴얼 발간, 비상시를 대비한 비상대응 모의훈련 시행(분기별 1회), 외국어 안내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 등을 위한 개선대책
- ✓ 일부 공사관계자 등이 해당 개선대책을 알지 못해 외국어(다국어) 안내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 대책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감찰 결과 확인됨에 따라, 본 대책의 적극적인 이행관리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건설공종별 소규모공사장과 외국인 근로자용 매뉴얼 비치 및 교육 시행
- 외국어 안내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보급 추진계획 (도시철도공무부-912)

### 2.2.29 주기적 안전교육 및 맞춤형 매뉴얼 작성 보급

- ✓ 본부에 적합한 안전관련 규정 및 세부지침 부재,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 정립 부재, 공사 관리관의 안전관리 역량 부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한 대책
- ✓ 2014년 3월 건설안전기본지침을 제정하고 2021.06.01. 개정작업을 완료하여 신규 현장 안전기술 지도 및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지침과 휴막이 가시설 계측관리 분석 관리지침 수립,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매뉴얼 전파, 연중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관리와 공사 관리관의 역량향상에 기대효과가 높으므로 본 대책의 지속적인 이행관리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안전관리과에서 실시하는 공사관계자 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
- 건설안전기본지침 및 안전사고 매뉴얼 등의 비치 및 활용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건설안전 기본지침 제정 및 활용계획 (안전관리과-299)

### 2.2.30 공사장 휴게실 설치 의무화 및 환경정돈(안전감찰)

- ✓ 휴게 공간 부족 등 근로자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근로자의 휴게 공간 설치 법제화 법률개정 건의 및 무질서한 작업도구, 자재 등 정리정돈과 안전사고 예방강화를 위한 대책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대다수 현장에서 수급인별 근로자에 대한 휴서기, 휴한기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휴게시설 설치 운영관리 상태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이행 관리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시행 2022. 8. 18.

-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이행 및 확인 사항

- 휴서기, 휴한기 공사장 휴게실 설치 운영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방재안전시설부-4236)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620호 제7조의2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 2.2.31 근로자 음주·흡연 관리방안 추진

- ✓ 건설현장 내 근로자가 음주상태에서 작업 시 불안정한 행동 유발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자 보호 및 산재사고 방지를 위해 근로자 음주·흡연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작업 전 모든 근로자에 대한 음주측정 및 교육실시, 별도의 구획된 흡연구역(소화기 비치) 설치 등을 위한 대책
- ✓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 운동의 일환으로 대부분 현장에서 상시 운영되고 있는 대책으로 상시 관리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근로자 음주·흡연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 작업 전 근로자 음주측정 및 교육 실시
- 지정된 흡연구역 설치 및 소화기 비치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로자 음주·흡연 관리방안(방재안전시설부-2481)

### 2.2.32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강화 및 하도급 계약 지원센터 개원

- ✓ 하도급 관련 제도는 대폭 보완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이행이 부진하여, 대금 미지급 및 불공정한 불법 저가하도급 계약 사례가 상존하는 등, 하도급관련 제도의 현장 정착이 미흡함에 따라,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 표준하도급계약서·하도급계약서 제출 등 서류 작성지원, 기타 법률 및 민원상담(신원보호 강화) 등을 위해, 서울시 하도급계약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발주부서의 월별 정기점검 등을 시행하는 대책
- ✓ 하도급계약이 있는 2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기관 자체점검, 대금e바로 시스템 점검,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하도급(관리)계획 및 직접시공 적정여부, 대금지급 적정여부, 부당특약 존재에 대해 연 2회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하도급 관련 제도의 정착을 위해 본 대책의 지속적인 이행 필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서울시 하도급계약 지원센터 설치 운영 안내
- 발주부서의 월별 정기점검에 대한 협조
- 발주청의 연 2회 하도급 실태점검에 대한 협조

#### ■ 관련 규정

- 도기본 51개 대책
- 공정한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하도급 호민관제 공약실천 계획(경영감사담당관-12168)

### 2.2.33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한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는 공사기간 단축 및 위험한 공법 적용 금지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로 공법 변경 시 계획 수립 및 승인 요청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2조 (기술검토)

### 2.2.34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 도급계약 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를 참조하여 공기연장 사유, 공기 연장 시 간접비(재료비·노무비, 보험료, 복리후생, 세금·공과금, 임대비 등) 부담주체 등을 명확화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실정보고 및 승인요청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 2.2.35 설계변경의 요청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 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③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함.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에 대한 실정보고 및 승인요청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설계변경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 (설계변경 요청 방법 등)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7조 (설계변경 관리)

2.2.36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회사 내 안전보건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문서를 말하며, 안전보건 관리는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직업병 예방, 건강 증진 등을 도모하는데 있음.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부작성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및 준수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 시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등 전파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제27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참고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사업의 종류	상시 근로자 수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상
(11) 상기 사업을 제외한 사업 (건설업 등)	100명 이상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1 총칙	①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③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①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④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⑤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① 안전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②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③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④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⑤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⑥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 등에 관한 사항 ⑦ 안전표지·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①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②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③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구분	세부 내용
5	<b>작업장 보건관리</b> ④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⑤ 보건표지·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b>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b> ① 질병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②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③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b>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b>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②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b>보칙</b> ①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보건 관련 제언 및 포상·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안전·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의 사항 ④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 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2.2.37 유해·위험 방지 조치

- ✓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

■ 이행 및 확인 사항

-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등 전파
- 안전보건표지(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외국어 표지판 포함)
- 설비·물질·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위험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이행
-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 이행
- 시공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이행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제39조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4호)

■ 참고 사항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1. 금지표지	101 출입금지	102 보행금지	103 차량통행금지	104 사용금지	105 탑승금지	106 금연
	107 화기금지	108 물체이동금지	2. 경고표지	201 인화성물질 경고	202 산화성물질 경고	203 폭발성물질 경고
205 부식성물질 경고	206 방사성물질 경고	207 고압전기 경고		208 매달린 물체 경고	209 낙하물 경고	210 고온 경고
212 몸균형 상실 경고	213 레이저광선 경고	214 발암성·변이 원성·생식 독성·전신 독성·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	215 위험장소 경고	3. 지시표지	301 보안경 착용	302 방독마스크 착용
303 방진마스크 착용	304 보안면 착용		305 안전모 착용		306 귀마개 착용	307 안전화 착용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구분	내용
안전조치	<p>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li> <li>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물질 등에 의한 위험</li> <li>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li> </ol> <p>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li> <li>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li> <li>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li> <li>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li> </ol>
보건조치	<p>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 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 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li> <li>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 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li> <li>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 장해</li> <li>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단말기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li> <li>5. 단순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li> <li>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건강장해</li> </ol>

2.2.38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 ✓ 안전인증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인증하는 절차 및 제도
- ✓ 자율안전확인신고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 안전검사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 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

- 안전인증(KCs 마크 획득) : 서면심사 → 기술능력·생산체계심사 → 제품심사
- 자율안전확인신고 : 신고 접수 → 제출서류 확인 → 증명서 교부

■ 이행 및 확인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실시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 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인증 여부 확인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구등에 대한 자율안전확인 신고여부 확인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 여부 확인 및 이행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방호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

■ 참고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방호조치
1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의 해당 기계기구</li> <li>① 작동 부분에 돌기부분이 있는 것</li> <li>② 동력전달부분 또는 속도조절부분이 있는 것</li> <li>③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li> <li>①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문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li> <li>②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li> <li>③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li> </ul>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안전검사의 차이점

구분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안전검사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자율안전확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설치 이전	구조 변경	대상기계	주기	특이사항	대상기계	특이사항
기계 및 설비		프레스	프레스	3년/2년			
		전단기 및 절곡기	전단기	3년/2년			
		크레인	크레인	3년/2년 (건설현장 6개월 마다)	정격하중 2톤미만 제외		
		리프트	리프트	3년/2년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압력용기	압력용기	3년/2년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제품 4년마다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롤러기	롤러기	3년/2년	밀폐형 구조 제외	혼합기	
		사출성형기	사출 성형기	3년/2년	형 체결력 294KN 미만 제외	파쇄기 또는 분쇄기	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고소작업대	고소 작업대	3년/2년	화물, 특수자동차에 탑재 한정	식품가공용 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

구분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안전검사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자율안전확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설치 이전	구조 변경	대상기계	주기	특이사항	대상기계	특이사항
기계 및 설비		곤돌라	곤돌라	3년/2년		공작기계	등근통, 대패 루타기, 띠틈, 모떼기기계만 해당
			국소배기장치	3년/2년	이동식 제외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	
			원심기	3년/2년	산업용만 해당	인쇄기	
			컨베이어	3년/2년		컨베이어	
방호 장치			산업용 로봇	3년/2년		산업용 로봇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 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교류 이크용접기용 자동전격 방지기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롤러기 급정지장치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연삭기 덮개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목재 가공용 등근통 반발 예방 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충돌·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보호구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구분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안전검사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자율안전확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설치 이전	구조 변경	대상기계	주기	특이사항	대상기계	특이사항
보호구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2.2.39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하고자 하는자는 MSDS를 작성, 비치 또는 게시하고, 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자는 MSDS를 함께 제공토록 하고 있음
- 이행 및 확인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조사에서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
  -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요령을 게시
  -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 부착(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기록 및 보존(교육시간, 내용 등)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 2.2.40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제출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 ①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114종), 금속류(24종), 산 및 알칼리류(17종),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기타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② 물리적 인자(2종) :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 ③ 분진(7종) : 광물성분진, 곡물 분진(Grain dusts), 면 분진(Cotton dusts), 목재 분진(Wood dusts), 석면 분진(Asbestos dusts; 1332-21-4 등), 용접 흄(Welding fume), 유리섬유(Glass fibers)
- 작업환경측정 시기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이후 6개월 주기로 실시
- 작업환경측정 실시방법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작업환경측정 실시
-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5년 동안 보존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
-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작업환경측정), 제26조 (작업환경측정기관), 제27조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8조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 2.2.4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건강검진 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 ①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109종), 금속류(20종), 산 및 알칼리류(8종),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기타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금속가공유
  - ② 물리적 인자(8종) : 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 ③ 분진(7종) : 곡물 분진(Grain dusts),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면 분진(Cotton dusts), 목재 분진(Wood dusts), 용접 흄(Welding fume), 유리 섬유(Glass fiber dusts), 석면 분진(Asbestos dusts; 1332-21-4 등)
  - ④ 야간작업(2종)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 이행 및 확인 사항

-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연 1회) 실시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실시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애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수시건강진단 실시
- 건강진단 결과를 기록하여 5년 동안 보존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5조~제210조

### ■ 참고 사항

- 근로자 건강진단

건강진단 종류	시기	대상
배치전건강진단	업무배치 전	대상 업무 배치 예정자

건강진단 종류	시기	대상
특수건강진단	기본주기 설정 및 단축할 수 있는 조건 명시	대상 유해인자 노출근로자 작업 전환자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시기 외에 작업관련 증상을 호소할 때	천식, 피부질환, 기타 건강장애 증상 호소자
임시건강진단	직업병 유소견자 다수 발생할 때	동일부서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비사무직(1년 1회), 사무직(2년 1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 •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2.2.42 근로시간 금지 또는 제한조치

- ✓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함.
- ✓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됨.

-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질병자의 근로금지 또는 제한조치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업에서 하는 작업(잠함 또는 잠수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근로금지(무자격자의 근로 제한)
- 사업주는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토록 조치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 (질병자 등의 취업 제한)

### ■ 참고 사항

- 질병자의 근로금지
  - ①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 ②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 ③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자로서 근로에 의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 ④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자
- 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 ① 유해물질에 중독된 자
  - ② 방사선 피폭자
  - ③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
  - ④ 결핵, 빈혈환자
  - ⑤ 알콜 중독자
  - ⑥ 감압증 환자(고기압에 의한 장애자)
  - ⑦ 관절염, 류마티스 환자
  - ⑧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자

### 2.2.43 체크리스트

순서	항 목	이행 및 확인 사항	확인 결과
2.2.1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이행하는가?</li> <li>• 시공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계획 변경 및 승인을 요청하는가?</li> </ul>	
2.2.2	안전관리 추진실적 및 안전관리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자는 매월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는가?</li> <li>• 시공자는 매 분기별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및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 조치하는가?</li> </ul>	
2.2.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적정하게 이행하는가?</li> <li>•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주요사항 변경 시 이력관리표를 작성하고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하는가?</li> <li>• 매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하는가?</li> <li>• 대형사고 위험작업 시기를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하는가?</li> <li>• 관리책임자 변경 시 계획서 내용 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 비치하는가?</li> </ul>	
2.2.4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 및 변경을 요청하는가?</li> <li>•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는가?</li> <li>• 발주자, 시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함께하는 정기 회의에 참여하는가?</li> <li>• 협의체 구성 및 운영(수급인 대표자, 하수급인 대표자)을 하는가?</li> <li>• 안전교육 이행 및 실적을 보고하는가?</li> <li>•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는가?</li> <li>•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협의,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를 작성하는가?</li> <li>•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 및 실적을 보고하는가?</li> </ul>	
2.2.5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는가?</li> <li>•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가?</li> </ul>	

순서	항 목	이행 및 확인 사항	확인 결과
2.2.6	안전관리비의 집행	• 시공자는 안전관리비 사용현황을 공사 진척에 따라 사용하는가?	
		•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안전관리비 사용 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가?	
2.2.7	안전점검의 실시	• 시공자는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가?	
		• 시공자(공사담당)는 자체 및 정기안전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매일 공종별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기록 및 조치 포함) 하는가?	
		• 시공자(공사담당)는 자체안전점검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하는가?	
		• 시공자(공사담당)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에 의뢰하여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를 제출(종합정보망) 하는가?	
		•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있는 경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가?	
		• 준공 전에 초기점검을 실시하는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실시(공사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경우) 하는가?	
		• 시공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작성하여 제출한 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신속히 보완조치, 확인하고 그 기록을 보관 하는가?	
		• 시공자는 공종별 정기안전점검에 의해 시설물의 치명적인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정밀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가?	
		• 안전점검의 결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 및 기록 하는가?	
		• 노사가 참여하는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 및 기록하는가?	
		2.2.8	안전교육의 실시
• 매일 공사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가?			
• 근로자의 재해예방 및 건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정기 교육을 실시(월1회) 하는가?			

순서	항 목	이행 및 확인 사항	확인 결과
2.2.8	안전교육의 실시	• 매월(분기) 안전교육 실적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하는가?	
2.2.9	정기적인 회의 이행 및 참여	• 시공자는 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정기적인 회의에 참여 하는가?	
		• 협의체 회의(매월)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분기 1회)를 실시하는가?	
2.2.10	안전사고 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	• 중대재해가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가?	
		•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및 보고하였는가?	
		•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노동 관서에 보고하였는가?	
		• 사고보고서를 2시간 내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발주자에게 통보하였는가?	
		•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건설사고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2.2.11	수시·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였는가?	
		• 시공자는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 시켜 수시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가?	
		• 주기적인 위험성평가 회의를 실시하는가?	
		• 안전교육, TBM활동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내용을 전파 하는가?	
		• 위험성평가의 중점관리사항에 대한 점검 실시 및 조치 하는가?	
• 위험성평가의 결과 및 조치사항 기록 및 3년간 보존하는가?			
2.2.12	안전·보건관리체제 (조직 구성) 운영	• 시공자는 안전보건관리조직 유지 관리 및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운영하는가?	
		• 시공자는 매년 안전보건계획 수립(이사회 보고 및 승인) 및 이행하는가?	
2.2.13	안전관리담당자 업무의 협조	• 안전관리담당자가 위험작업 현장에 입회하여 실시하는 시공자 안전관리자의 지도, 감독에 대해 협조하는가? •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 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 관리 업무에 대해 수행하는가?	

순서	항 목	이행 및 확인 사항	확인 결과
2.2.13	안전관리담당자 업무의 협조	• 시공자는 공사가 중지되는 현장에서 공사 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하는가?	
		• 자체 안전점검 결과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가?	
		• 시공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즉시 보고 하는가?	
2.2.14	안전문서 관리 (설계도서 등 검토 업무)	• 시공자는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외부로 유출시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하는가?	
2.2.15	안전관리 수준 평가	•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하였는가?	
		• 현장 평가에 대해 협조하는가?	
2.2.16	일요일 건설공사 금지 및 주말·휴일작업 계획서 제출	•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요일에 건설 공사 시행을 금지하는가?	
		• 주말, 휴일작업 계획서를 제출하는가?	
		•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를 시행한 경우 사후 승인을 요청하는가?	
2.2.17	상시 안전점검 체계 유지	•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대해 조치하는가?	
		• 일일 자체안전점검 실시 및 기록하는가?	
		• 공사관리관 현장 안전점검 시행 결과에 대해 조치하는가?	
		• 건설기계(카고크레인, 기중기, 천공기, 항타·항발기) 반입 전 점검사항 시정 조치 및 조치 결과를 보고하는가?	
		• 연 3회 이상 모의훈련 추진계획 수립 및 훈련을 실시하는가?	
		• 위험공종 작업허가서 작성 및 승인을 요청하는가?	
		• 사고보고서 작성하여 보고하는가?	
		• 재발방지대책 작성, 보고 및 이행하는가?	
		• 휴일작업계획 수립 및 승인 요청하는가?	
2.2.18	대형 붕괴 재해 대비 지도 점검 시행	• 안전관리과 또는 공사관리관에게 지도점검을 요청하는가?	
		• 강교 및 중량물 설치 및 해체 작업을 관리 하는가?	

순서	항 목	이행 및 확인 사항	확인 결과
2.2.18	대형 붕괴 재해 대비 지도 점검 시행	•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타설 전 작업을 관리하는가?	
		• 흙막이가시설 굴착단계별 작업을 관리 하는가?	
2.2.19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	• 시공자(공사관계자) 안전직무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 (상,하반기 2회) 하는가?	
		• 찾아가는 안전교육 시행에 따른 건설 근로자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교육 참여 및 장소 제공을 협조하는가?	
		• "근로자 안전 10계명" 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하는가?	
2.2.20	근로자 안전 10계명 일상화 추진	• 현장 관계자 "근로자 안전 10계명" 교육을 실시하는가?	
		• 현장에 "근로자 안전 10계명"을 게시 하는가?	
		• 현장에서 "근로자 안전 10계명"을 준수 하는가?	
		• 건설기계 10대 안전수칙 홍보물을 부착 및 이행하는가?	
2.2.21	위험시기 및 재난대비 특별 안전점검 시행	• 풍수해대비 예방계획 수립 및 이행하는가?	
		• 폭염대비 혹서기대책 수립 및 이행하는가?	
		• 해빙기 관련 안전대책 수립 및 이행하는가?	
2.2.22	현장 소통 및 최신자료 공유	• 안전 Q&A 자료방을 알고 있는가?	
2.2.23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강화(안전감찰)	• 시공단계별 안전성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는가?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는가?	
		• 공종별 근로자·시설물 안전대책을 수립 하는가?	
		• 공종별 수해예방, 재난대책을 수립하는가?	
2.2.24	불법 하도급과 품폐기 근절(안전감찰)	• 불법 하도급과 품폐기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는가?	
		• 현장내 홍보물을 게시(포상금 지급 문구 게시판에 게시 및 신고서 비치 등)를 하는가?	
2.2.25	안전조회(Tool Box Meeting) 시 5RP 제도 시행 (안전감찰)	• 5RP 제도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 선정, 교육, 현황판에 게시 및 보고 등을 적절하게 운영하는가?	
2.2.26	무자격기술자 퇴출 등 엄중조치(안전감찰)	• 건설기술자 자격기준 입찰안내서에 따라 적정 건설기술 자를 배치하는가?	

순서	항 목	이행 및 확인 사항	확인 결과
2.2.27	신속하고 다양한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개선(안전감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터널 등 특수공간 작업장에 비상경보시설을 설치하는가?</li> <li>비상경보시설 작동여부 매월 점검 실시 및 대피도면을 출입구에 부착하는가?</li> </ul>	
2.2.28	외국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작성 보급 (안전감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공종별 소규모공사장과 외국인근로자용 매뉴얼 비치 및 교육을 실시하는가?</li> <li>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시행하는가?</li> <li>외국어 안내 입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였는가?</li> </ul>	
2.2.29	주기적 안전교육 및 맞춤형 매뉴얼 작성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관리과에서 실시하는 공사관계자 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하는가?</li> <li>건설안전기본지침 및 안전사고 매뉴얼 등의 비치 및 활용을 하는가?</li> </ul>	
2.2.30	공사장 휴게실 설치 의무화 및 환경정돈(안전감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혹서기, 혹한기 공사장 휴게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가?</li> </ul>	
2.2.31	근로자 음주·흡연 관리 방안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 음주·흡연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였는가?</li> <li>작업 전 근로자 음주측정 및 교육을 실시하는가?</li> <li>지정된 흡연구역을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운영하는가?</li> </ul>	
2.2.32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강화 및 하도급 계약 지원센터 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하도급계약 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안내하는가?</li> <li>발주부서의 월별 정기점검에 대해 협조하는가?</li> <li>발주청의 연 2회 하도급 실태점검에 대해 협조하는가?</li> </ul>	
2.2.33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공자는 공사기간 단축 및 위험한 공법 적용을 금지하는가?</li> <li>시공자가 정당한 사유로 공법 변경 시 계획 수립 및 승인을 요청하는가?</li> </ul>	
2.2.34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실정보고 및 승인을 요청하는가?</li> </ul>	
2.2.35	설계변경의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변경에 대한 실정보고 및 승인을 요청하는가?</li> </ul>	
2.2.36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공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부 작성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및 준수 하는가?</li> <li>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 시에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근로자 대표가 동의하였는가?</li> </ul>	

순서	항 목	이행 및 확인 사항	확인 결과
2.2.36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등 전파하였는가?</li> </ul>	
2.2.37	유해·위험 방지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명령의 요지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등 전파하는가?</li> <li>안전보건표지(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 (외국어 표지판 포함) 하는가?</li> <li>설비·물질·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위험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 하는가?</li> <li>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이행 하는가?</li> <li>시공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하는가?</li> </ul>	
2.2.38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를 실시 하는가?</li> <li>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정상적 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된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가?</li> <li>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는가?</li> <li>자율안전확인대상기구등에 대한 자율안전확인 신고여부를 확인하는가?</li> <li>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 여부를 확인 및 이행하는가?</li> </ul>	
2.2.39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조사에서 제공받은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는가?</li> <li>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 하는가?</li> </ul>	

순서	항 목	이행 및 확인 사항	확인 결과
2.2.39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 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 표시를 부착(용기에 이미 경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하였는가?	
		•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가?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기록 및 보존(교육시간, 내용 등)을 하는가?	
2.2.40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제출	•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가?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하였는가?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렸는가?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5년 동안 보존하는가?	
2.2.4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연 1회)을 실시 하는가?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등에 종사 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가?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는가?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애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는가?	
2.2.42	근로시간 금지 또는 제한조치	• 질병자의 근로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이행하는가?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잠함 또는 잠수 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금지하는가?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절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조치하는가?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시 무자격자의 근로를 제한 하는가?	

## 2.3 준공단계

### 2.3.1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건강검진 기법법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 이행 및 확인사항

- 시공자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주요내용에 대한 요약 및 보수·보강 등 조치사항, 조치사항의 이행여부 및 이행 적정성 등을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시공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제출
-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제출(CD 또는 온라인)

#### ■ 관련 규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31조 (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35조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36조 (제출방법)

### 2.3.2 안전관리문서의 취합 및 보관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안전 관리 참여자가 작성한 안전관리문서를 취합하여 시설물안전법 제9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일부로 보관

#### ■ 이행 및 확인사항

- 안전관리문서(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취합·제출 및 준공 또는 사용승인 요청
- 시공자는 발주자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 시 관련 문서를 제출 (해당서류의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
  - ①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 ②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경우 사고 개요,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 보고서
  - ③ 시공단계에서 도출되어 유지관리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 ■ 관련 규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설계도서 등의 제출), 별지 제6호 서식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0조 (공사완료 단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42조 (보존 및 관리현황 보고)

## ■ 참고 사항

### • 안전관련 문서 목록

목 록	내 용	비 고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정산 설계도서	설계도,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안전관리문서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설계안전성검토		
사고조사 보고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서	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첨부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산정된 경우에만 해당
안전관리비 정산서	정산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첨부	
기술지도완료 증명원		기술지도계약서 제출 대상일 경우

### 2.3.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서 작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사용 및 정산은 계약단위 공사별로 이루어져야 함.

## ■ 이행 및 확인사항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서 작성 및 제출

##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 참고 사항

### • 정산방법

- (1)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금액이 아닌 총 공사금액을 대상으로 계상하고 정산에 있어서도 해당 차수가 아닌 총 공사기간에 대하여 정산함.
- (2) 소급 정산 가능 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지출한 것이라면 사용시점 이후라도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정산이 가능함.

### (3) 계상금액을 초과 사용한 경우

- 당해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 인간에 협의 처리하여야 함.

### (4)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 재정부 계약예규) 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함.
- 또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나 정산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함.
- 이는 단지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는 공사의 재료비와 지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 공사금액의 70% 정도에 해당하는데 따른 것이므로 어떤 경우든 동일한 방법(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함.
- 과세현장 : 공급가액으로 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서 상 경비 항목의 세부 비목으로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정산
- 비과세현장(면세현장)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로 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로 인한 부가 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처리

### • 증빙방법

- (1) 부가사용증빙은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사용항목에 따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품의서, 송장 등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구비, 첨부하면 됨.
- (2) 분사 사용분에 대한 현장의 입증방법은 그 내역을 별도 입증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분사 배정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됨.
  - 분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확인은 반드시 대표이사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체위임, 전결규정 등에 의하거나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실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의 확인도 가능함.

### 2.3.4 안전관리비의 정산서 작성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정기 안전점검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을 말함.

#### ■ 이행 및 확인 사항

- 안전관리비의 정산서(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 작성 및 제출

####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3조 (정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4조 (추가조정 등)

### 2.3.5 체크리스트

순서	항 목	이행 및 확인 사항	확인 결과
2.3.1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자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주요내용에 대한 요약 및 보수·보강 등 조치사항, 조치사항의 이행여부 및 이행 적정성 등을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였는가?</li> <li>•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시공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였는가?</li> <li>•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제출(CD 또는 온라인) 하였는가?</li> </ul>	
2.3.2	안전관리문서의 취합 및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문서(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취합·제출 및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요청하였는가?</li> <li>• 시공자는 발주자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 시 관련 문서를 제출(해당서류의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 하였는가?</li> </ul>	
2.3.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는가?</li> </ul>	
2.3.4	안전관리비의 정산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비의 정산서(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작성 및 제출 하였는가?</li> </ul>	

# 근로자 안전 10계명



**1. 쓰겠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겠습니다.



**2. 걸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고리**를 걸겠습니다.



**3. 덮겠습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는 **덮개**와 **난간**을 설치하겠습니다.



**4. 옮기겠습니다**  
버팀보, 작업통로 등 상단에는 **자재**를 두지 않겠습니다.



**5. 만들겠습니다**  
작업전에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겠습니다.



**6. 보호하겠습니다**  
**낙하물방재망**을 설치하겠습니다.



**7. 밝히겠습니다**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작업장**을 밝게 하겠습니다.



**8. 차단하겠습니다**  
용접 또는 절단 작업시 **비산물**을 막고 **화재**를 예방하겠습니다.



**9. 막겠습니다**  
전기작업은 **누전차단기**를 경유하고, **전동공구**는 **방호조치**를 하겠습니다.



**10. 지키겠습니다**  
**밀폐작업장**은 **작업규정**에 맞게 하겠습니다.

##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

1. 작업원 안전모 착용
2. 고소작업자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고리 체결
3. 개구부 관리철저(난간 및 방망·덮개·폭목 설치)
4. 버팀목 작업통로 등 상단에 자재적치 금지
5. 가설통로 설치 및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sup>1)</sup>, 안전시설 임의 철거 불가
6.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준수
7. 작업장 조도기준 준수<sup>2)</sup>
8. 용접 또는 절단 등 작업시 불꽃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9. 전기설비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접지실시, 전동 작업공구 보호덮개 설치 및 이동식비계 스톱퍼 설치
10. 밀폐작업장<sup>3)</sup> 작업규정 준수(작업허가제 실시 및 환기, 산소농도 측정, 출입자통제 실시)

1) 고소작업은 안전난간 설치 또는 안전방망 설치, 불가 시는 안전대 착용

2) 작업장 및 점검통로 조도 75Lux이상, 터널작업 구간 70Lux이상(터널표준시방서1.1.2 조명)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 정하는 우물, 수직갱, 터널, 잠함, 핏트, 암거, 맨홀, 탱크, 반응탑, 정화조, 침전조, 집수조 등을 말함

### 안전시공 기본사항 10대 항목

1. 시공계획서 작성 및 감리 검토·승인을 받아 시공
2. 지하매설물 출파기 확인 실시 및 관리기관 협의 철저
3. 지하매설물 굴착시 보호조치 및 굴착순서 준수
4. 동바리, 비계작업 시공계획서(동바리 구조검토 포함) 작성 및 준수
5. 토류벽시공(E/A 포함)시 강재(버팀보, 띠장, 앵글 등) 설치시기 준수 및 작업순서 준수(선행굴착 등 금지)
6. 미근입 파일 이어내리기 2분 이내 준수
7. 시공계획서 등 사전검토없이 가설강재 임의 또는 과다철거
8. 터널굴착 시 1회 굴진장 이상 과굴착 및 지보재를 1막장 이상 미 설치
9. 계측기 적기설치, 계측빈도 준수
10. 장비작업계획서 작성, 아웃트리거 적정거치, 장비 허가 검사 이행, 신호수 배치

## 공사관계자 안전업무 가이드북

발행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발행일	2026. 02. 26.
발행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안전관리과
정책총괄	시설국장 김유식
운영총괄	안전관리과장 김근섭
기획·집필	이태행(대표집필), 박찬표, 정진혁
행정지원	배원영, 홍정희, 문예원, 이문석
자문지원	손기만(수석), 서수은
문의처	안전관리과 이태행, 02-6438-2473
I S B N	979-11-7177-649-8(03540)

※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있습니다.